

국제법제분석 98-1

國際通貨基金(IMF)의 法的 基礎와 解釋

1998. 5

研究者：崔哲榮(先任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제1장 국제통화제도와 국제통화기금(IMF)	7
1. 국제통화제도	7
2. 국제통화제도의 안정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설립	8
3. IMF협정 해석의 중요성	10
제2장 IMF의 조직 및 기능의 변화	13
1. IMF의 기구조직	13
(1) IMF의 지위	13
(2) 설립목적과 기능	13
(3) 가입국	14
(4) 기금과 출자	15
(5) 조 직	15
2. IMF의 권한과 할당액(Quata)	19
(1) IMF의 권한	19
(2) 할당액(Quotas)	22
3. 용자제도	23
(1) 규제와 용자	23
(2) 용자제도	23
(3) 특별인출권(SDRs)	25
(4) 서비스	25
4. IMF협정의 개정	26
(1) 제1차개정	26
(2) 제2차개정	26
(3) 제3차개정	26
(4) 자금지원조건관련 IMF협정의 개정	27
제3장 IMF협정의 해석	29
1. 유권적 해석과 비공식적 해석	29

2. 해석규정의 몇 가지 문제점	30
(1) 해석을 요구해야 할 의무	30
(2) IMF협정문의 해석과 회원국	32
(3) IMF해석의 구속력	34
(4) IMF의 해석에 대한 이의제기	37
3. 유권적 해석의 사례	40
4. 협약의 해석절차	46
5. IMF자금지원의 근거와 해석	47
(1) IMF자금지원조건의 법적기초	47
(2) IMF협정에 따른 조건	47
(3) IMF 목적에 따른 조건	48
(4) IMF 조건부자금지원제도의 발전	48
제4장 해석기준으로서 IMF의 이념과 법률자문가의 역할	53
1. IMF의 이념	53
(1) 협정해석의 기준으로서 IMF의 이념	53
(2) IMF의 해석권한	55
(3) 국제수지균형과 IMF의 이념	58
2. 일반차입협정(GAB)과 연성법(soft law)	59
(1) 일반차입협정(General Agreement to Borrow)	59
(2) IMF의 연성법규범(soft law)	61
3. IMF의 이념과 해석	63
(1) 획일성의 원칙	63
(2) 제14조의 '경과약정'에 대한 해석	65
(3) 용어사용의 오류	71
4. 법률자문가의 역할	76
(1) 법률용어	79
(2) 배타적 권한으로서 해석권	80
(3) 법률자문가의 역할과 지위	85
(4) 투명성과 홍보	91

5. 해석의 오류	95
(1) 해석의 오류와 이의제기	95
(2) 해석의 오류에 대한 주의	96
(3) 협정의 자체개정문제	98
(4) 통합성	99
제5장 IMF의 기능강화에 따른 협정의 개정과 해석	101
1. IMF의 기능강화	101
2. IMF협정의 개정필요성	102
3. IMF협정해석의 지침	103
〈부록 1〉 IMF의 연혁	105
〈부록 2〉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대한 제3차개정	107

제1장 국제통화제도와 국제통화기금(IMF)

1. 국제통화제도

국제통화제도는 국제유동성의¹⁾ 적정한 공급과 각국의 환율안정, 그리고 국제수지조정기능 등을 원활히 수행하고 국제무역의 균형적 확대와 국제자본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통화제도 및 경제정책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통화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제적인 완전고용과 실질소득의 증대, 그리고 세계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통화제도의 안정은 세계경제 및 각국경제의 안정과 원활한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국제통화제도는 1973년 3월 스미소니언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브레튼우즈체제의 근간이었던 고정환율제가 붕괴된 후 도입된 변동환율제도이다. 변동환율제는 환율의 신축성이 국제수지 불균형을 원활히 조정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져와 세계경제의 성장에 큰 공헌을 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출범하였다.²⁾

그러나 변동환율제하에서 환율은 매우 불안정하였으며 환율의 변동폭은 매우 극심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각국의 물가수준이라든가 이자율수준, 재화의 국제적 이동에 따른 외환의 수급관계변화 등 각국의 기초적인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환율수준이 실물경제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각국의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과 국제금융시장의 확대에 따른 투기적 자본이동 등에 의해 영향받는 일이 많아져 환율은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율변동은 교란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동환율제의 특성에 비추어 어느 정도 당연한 결과이다. 그리고 환율의 신축적 변동은 무역구조나 재화의 수요공급관계변화로 발생한 실물적 교란을 어느 정도 흡수하므로써 경제조정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하는 면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환율의 단기변동폭이 환율을

1) 유동성이란 보유자산을 필요한 경우에 즉시에 적정한 가격으로 용이하게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나 여기에서의 국제유동성은 국제통화를 의미한다.

2) 제2차대전후 국제통화제도는 금달러本位制를 근간으로 하여 성립된 고정환율제의 브레튼우즈체제(1954~1971), 1971년 미국 닉슨대통령의 미국 달러화의 금태환정지로 인해 금달러본위제가 붕괴되면서 나타난 스미소니언체제(1971~1973), 변동환율제인 킹스틴체제(1973~현재)로 변화되었다.

결정하는 기초적인 경제변수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이상으로 급속하고 과도하여 장래의 환율에 대한 예상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환위험 회피를 위한 금융비용의 부담이 매우 크게 증가하여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³⁾

최근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 있어서 환율폭락은 국제금융시장의 혼란과 통화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환율의 불규칙한 변화는 기업의 무역 및 투자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제는 환율안정이 세계경제의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⁴⁾

이에 따라 브레튼우즈위원회는⁵⁾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환율안정을 위해 미국 달러貨, 일본 엔貨, 독일 마르크貨 등 3개 통화를 축으로하는 '환율변동대(flexible exchange rate bands)'라는 새로운 환율체제를 도입하고, 국제통화제도의 안정을 위해 국제통화기금의 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하자는 국제통화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⁶⁾

2. 국제통화제도의 안정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설립

국제통화제도하에서 국제적 통화협력의 증진, 국제무역의 확대와 균형있는 발전, 환율안정의 유지 및 경쟁적인 환율절하를 방지, 각국의 국제수지에 있어

3) 金鎮洙, '현행 국제통화제도의 개혁 논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0권 제2호,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0. 12, 363~365면; 지금의 체제대로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어 불확실성이 가중되면 장기적인 투자를 위축시킬 뿐 만 아니라 국가간의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세계경제의 원활한 성장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4) 裴容浩, 國際通貨制度的改革論議 - 브레튼우즈위원회의 안을 중심으로 -, (국제문제분석 제10호) 1995. 4. 국회도서관, 5면.

5) 정식명칭은 브레튼우즈체제의 장래에 관한 위원회(Commission of the Future of Bretton Woods Institutions)로서 1984년에 설립된 기존의 브레튼우즈위원회(Bretton Woods Committee)를 IMF와 IBRD 창립 50주년을 맞아 국제통화제도의 역사를 짚어보고 그들 양기구의 역할에 대해 재조명하고자 1992년에 발족시킨 특별위원회성격의 민간기구이다.

6) 환율변동대란 目標換率帶(target zone)라고도 불리우는 것으로 각국 정부가 미리 각 통화간 목표 환율을 정해두고 이를 기준으로 일정한 범위내에서 환율이 변동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미화 1달러당 120엔 또는 1.60마르크 등의 구체적인 목표환율을 설정한 뒤 이것을 중심으로 상하 몇 %씩 소폭의 환율변동폭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裴容浩, 앞의 論文, 7~8면.

불균형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수지불균형기간의 단축 및 정도의 완화를 목적으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 설립되었다.

국제통화기금의 설립협정은 1944년 7월 1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설립을 합의하였다. 공식설립일은 29개국이 IMF 설립협정문에 서명한 1945년 12월 27일이며, 업무개시일은 1947년 3월 1일이다.

현재 회원국수는 182개국이며 의결기관으로 총회, 잠정위원회, 이사회 등이 있다.

IMF의 출자금인 총쿼터(Quata)는 1,450억 SDR이며 1997년도에 합의된 쿼터증액분 납입이 완료되면 2,120억 SDR이 된다. 회원국에 배분된 쿼터에 기초하여 납입금, 투표권, IMF자금 이용한도, SDR 배분이 정해진다. IMF내에서 계산단위는 SDR(Special Drawing Rights)로 1969년에 창출되었으며 미국 달러, 일본 엔, 독일 마르크, 영국 파운드, 프랑스 프랑 등 5개국 통화바스켓 방식에 의거 가치가 산정된다. 1998년 1월 16일 현재 1SDR은 1.34159 US\$에 해당된다.

총직원수는 2,500명이며 그중 1,200명은 일반적으로 스태프 또는 이코노미스트로 호칭된다. 연간 예산은 1997회계연도의 경우 4.9억달러였다.

우리나라는 1955년 5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쿼터는 1997년 쿼터증액 합의에 따라 799백만 SDR에서 1,634백만 SDR로 증액되고, 쿼터비율은 0.55%에서 0.78%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투표권 비중순위는 36위에서 28위로 상승하였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IMF 자금사용은 1965년 3월~1987년 3월 기간중 16회에 걸쳐 23억 SDR약정하였으며 실제사용액은 17억 SDR이다. SDR배분은 1997년 0.7억 SDR에서 4.8억 SDR로 늘어났다. 또한 개도국지원기금 재원공여를 1989년 이래 9,200만달러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다. 우리나라는 매년 협정문 제4조에 의한 연례협의를 IMF와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경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995년부터 중기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호주, 한국, 뉴질랜드, 필리핀 등 13개국으로 구성된 그룹에 속해 있다.

3. IMF협정 해석의 중요성⁷⁾

해석문제에 관한 IMF의 관행은 IMF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제기구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들이며 몇 가지 문제들은 모든 국제기구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동기가 언제나 협정 본문의 불명료성이나 모호함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IMF가 설립규범이나 정관을 해석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다른 동기들이 고려되어 질 것이다. 예컨대 어떤 결정에 있어 전원일치 또는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다. 해석에 의한 결정의 동기는 구성국의 한 집단에 의한 명령의 형태(the appearance of dictation)가 다른 집단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게 해준다. 유사한 동기가 협정에 의해 정해진 일정한 범주의 결정을 위해서는 왜 전 구성국의 전체 투표권 중에서 특별다수가 요구되어지는가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IMF협정은 몇 차례 개정되었다. 최초협정의 규정들은 “원협정(original)”이라는 용어의 방식으로 각주에 표시되어져 있다. 개정된 협정규정들은 1차, 2차 및 3차 개정의 결과이며 각주에 인용될 때 1차, 2차, 3차로 표시되어 있다. 만약 그러한 표시가 없다면 가장 최근 협정의 규정을 말하는 것이다. SDR과 관련된 각주의 참고 사항들에서 IMF의 특별인출권국(Special Drawing Rights Department)에 참가국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것이 공표된 문서를 기탁한 회원국들을 “참가국(participants)”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법일 것이다.⁸⁾ 그러나 모든 회원국이 특별인출권국의 참가국이 되었기 때문에 “회원국(members)”이라는 용어가 단순명료함을 위해 “참가국”이라는 용어를 대신해 왔다. 더욱이 차용에 대한 IMF의 일반적 합의를 지지해 온 회원국과 회원국 중앙은행들이 관련 협정에 “참가국”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에 오해를 피할

7) 뉴욕주 헌법의 기초자인 모리스에게 그의 친구가 “훌륭한 헌법을 갖게 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자 모리스는 “훌륭한지의 여부는 이 헌법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대답하였다 ; Joseph Gold, *Interpretation: The IMF and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 xxv.

8) IMF협정 제17조제1항; 이하 IMF협정의 조문표시는 단지 조문만을 표시하고 IMF협정이라는 표시는 생략한다.

수 있다.

IMF의 “財源(resources)”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IMF는 회원국들이 납입하거나, 9)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차입되어지거나 10) 그러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거래된 결과로서 발생한 11)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된 재원들은 IMF의 ‘일반’재원이다. 이는 IMF가 회원국들에 대한 서비스로 관리운영하기로 동의한 IMF의 목적과 일치되는 출연재원들과 구분된다. 12) 다른 형용사나 특성의 표시 없는 “재원”의 언급은 통상적으로 일반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IMF의 규칙과 규정(Rule and Regulation)은 성에 근거한 차별없는 고용, 직렬분류, 승진 그리고 임직원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규칙은 이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9) 제5조제2항(a)

10) 제7조제1항

11) 제5조제2항(b)

12) Rule N-2 of Rule and Regulation.

제2장 IMF의 조직 및 기능의 변화

IMF의 협정조문에 근거한 국제통화기금의 기구와 활동에 관한 간략한 설명은 IMF의 협정내용(corpus juris)의 해석에 관한 IMF의 관행 그리고 IMF의 관행과 국제법과의 일치성을 연구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1. IMF의 기구조직

(1) IMF의 지위

IMF는 독립적 국제기구이며 국제연합(UN)의 전문기관이다. IMF는 예컨대 계약체결권을 포함하는 완전한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IMF협정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¹³⁾ IMF의 주사무소는 가장 많은 자원분담국인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다. IMF의 회원국지위는 IMF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자신의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IMF협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국가로 인정된 국가들에 열려져 있다. 국가의 크기는 회원국자격의 조건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 의하여 국가로 인정되는 거의 모든 영토적 실체들이 현재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¹⁴⁾

(2) 설립목적과 기능

IMF협정문의 제1조는 IMF의 목적을 (1)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협의와 협력을 제공하는 상설기구로서 국제통화협력을 촉진하고; (2) 국제무역의 확대와 균형있는 성장을 조장하고 이로써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인 모든 회원국의 높은 수준의 고용과 실질소득의 촉진 및 유지와 생산자원의 개발에 기여하며; (3) 환율의 안정을 촉진하고 회원국간의 질서 있는 환율약정을 유지하며 경쟁적인 환율절하를 회피하고; (4) 회원국간의 경상거래에 관한 다각적 결제제도의 확립과 세계무역을 저해하는 환율에 관한 제한의 제거에 협력하며; (5) 적절한 안전장치 하에 회원국으로 하여금 기금의 일반재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13) 제9조

14) Joseph Gold, *Interpretation : The IMF and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 xxv.

수 있게 하고 이로써 회원국이 국내 또는 국제적 번영을 파괴하는 조치에 의하지 않고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회원국에 신뢰감을 주며; (6) 이상과 같은 조치로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의 지속기간을 단축하고 그 정도를 경감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 나열은 정확함을 추구하는 연구자들에게 IMF협정 제1조의 목적에 대한 세밀한 설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내적 또는 국제적 번영에 방해가 되는 조치에 의존하지 않고 충분한 수지균형상태를 유지하거나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 IMF에게 부여된 주된 임무이다. 발전의 장려, 국제교역의 감축, 지원의 부여 등과 같은 다른 경제적인 목적들은 다른 국제기구 또는 국내적 기구들의 몫이다. IMF의 모든 정책과 결정은 이러한 목적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향은 IMF가 자신의 해석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한다. 첫째, 정책감시(surveillance)기능이다. 이는 IMF의 기능중 비중이 제일 큰 기능이다. 회원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하는 것으로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에 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하게 된다. 연례협의와 '세계경제전망' 논의가 대표적인 활동이다. 둘째, 외환지원(financial assistance)기능이다. IMF의 정책감시에 힘을 실어주는 기능으로 외환부족자금을 공여하여 구조조정 및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997년 4월 30일 현재 58개국에 대하여 406억 SDR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정책자문(technical assistance)이다. 전문가를 통한 정책지원기능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재정 및 통화정책방안 수립과 실시, 중앙은행·재무성설립 등 지원, 통계작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

(3) 가입국

IMF는 가입국의 자격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환율제도의 운용을 통해 국제통화체제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모든 국가에 가입을 개방하고 있다. IMF에의 가입은 기금에 대한 출자와 쿼터의 배분으로 이루어지는데 한국은 1955년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전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회원국으로 되어있다.

IMF가입국은 IMF협정 제8조국과 제14조국으로 구분된다. IMF협정 제8조는 환율정책과 외환정책에 관하여 가입국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는 전쟁, 경제침체등으로 제8조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기간 의무적용을 유예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제8조국은 환율이나 외환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고 시장원리에 맡겨 두는 선진시장경제를 의미하며 현재 한국은 제8조국에 속한다.

(4) 기금과 출자

IMF의 재원은 각 회원국의 쿼터에 따른 출자와 차입금으로 조성된다. 각 회원국의 쿼터(할당액)는 차입한도, 의결권, SDR배분 등 회원국의 IMF에 대한 권리·의무를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 IMF는 설립후 계속적으로 증자를 하여 왔는데 최근 개도국의 개발자금수요와 구 공산권의 시장경제이행에 수반하는 자금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1992년 11월에는 출자총액을 50% 증대하는 제9차 증자를 단행한 바 있다. 현재 IMF의 출자총액은 약1,448억 SDR(2,027억달러)이며 이 중 한국의 쿼터규모는 799.6백만SDR(11억달러)로서 그 비중은 0.55%이다.

(5) 조 직

IMF는 총회, 이사회 총재, 직원 및 평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평의회는 총회가 총투표권의 85% 이상의 다수결로 부표D의 규정이 적용됨을 결정할 때 설치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현재는 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가) 총회(Board of Governors)¹⁵⁾

총회는 IMF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각 회원국에 의해 1인씩 지명된 위원(governor) 또는 대리위원(alternate)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과 대리위원들은 통상적으로 회원국의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의 총재이지만 누구를 위원과 대리위원으로 선택할 것인가는 각 회원국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 총회는 관례적으로 매년 1회, IBRD와 합동으로 개최된다. IMF협정의 개정, 신규

15) 제12조제2항

회원국의 가입승인, 회원국의 쿼터변경 등이 총회의 중요권한사항이다.

현재 회원국이 182개국이기 때문에 18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1회 9월에 개최된다. 그러나 총회는 개최기간이 짧고 IMF의 주요정책방향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간략히 피력되기 때문에 총회에서 새로운 문제가 갑자기 제기되는 예는 드물다. 1997년 9월 홍콩 연차총회에서는 이사회와 잠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정리된 쿼터증액, SDR 추가배분 등에 대한 공식적인 추인이 있었다.¹⁶⁾

(나) 이사회(Executive Board)¹⁷⁾

이사회는 총회위임사항과 고유권한사항 등 IMF업무전반을 관장하는 IMF의 실질적인 중심기구이다. 이사회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의 5대국에서 1명씩, 그리고 나머지 회원국이 19개의 그룹을 형성하여 각 1명씩 지명하여 총 24명으로 구성되며 IMF총재가 의장이 된다. 즉 이사회는 총재와 각 회원국에 의하여 지명되거나 선출된 이사(executive director)들에 의해 구성되며 IMF에 상위 5대분담금을 갖고 있는 회원국들은 각각 이사를 지명하는 권한을 갖는다. IMF에 기부하거나 불입금 또는 대출에 의해 2년마다의 이사선출 이전 2년간의 기간동안 다른 회원국에 의해 사용된 재원의 가장 많은 평균 총액을 출연한 상기의 5개국이 아닌 두 개 회원국일방 또는 쌍방 모두는 선택권을(a choice among options) 갖는다. 이러한 원칙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는 회원국은 추가 이사(additional director)의 지명권을 갖거나 이사선출 투표에 참가할 수 있지만 양자를 모두 자제할 수도 있다. 이사를 지명할 능력이 없는 모든 회원국들은 강제되지는 않지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참가회원국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있어 선거집단을 형성하며, 총회규칙에 의하여 부과된 바에 따라 선출이사의 투표권에 대한 제한에 따라야 하지만 단일 회원국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다른 회원국과 함께 선거집단을 구성함이 없이 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충분한 투표권을 갖을 수 있다.¹⁸⁾ 매번의 격

16) 강정호, 칸드쉬총재의 웃음, 고려서적, 1988, 212~213면.

17) 제12조제3항

18) 이사선출국은 단독선출국과 투표방식에 의한 일반선출국으로 구분된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이 지명이사국이며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는 단독선출 이사국이다. 선진국들은 개도국들과 그룹을 구성하여 이사직을 상임의 지위로 확보하고 있으며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호주 등이다. 선진국이 아닌 나라로서 이사직을 상임하고 있는 나라는 브라질, 인도, 이

년선거마다 총회는 이사를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투표비율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여 임박한 선거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채택한다. 그 목적은 선출이사 사이의 대략적인 투표권의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지명된 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사회에서 각각의 지명이사는 지명한 회원국에게 할당된 투표수(number of votes)를 행사한다. 각각의 이사는 자신을 선출한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에게 할당된 투표가치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행사한다. 그 결과 이사 사이에는 커다란 투표력(voting power)의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물론 단독으로 선택된 회원국들 사이에는 더 커다란 투표력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사는 소속그룹 전체의 투표권을 일괄하여 행사한다.

협정문의 개정이나 쿼터의 증액, SDR 추가배분 등의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총 투표권의 85% 찬성이 필요하다. 이런 구조 때문에 회원국의 광범위한 동의의 얻지 않고서는 합의를 도출할 수 없다. 예컨대 투표권의 18%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반대하거나, 개도국이 연합하여 반대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¹⁹⁾ 따라서 각 그룹별로 또는 각 국별로 사안에 따라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에 여러 안전을 묶어 일괄타협을 하게 된다. 1997년중 쿼터증액 합의가 SDR 추가배분합의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그 예가 된다.

이사회는 운영방식은 먼저 1년에 두 차례 연간 회의개최 계획이 수립된다. 실제일정은 회의안건준비, 회원국 연례협의 진행과정을 감안하여 수시로 조정되나 대개 2개월간의 회의일정이 미리 통보된다. 이사회는 일반직원에게 공개된 회의이므로 발언의 질에 따라 발표자가 직원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이사회는 컨센서스에 의한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찬반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발언을 통하여 찬반 여부를 나타내게 되며, 이런 경우 의사국장(Secretary)이 투표권에 의한 찬반결과를 퍼센트로 공표하기도 하나 대단히 드문 예이다. 통상의 경우 상당한 반대 내지 유보의견이 있을 때에는 다수결로 처리하지 않고 몇 차례의 회의나 비공식 의견조율과정을 거쳐 도출한다.

(다) 잠정위원회(Interim Committee)

1974년 총회결의에 의해 설립된 잠정위원회는 국제수지조정과 국제통화제도의 관리·감독, 국제유동성의 변화와 개도국 지원, IMF협정 개정안 심의,

란, 이집트 등이며 여타 국가의 경우는 그룹내 윤번제 등 합의에 따라 선출된다.

19) 강정호, 앞의 책, 214~216면.

국제통화제도에 대한 긴급사태시 대책방안수립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이사회 회원이 겸임하고 있다. 잠정위원회는 IMF협정 제12조에 의한 평의회(Council of Governors)가 설립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잠정위원회는 IMF 이사회를 구성하는 국가의 대표 24명으로 구성되며 연 2회 개최된다. 사실상 IMF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조직이다. 가을회의는 총회가 개최되는 직전 일에 합의를 도출하여 그 내용을 총회에서 인준받는 형식을 취한다. 통상 봄회의에서는 총회기간 이후 6개월간의 지원내용을 점검한다. 1997년도 가을회의에서는 자본거래자유화, 개도국 지원제도확충, 쿼터증액, SDR 추가배분 등의 논의가 있었다.

(라) 총재(Managing Director)²⁰⁾

총재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으로서 연임이 가능하고 이사회의 지침에 따라 IMF운용전반을 지휘 감독한다.

(마) 이사(Executive Director)

이사는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이사실을 대표한다. 이사는 이사실내의 인사·업무분장·직원출장·근무평정 등 전권을 행사한다. 이사의 이사실 대표권은 이사회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이사의 발언내용은 그룹국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룹내 개별국가의 입장이 이사실 전체의 입장과 다른 경우에도 이사를 통하여 피력된다. 이 경우 이사는 의견수렴과정에서 전체입장과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한다. 이때 구체적으로 국가명을 밝히지 않아도 이사회에서는 그 다른 의견을 가진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된다.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그룹을 대표하는 이사는 호주 정부가 지명한다. 형식적으로는 그룹 내에서 선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바) 기타 조직

IMF의 조직은 지역국·직능국·기타 지원조직으로 구분된다. 지역국은 개별회원국과 협의, 정책평가 및 권고를 담당한다. 예컨대 아시아태평양국은 8개의 과로 나뉘져있고, 그 가운데 1개과가 한국·일본을 담당하고 있다. 직능국

20) 제12조제4항

은 정책국, 통화외환국, 재정국, 조사연구국, 통계국, 회계국이 있다. 이중 정책국, 조사연구국, 통계국은 느슨한 형태의 지역담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2. IMF의 권한과 할당액(Quata)

(1) IMF의 권한

(가) 조정 및 지도권한²¹⁾

IMF는 회원국의 일정한 환율관행이 협정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조정기관이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환율관행은 회원국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당해 회원국에 대해 부과되어 질 수 있는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한 관행은 제거되어야 한다. IMF는 효과적인 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국제통화체제를 감독할 것이 요구된다. IMF는 이러한 목적과 각 회원국이 IMF의 조정권한(regulatory jurisdiction)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국에 대한 감시와 자문을 수행한다. IMF의 권한은 IMF기구의 법체계(corpus juris)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의무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軟性法(soft law)에 대한 감시를 포함한다. IMF의 교정조치(remedies)는 연성법을 준수하지 않는데 대한 IMF의 불만을 의미하며 IMF는 비준수의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교정조치를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나) 재정적 권한

IMF의 재정적 활동을 위해 협정은 기구의 일반재정국과 특별인출권국을 구조적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재정국은 소위 계정(Account)이라고 불리우는 일반재원계정, 특별지불계정, 투자계정 등의 3개 계정이 있으며 그들 중에서 첫 번째의 일반재원계정이 IMF의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정이다. 일반재원계정에 IMF는 회원국들의 납입금, 수수료로 얻은 수입과 함께 IMF의 운영과 거래의 결과로 형성되어진 자본(assets), 그리고 IMF의 대출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등을 보유한다. 계정의 총보유금액은 IMF의 일반재정이라고 불리운다. 일반재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IMF의 주요 거래는 IMF에 의한 회원국수지균형에 대한 지원으로

21) Joseph Gold, op. cit., p. xxix

써 회원국에게 회원국통화에 대한 통화 또는 특별인출권의 매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22) 이러한 종류의 거래는 적절한 날자에 이러한 IMF일반재정의 이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 의무는 IMF의 일반재정 사용에 관한 IMF의 주요 정책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이후에 3년에서 5년 이내에 그리고 다른 정책에 의해 더 연장된 최장기한 이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이 의무는 다른 회원국의 통화나 SDR로 당해 회원국이 원래 구입하였던 것과 동등한 정도의 회원국통화를 다시 구입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당해 거래에 따른 IMF의 재정적 활동에 있어 IMF에 의한 회원국통화의 이용은 재매입과 같은 限度(pro tanto)효과를 갖는다. 재매입의 효과는 IMF의 경제적 및 법적 기준에 따라 회원국을 지원하기에 적정하며, IMF에 의해 일반재원으로 보유되는 해당국의 통화가 증가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다른 회원국에게 혜택을 주기에 적절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재원은 회전(revolve)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재매입의 효과는 아직 재매입되지 않은 통화가 다른 회원국을 지원하기에 적정하게 되고, 다른 회원국에게 제공되었을 때 동일하게 나타난다. 더욱이 IMF의 평가단위인 SDR의 기초위에서 각 회원국이 일반재정계정(GRA)에 회원국의 통화보유가치를 유지할 책임을 지기 때문에 IMF의 일반재정계정내의 총보유고는 조정되며 그 결과 그들의 SDR가치는 안정적으로 남아있게 된다. 만약 어떤 회원국의 통화의 SDR대비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당해 회원국은 적정액수의 자국통화를 추가로 IMF에 이전하게 된다. 반대로 어떤 회원국의 통화의 SDR대비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이러한 조정시스템은 적절한 액수의 회원국통화를 IMF에서 당해 회원국에게 돌려주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어떤 국가의 통화가 SDR에 대비하여 평가절상되었다면, 조정은 IMF가 회원국통화의 적절한 총액을 회원국에게 반환하는 형태를 취한다.

일반재정국의 다른 두 계정에 관하여 여기서 언급해야 할 것은 IMF가 자신의 매매권한하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매도하는 경우, 고정환율체제가 철폐되기 이전에 공식적 금가치에 상응하는 수익금의 일부는 일반재원계정에 이전되며 정관에 의해 허용되는 초과분의 이용을 위해 수지는 특별지출계정상에 귀속된다. 투자계정은 IMF가 수입을 얻고 IMF의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을

22) 그러나 회원국은 비록 당해 회원국이 인정한 국제수지균형의 정의에 따르면 수지균형에 있어 적자가 아니더라도 자국의 수지균형 또는 준비자산 또는 준비금의 개선을 이유로 IMF의 일반재정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제3항(b) (ii)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이 계정을 통하여 자신의 리저브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계정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IMF는 필요한 경우 자신의 재원을 고갈시키게 될 운영적자를 예방한다.²³⁾

(다) 권한의 분배

협정은 특별한 권한을 총회, 이사회, 평의회(council) 그리고 총재에게 직접 부여하고 있다. 기구의 위계질서에 있어 총회와 이사회 중간에 위치한 평의회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아직 설치되지 않다. 총회는 IMF의 결정으로 간주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임시(ad hoc) 또는 상설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평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하에서 총회는 국제통화체제에 관한 총회의 잠정위원회(interim committee)를 설립하였다. 잠정위원회는 협정이 IMF의 기관이 결정을 내리도록 권한을 부여한 주요 문제에 관한 정책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상설위원회로써 1년에 2회 회합하는 관행을 따라 왔다. 협정에 의해 다른 기관에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한은 IMF의 구조에 있어 최상위의 지위를 갖는 총회에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범위내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는 총회에 의하여 이사회에 위임되어 질 수 있다. 현재까지 최대한의 위임이 이루어져 있지만 이는 포기되거나 수정되어질 수 있다.

총회는 협정에 의해 직접 부여된 권한은 위임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에 한번 회합하는 총회와 다르게 회기가 계속되며 운영되는 이사회는 협정에 의해 이사회에 직접 부여되거나 총회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하에서 IMF의 임무를 집행할 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총재를 선출한다. 이사회 선출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일한 조건은 총재의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재는 이사회 지휘하에서 사무직원의 최고책임자이며 IMF의 일상업무를 집행한다. 그는 이사회 일반적 감독하에서 직원의 조직, 임명, 해고의 책임을 진다. 총재와 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IMF에 대하여만 의무를 지며 그 이외의 어떠한 기관에도 의무를 지지 않는다. 협정은 책임성(accountability)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대하여는 이 조건 또는 다른 조건에 의한 지배를 받도록하고 있지 않다. 지명이사는 어느 때라도 그를 지명한 회원

23) Joseph Gold, op. cit., p. xxix

국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선출이사는 자신의 뜻에 따라 사퇴할 수 있지만 선거인단의 구성회원국들은 그의 임기가 종료되기 이전에 특정 선출이사의 선출을 철회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제3차 개정의 결과, 총재와 총회위원 그리고 지명이사와 선출이사는 회원국의 투표권이 정지된 이후에 부표 L(Schedule L)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그만 둘 수 있다.²⁴⁾

(2) 할당액(Quotas)

표결권에 있어서 IMF는 UN, WTO, ILO 등에 적용되는 1국1표가 아니라 투표권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는 기구이다. 각 회원국의 투표권은 기본표와 비례표로 구성된다. 모든 회원국에 대해 일률적으로 250표의 기본표가 배분되며, 당해 회원국이 IMF에 특별인출권(SDR)으로 표현되는 지분으로 납입한 쿼터 10만 SDR당 1표씩 배분된다.

할당액은 새로운 회원국이 IMF에 가입할 때 또는 현재의 할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IMF가 사용할 수 있도록 IMF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지고 회원국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다.²⁵⁾ 할당액에 관한 일반심의(general review)는 5년 이내의 간격으로 총회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총회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할당액의 조정을 제안하여야 한다. 어떠한 제안의 광범위한 목표는 회원국의 할당액이 국제사회에 있어 회원국의 경제적 지위와 일치함을 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복잡한 형상을 통해 도달한 숫자들은 같은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국가를 다른 특정 국가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같은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는 영향받지 않는다.

총재단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회원국의 할당액조정에 관한 회원국의 요구를 언제라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일반적 심사에서 귀결된 것이 아닌 조정은 거의 드물다. 회원국의 할당액은 회원국의 동의없이 변경될 수 없으며, 변경의 내용이 상향조정하는 것인 경우에 변경은 그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기금납입(Subscription)없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하향조정이 이루어졌다면 IMF는 당해 회원국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전시키게 된다. 지분의 절대적인 규모와 상대적인 규모는 IMF와 회원국간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

24) Joseph Gold, op. cit., p. xxvii

25) 제18조

하다. 예컨대 IMF의 일반재원에 대한 회원국의 기금납입은 당해 국가의 지분과 동등하고 투표권의 크기는 대체적으로 할당액에 근거하며, 특별인출권의 할당비율은 할당액에 비례하고, 일반재원에 대한 접근은 통상적으로 할당액 조건에 따라 정해진다.²⁶⁾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모든 회원국의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식적 투표권행사를 통하여 의사가 결정되는 예는 드물다.

그러나 합의도출이 어려울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이 경우 대부분의 결정은 단순 과반수, 즉 50%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IMF 자금 이용시 적용되는 이자율(rate of charge)과 IMF의 자금운용상 요청으로 SDR을 보유할 경우 적용하는 보상이자율(remuneration)을 결정하는 경우 등 일부 중요한 결정에는 70% 찬성이 필요하다. IMF의 기본구조변경과 관련된 사안 즉 쿼터증액, SDR 배분, 금매각결정 등의 경우에는 85%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 18%의 투표권을 부유하고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융자제도

(1) 규제와 융자

IMF의 중심적인 역할은 국제통화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환율과 국제수지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IMF는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규범을 제정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한편 환율과 국제수지상의 어려움을 겪는 회원국에게 단기적인 신용을 공여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여러가지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IMF는 규제보다는 신용의 공여를 통해 환율의 안정과 국제수지 문제의 해결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 융자제도

IMF의 융자제도에는 리저브트랑세, 신용트랑세, 특수융자제도 등이 있다. 리저브트랑세란 회원국이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회원국의 입장에서 보면 출자환급청구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용트랑세는 회원국이 국제수지균형이나 환율안정을 위하여 IMF쿼터한도 내에서 융

26) Ibid., p. xxviii

자받는 것을 말하며 1단계로 쿼터액의 25%까지 허용하며 1단계를 넘어가면 용자조건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된다. 주로 국제수지조정을 위해 이용되는 특수용자제도에는 확대신용공여조치(EFF), 수출변동개방보상용자(CCFE), 체제 이행용자(STF), 구조조정용자(SAF), 확대구조조정용자(ESAF) 등이 있다.

회원국은 자국보유 분할 발행분이나 자국의 4개 분할발행분²⁷⁾ 중에서 기금의 용자재원을 인출할 수 있다. 기금인출시 회원국은 자국통화와 동량의 다른 회원국통화를 구입하고, 수지균형과 보유상황이 개선되면 환매해야한다.

신용분할분담금에서의 인출은 보통 준비된 협정하에서 공급된다. 이 협정은 보통 1년간 유효하며, 인출은 분할별로 이루어지고 국제통화기금과 수지균형의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회원국들이 동의한 해당국의 경제목표수준에 부속된다. 확대된 기구하에서 생산, 거래 및 가격의 구조적인 부족에서 오는 심각한 국제수지불균형 국가는 3년간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수지균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은 보상용자제도, 추가용자제도, 신탁기금 및 보조금계정을 두고 있다.

보상용자제도는 수출대금의 불안정을 겪는 1차산물 생산국과 곡물생산의 실패나 수입곡물가격의 상승으로 곤란을 겪는 국가들을 보조한다.

추가용자제도는 1977년에 이사회가 설치하였는데 그 재원은 수지균형상 잉여금을 가진 국가에서 차용해 온다. 이 기구는 그들의 할당액에 비해 수지균형의 부족이 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1981년에 가능한 모든 추가용자가 행해진 후에도 원조할 수 있는 확장된 접근정책이 시도되었다. 이 정책은 1985년 12월 31일에 실효되었으나 이사회는 연장을 결의하였다.

보조금계정은 석유나 석유산물수입국중 도입가격 상승을 겪는 55개 회원국에 도움을 주었던 1975년 8월과 1980년에 설치되었으며 추가용자기구나 확대된 접근정책에서의 인출금에 대한 이자지불에 접한 저소득 개발도상국을 원조하기 위한 것이다.

신탁기금은 1976년 5월에 이사회가 설치하였는데 그 재원은 국제통화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판매이익과 자발적 기부금 및 차관으로 충당된다. 이 기금은 개발도상국중 특별한 지불균형상의 원조를 요구하는 국가에게 제공된다.

27) 각 해당국 할당액의 25%에 달한다.

그 밖에도 국제통화기금은 회원국에 대한 기술원조, 회원국들의 환율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수단의 제공, 자체의 활동과 여러 경제문제에 관한 연구, 보고, 발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3) 특별인출권(SDRs)

특별인출권은 IMF가 회원국들의 다른 통화리저브를 보충해 주기 위하여 회원국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자산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세계대외준비자산(world reserve)을 늘림으로써 장기적이며 세계적 필요에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IMF는 또한 현재의 특별인출권을 취소(cancel)하고 세계리저브를 감축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할당 또는 취소결정을 위한 기준은 그러한 권한의 행사결과가 IMF의 목적달성을 촉진할 것인가 그리고 세계경제의 과도한 수요와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회피하는 것인가하는 것이다. IMF는 특별인출권의 평가방법을 결정하는 권한과 현재의 방법을 변경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현재의 방법은 자산의 가치가 IMF에 의해 선정된 주요 5개국통화의 일정총액가치의 총계와 동등하다는 것이다. 이 자산은 회원국, IMF 및 IMF에 의해 결정된 공식적인 기구들이 보유할 수 있으며, 정관에 의해 또는 협정에 따른 기구에 의해 특정된 운영과 거래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 IMF는 회원국들에게만 특별인출권을 할당할 수 있지만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공적 또는 사적 기구들도 자신과 자신의 파트너들이 그들의 계정단위에 따라 특별인출권내에 지명되도록 주장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는 본래 의미의 특별인출권을 구성하지 않는다. IMF에 의하여 회원국에 할당되어진 특별인출권만이 특별인출권의 범위에 해당된다.²⁸⁾

(4) 서비스

회원국 또는 다른 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IMF는 보조금 또는 대출이라는 형식의 기부된 재원의 공급을 포함하여 재정적 또는 기술적 서비스를 수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IMF가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기준은 우선 서비스가 IMF의 목적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두

28) 특별인출권 이용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는 IMF협정 제20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번째로는 재정적 서비스의 수행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이 IMF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의 이용을 통해 해제되어야 하는 어떠한 의무나 부담을 IMF에 지우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한에 의한 “공급계정 (Administered Accounts)”을 통한 자산의 운용은 일반재정국을 통한 IMF의 활동을 규율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와 비교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적용될 수 있다.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IMF가 회원국의 동의없이 회원국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것은 아니다. IMF는 재정적 또는 기술적 서비스의 수행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충분히 사용하여 왔다.

4. IMF협정의 개정

(1) 제1차개정

국제통화기금의 규정중 특별인출권에 근거하여 새 제도를 설치하는 제1차 개정이 1969년 7월 28일에 발효되었다. 특별인출권은 각국에게 거래 가능한 통화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실가치는 국제거래에서 중요한 지위를 갖는 상품 및 용역의 5대 수출국 통화와 연동한 평균치에 기준하고 있다. 특별인출권에서 대표되는 혼합통화들은 각국 통화의 환율상의 불안정한 결과를 완충시켜서 특별인출권이 상대적으로 안정되도록 유지한다. 특별인출권의 출현은 국제통화기금 참여국의 현존보유자산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왔다.

(2) 제2차개정

두 번째 개정은 1978년 4월 1일에 발효되었는데 여기에는 국제통화체제에서 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국제보유자산으로서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인출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국제환협정을 담고 있는 유연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재정을 간편화하고 확장시키며, 총재와 고위직에 있는 각료 및 인사들로 구성되는 상설회의의 설치를 가능케하고 조직 측면의 개선 등의 변화가 있었다.

(3) 제3차개정

IMF는 개도국의 외채위기에 따른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0년 6월에 협정

을 세 번째로 개정하였다. 종래의 IMF협정에 따르면 용자상환 등 채무이행을 지체하는 회원국에 대해 일반자금의 이용부적격을 선언하고 강제탈퇴조치를 취하는 이외에는 별다른 규제수단이 없었다. 이에 따라 제3차 개정에서는 채무불이행국에 대해 일반자금 이용부적격 선언 후 투표권 및 IMF상의 권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벌칙조항을²⁹⁾ 개정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투표권의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표 L'을 추가하였다. 이 제3차개정은 미국의 협정개정수락을 받은 1992년 1월에 효력을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 제3차 개정협정을 수락하였으나 국내입법절차를 거쳐 조약으로 공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내적 입법절차의 미완료가 동협정에 따른 우리나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4) 자금지원조건관련 IMF협정의 개정

IMF 이사회의 많은 해석적 결정은 IMF의 조건부인출에 관한 재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였다. 자금지원조건에 관한 IMF의 법적·정책적 발전은 IMF 이사회의 절차를 통한 결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자금지원조건에 관한 법리의 발전은 IMF 협정에 대한 지난 1969년 7월 28일의 제1차 개정과 1978년 4월 1일의 제2차 개정을 통해 성문화되었다. 두 번에 걸친 개정은 그 동안 IMF 이사회의 결정이나 실행에 의해 형성된 규칙들을 조문화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1978년의 개정은 예외적인 신용제도(exceptional facilities)의 발전 가능성에 관한 여지를 주고 있다. 다만 1944년 설립협정상의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지적되어 왔던 '표명한다'(represent)가 1947년 3월 10일 이사회결정에서 보다 명확한 '선언한다'(declares)를 의미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69년 설립협정 제5조 제3항(a)(i) 및 1978년 설립협정 제5조제3항(b)(ii)에서는 기존의 1944년 설립협정상 '표명한다'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된 제5조제3항의 조건은 IMF의 판단이 조건부 인출에 있어 절대적으로 그 요체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개정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IMF의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과거에 자동인출권(automatic drawing rights)을

29) 제12조제3항 (i)에 (v)를 추가하였고 제26조제2항을 개정하였다.

강력히 지지하였던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의 명시적인 요구에 의해 새로이 삽입되었다는 점이다. 1945년 설립협정 제5조제3항의 IMF의 이익을 제기할 권리를 둘러싸고 있어왔던 논란이 1969년 개정에 의해 확정적으로 명시되었다.³⁰⁾

30) 高俊誠, IMF의 資金支援條件에 관한 法 및 政策의 考察(上), 通商法律, 1998. 2. 47면.

제3장 IMF협정의 해석

1. 유권적 해석과 비공식적 해석

IMF의 모든 행위는 어떠한 경우이든 IMF협정에 대한 해석을 표명하는 것이거나 해석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해석은 IMF의 법원칙을 설명하는 유권적 해석과 다른 결정을 규율하는 조항에 따라 채택되는 IMF의 결정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들 해석은 유권적 해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만약 어떠한 행위 그 자체가 어떤 종류의 결정이 아니더라도 또한 그 행위가 어떠한 종류의 결정에 의해 명백하게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당해 행위는 IMF의 법원칙에 관한 일정한 요인 또는 요인들의 의미에 관한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분석이 사실과 다르다면 결론은 IMF가 적용해야 할 법에 따르지 않거나 또는 그 효력에 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채택한 IMF의 행위가 될 것이다.

IMF의 모든 행위는 비록 새로운 해석 또는 이미 채택된 해석에 의하여 정당화된다는 설명이 덧붙여 질 필요는 없지만 본질적으로 해석적이다. 해석은 국제기구와 회원국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기능들이 적절히 이해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기구와 회원국은 협정에 따라 적용되고 이행되며 강제될 수 있게 된다.

IMF에 의한 해석은 IMF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현재까지 여러 해석들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어느 정도의 해석이 이루어질 것이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적 해석에 관한 조문은 IMF의 실행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³¹⁾ 이들 규정은 비공식적인 결정에 대하여 궁극적인 합법성을 부여한다. 만약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또는 만약 유권적 해석규정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간주된다면 이들 결정은 모두 유권적인 해석으로 변환될 수 있다. 이미 채택된 결정들은 오류가 없다고 보는 IMF 기관의 경향은 이전의 결정들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성을 축소하고 유권적 해석으로 받아들여도록 한다. 유권적 해석에 관한 규정의 다른 현저하고 지속적인

31) Joseph Gold, *Interpretation: The IMF and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3.

중요성은 IMF협정의 해석에 대하여 외부적 절차에 의존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³²⁾

이사회에 의한 협정의 유권적 해석을 위하여 언제나 투표의 과반수가 충족되어 왔다. IMF의 가중투표제도가 적용되어 왔으며 특별다수결은 요구되지 않았다. 즉 유권적 해석을 위한 요건은 IMF의 다른 기관에 의한 모든 다른 규정에 대해 요구되는 요건과 동일하였다.

해석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협정의 어떠한 규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원협정에 따라 총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만약 이사회의 권한을 확립하는 규정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라면 당해 권한이 총회에 의하여 이사회에 위임되었는지 또는 협정에 의해 직접 이사회에 부여되었으며 따라서 총회에 의한 위임의 대상이 아닌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위임될 수 없는 총회의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의 해석문제는 1차적으로 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했다.³³⁾

2. 해석규정의 몇 가지 문제점

(1) 해석을 요구해야 할 의무

현재의 IMF협정은 회원국과 IMF 또는 회원국 사이에 발생하는 협정의 규정을 해석하는 문제가 "결정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⁴⁾ 유권적 해석에 관한 이러한 규정들은 비록 IMF가 회원국의 비공식적 해석요구에 따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만약 문제가 회원국과 비회원국 사이에 제기된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 해석의 문제는 회원국의 비회원국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회원국들 사이에서 쉽게 발생하며 이 문제는 유권적 해석에 관한 규정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종류의 문제는 제11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해 왔다.³⁵⁾

32) Ibid., p.4.

33) Ibid., p.8.

34) 제29조(a)

35) 1. 비회원국과의 관계에 관한 의무

각 회원국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의무가 있다.

- (i) 비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의 영토내에 있는 자를 상대로 본협정의 규정 또는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여하한 거래도 행하지 않으며 또 제5조 제1항에 기재된 재정기관이 이러한 거래를 행하

IMF협정은 절차가 해석에 따라야 할 단계에 도달하였을 때 회원국이나 국제기구가 반드시 유권적 해석을 구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는 않다. 이 문제는 유권적 해석에 구속을 받아야 하는 회원국 및 국제기구의 문제와 구별된다. 회원국들이 유권적 해석을 추구하는 것에 구속되지 않거나 유권적 해석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것, 그리고 다른 회원국에 의해 시작되어 채택된 유권적 해석에 구속될 수 없다는 것은 법률적 또는 논리적 결론이 아니다. 유권적 해석을 요구하기 위한 의무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는 최소한 제기되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이 문제를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IMF는 또한 이 의무에 구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정의 기능이 IMF를 포함하여 문제의 당사국들을 당해 회원국들 또는 IMF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IMF 외부의 기구나 법정에 의한 해석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당해 문제가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회원국이 문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제3의 회원국에게 그와 같은 특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회원국도 회원국간에 또는 회원국과 IMF간에 발생한 해석문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3의 회원국은 이사회에 뿐만 아니라 총회에도 문제를 제기할 특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IMF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문제를 이사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당사국인 회원국간에 발생한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문제에는 국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원은 당해 문제를 IMF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협정의 해석에 관한 규정이 국제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법원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이사회에 문제를 제기

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ii) 비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의 영토내에 있는 자와 본협정의 규정 또는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거래에 협력하지 않는다.
- (iii) 비회원국 또는 그 영토내에 있는 자와의 본협정의 규정 또는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를 자국영토내에서 실시할 때에는 기금과 협력한다.

2. 비회원국과의 거래에 관한 제한

본 협정의 규정은 비회원국 또는 그 영토내에 있는 자와의 환거래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회원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기금이 위의 제한이 기금회원국의 이익을 해하고 또 기금의 목적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하도록 소송의 당사국인 회원국들에게 명령하여야 한다. 협정의 제29조가 법정지법(*lex fori*)의 일부로 인정되어 왔다면 더욱 이는 분명하다. 협정 제30조 제2항(a)와 총회결의에 대한 참가에 관한 관련규정은 회원국들에게 협정에 따른 자신들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채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유권적 해석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제29조의 준수는 의심의 여지없이 회원국 의무의 하나이다.³⁶⁾

(2) IMF협정문의 해석과 회원국

해석에 관한 규정의 의심스런 측면의 하나는 회원국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근거하여 자신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가, 또한 만약 문제가 회원국간에 또는 회원국과 IMF간에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들은 해석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호소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가 또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포기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협정의 문언은 강제적이지만 만약 한 회원국이 자신의 이해에 근거하여 문제를 처리할 수 없거나 문제의 당사국들이 자신들 간의 합의에 도달할 수 없거나 또는 당해 문제의 해결에 대한 압력을 견딜 수 없다면 이는 IMF와 회원국에게 매우 부자유스러운 것이다. IMF의 실행은 그러한 가능성이 협정과 불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스태프는 빈번히 문제를 제기한 회원국과 해석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만약 스태프가 회원국이 받아들이는 해석적인 양해를 제시한다면 더 이상의 어떠한 조치도 채택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에 관한 합의 또는 문제의 포기는 협정을 위반하지 않고 당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회원국은 문제를 유권적 해석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제연합(UN)의 특정 경비에 관한 국제사법법원(ICJ)의 권고적 의견에 나타난 몇 가지 견해는 아마도 위에 제시된 견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이들 견해는 회원국이 협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회원국간의 의무의 확실성을 해치고 무질서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권고적 의견의 어떠한 견해도 IMF와 관련된 상기의 견해에 상치되지 않는다. 권고적 의견은 국제연합의 기관이 이미 결정을 채택한 상황

36) Ibid., p.32.

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만약 각 회원국이 자국이 IMF의 해석적 결정을 무시할 권리와 자국의 문제를 자국의 다양한 이해에 근거하여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 IMF의 해석이 회원국의 재정적 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질서의 위험은 분명하지만 이 위험은 이러한 성격의 의무에 제한되지 않는다.

IMF가 해석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회원국들이 본의 아니게 자국의 이해에 근거하여 행동하도록 한다면 유사한 위험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IMF에 의한 제8조제2항(b)에 대한 더 이상의 해석이 없는 것은 동 규정의 효력에 대한 회원국들간의 불화에 그 원인이 있다.

IMF가 필요한 결정을 채택하지 않았을 때 회원국이 실질적인 이유로 자국의 활동에 있어 IMF협정과 관련한 자국의 해석에 자유롭게 의존한다면, 다른 회원국들이 그러한 해석에 대한 이의와 소송을 IMF에 제기하고 IMF가 유권적인 해석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IMF는 회원국의 이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협정의 절차에 따라 해석을 채택할 수 있다. 회원국과의 협의과정에서 회원국이 IMF총재의 협정규정에 대한 이해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협정의 시행자로서 IMF는 당해 국가의 관행에 대한 변경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어떤 조치를 채택하여야만 한다.

해석의 문제가 회원국과 IMF 또는 회원국간에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회원국을 통하여 IMF의 유권적 해석을 획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국내 또는 국제법원이 협정의 규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제29조의 절차는 단지 이들 두 범주의 문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국내 또는 국제법원이 자신들의 이해를 채택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들의 결정은 IMF에 대하여는 아무런 유권적 효력이 없다. IMF는 그러한 결정에 따르지 않는 유권적 해석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이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하는 것은 IMF의 결정 여하에 달려있지만 IMF는 어떤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이 현실 정치적 문제로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³⁷⁾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당해 법원이 협정을 조사하거나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협정이 입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37) Ibid., p.34.

영국법의 일부가 된 경우 협정의 용어는 다른 입법들과 마찬가지로 영국법원의 해석관할권에 종속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법률이 협정상 영국의 의무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입법된 경우 협정의 용어가 고려되어야 하며 만약 필요하다면 당해 입법의 의미 또는 범위에 관한 애매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명백히 협정의 당사국이 협정의 조건에 합치되도록 선택한 국내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원은 당해 계약의 당사자가 갖는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정의 해석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³⁸⁾

(3) IMF해석의 구속력

IMF의 회원국은 IMF의 해석에 구속된다. 만약 해석이 최종적인 것이라면 또는 비록 아직까지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총회에 전달되고 이사회가 자신의 해석에 근거하여 행동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협정 제29조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다.

해석적 결정의 기초 위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이사회가 회원국에게 당해 결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제29조에 따라 채택한 이사회의 결정이 총회에 부의되지 않는다면 당해 결정은 최종적으로 회원국을 구속한다. 총회의 결론이 있기까지 이사회의 행동에 기초가 되어온 총회에 부의된 이사회의 결정은 그 사이에 구속력을 갖지만 최종적이지는 않다.

제29조에 의하면 유권적 해석이 회원국을 구속한다는 것은 제31조제2항(c)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 협정에 서명한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에 따라 이 협정을 승인했음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미국 정부에 기탁하여야 하며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³⁹⁾ 이 규정은 각 회원국에게 협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으로써 IMF의 해석적 결정이 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는 전제를 지지하는 것이다. 만약 회원국이 이러한 해설에 따른다면 회원국이 제29조를 승인하였기 때문에 의무이행은 IMF에 의한 유권적 해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제31조제2항(a)는 명백히 협정상의 ‘의무’만을 의미하며 따라

38) *Maclaine Watson & Co. Ltd. v.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1989] 3 All E. R. 523.

39) 제31조제2항(a)

서 이는 회원국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들까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해 규정은 회원국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의 유권적 해석이 회원국을 구속한다는 결론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지만 제29조 자체는 모든 회원국이 모든 유권적 해석에 구속된다는 결론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기초이다.

마찬가지로 제9조제10항은 동 조항이 유권적 해석의 한 범주에 제한되어 있지만 회원국들이 모든 유권적 해석에 구속된다는 결론을 지지한다. 제9조는 각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각 회원국이 IMF에 허용해야 하는 지위, 특권과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제9조에 규정된 원칙은 제29조에 의한 해석의 대상이기 때문에 IMF에 의해 유권적으로 해석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당해 규정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설은 부정적인 결론도 또한 갖고 있다. 협정의 규정과 협정규정에 대한 IMF의 유권적 해석은 법률상(de jure) 회원국을 구속하지만 사실상(de facto)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협정의 규정과 협정규정에 대한 해석이 회원국을 구속할 때 뿐이다. 이러한 결론은 관련된 회원국의 의무가 적절한 국내적 기관의 매개를 통해서만 수행되어 질 수 있을 때 특히 분명해진다. 법원은 그러한 국내적 기구의 한 예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론은 만약 회원국이 협정규정을 특정한 국가를 통해서만 준수할 수 있는 경우, 이 국가는 자신이 국내법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를 결정하여야만 하며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그들은 협정의 관련 규정을 고려해야 할뿐만 아니라 그들 규정에 대한 IMF의 유권적 해석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협정의 체결당사국이 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것을 자국의 헌법이나 다른 국내법에 근거하여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은 국제법의 확립된 원칙이다. 협정상의 의무준수에 대한 실패가 회원국의 의무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회원국으로부터 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IMF는 제31조제2항(a) 또는 제9조제10항에 근거할 필요가 없다. 국제법과 협정 제29조의 복합적 효과는 IMF가 회원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협정에 근거하여 당해 회원국에 대하여 재제와 교정(remedies)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데 있어 충분한 근거가 된다.⁴⁰⁾

40) Joseph Gold, *Interpretation: The IMF and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

만약 회원국이 협정에 대하여 국내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부여해 왔다면 국내 법원에 의하여 고려되고 있는 문제에 관련을 갖고 있는 유권적 규정의 해석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데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지 않다. 당해 규정은 국내법원이 IMF의 해석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효력을 갖을 수 없다. IMF의 유권적 해석은 당해 규정의 공식적 의미를 결정한다. 만약 몇몇 이유로 인하여 회원국의 법이 유권적 해석에 대한 국내적 효력 부여를 위하여 추가적인 권위를 요구하는 경우에, IMF는 회원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회원국은 IMF의 유권적 해석을 회원국법원이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근거에서 제안된 유권적 해석의 승인을 거부해 왔다. 회원국들은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꺼리는 듯하다. 이러한 반대의 이유는 만약 유권적 해석이 이루어진 규정이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 받는다면 해소될 것이다. 즉 IMF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관련있는 경우 IMF의 조문을 적용하여야 하는 국제법원은 반드시 당해 조문에 대한 IMF의 유권적 해석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협정이 직접적으로 유권적 해석을 존중하도록 법원을 구속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더욱 방어적으로 분석한다면 회원국의 법에 구속받는 회원국의 기관들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IMF의 유권적 해석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원에도 동일한 추론에 의하여 국제법과 IMF의 유권적 해석을 적용하도록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IMF의 해석적 결정의 대부분은 비공식적이다. 회원국은 이러한 결정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결론을 위한 법률적 기초는 유권적 해석의 경우보다 덜 모호하다. 이론적 근거는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 우선 투표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협정의 모든 내용은 회원국들이 체약당사국이 됨으로써 협정을 존중하겠다고 합의하였기 때문에 필요한 투표권에 의하여 채택된 모든 결정이 협정의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존중되어야 함을 함축하고 있다. 어떤 특정 부류의 결정에 대하여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IMF는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협력을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속적인 기구로서 설립되었다.⁴¹⁾ 회원국들이 만약 해석적 결정이 비공식적이라거나 다른 이유로 IMF

national (1996) p.38.

의 결정을 무시한다면 IMF를 통한 국제통화의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4) IMF의 해석에 대한 이의제기

(가) 회원국 요청에 이의를 제기할 IMF 권리의 확립

IMF가 활동을 개시한 후 미국은 이사회의 해석적 결정을 통해 회원국의 국제수지요청에 IMF가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확립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이 당시 약 35%에 달하는 가중투표권을 가지고 있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설립협정 입안 당시의 어려움을 경험한 것에 기인한다.

1948년 3월 10일의 결정에서 이사회는 어느 회원국의 다른 회원국통화의 매입필요표명(representation)이 IMF에 의한 심사대상에 속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회원국으로부터 요청받은 IMF 재원의正当한 이용에 관한 판단은 그러한 재원의 공여에 있어서 결정적이다. 따라서 바로 이 결정이 사실상 회원국의 기금으로부터의 인출을 위한 조건을 규정할 IMF권리의 기초가 되었다. 이로써 회원국의 IMF 자금지원신청에 대해 IMF 이사회가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확립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1948년 3월10일의 결정은 IMF 설립협정을 개정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²⁾

(나) 유권적 해석과 비공식적 해석

비공식적 해석적 결정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 회원국은 회원국이 반대하는 비공식적 결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유권적 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회원국이 유권적 해석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절차는 회원국이 반대하는 비공식적 해석에 대한 비공식적 재고(reconsideration)를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절차에 따르지도 않으면서 회원국이 이사회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IMF는 당해 회원국이 협정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며 IMF의 협정에 따라 재제 또는 교정조치(remedies)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유권적 해석과 비공식적 해석 사이의 차이는 한편으로 유권적 해석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ipso facto) 협정의 위반으로 간주되고, 회원국이 비공

41) 제1조 (i)

42) E. Denters, *Law and Policy of IMF Conditionality*,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76. ; 高俊誠, 앞의 글, 36면에서 재인용.

식적 해석에 대한 자국의 준수거부로 인하여 위반상태에 있는가하는 문제는 조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사는 비공식적 해석의 정확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대안적 정리는 회원국이 유권적 해석에 대하여는 최종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비공식적 해석에 대해서는 최종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유권적 해석을 존중하지만 비공식적 해석을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두 가지 해석 사이에 기본적인 구분을 할 것이다. 유권적 해석과 비공식적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비공식적 결정은 추정적이기는 하지만 협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의 결정적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여기서 논의되어야 할 마지막 문제는 IMF가 유권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현재 효력을 갖고 있는 자신의 해석적 결정의 준수에 구속되어야 하는 명백한 결론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이다. IMF가 협정시행의 담당자이기는 하지만 IMF는 협정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의하여 법률적 분석은 매우 복잡해지게 된다. 법률적 분석을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사실은 협정에 의해 IMF가 해석적인 성격을 갖는 것을 포함하여 자신의 결정을 무효화하거나 개정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협정은 IMF 자체에 대하여 적용될 벌칙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IMF에 대한 소송도 IMF가 갖는 면책특권에 의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⁴³⁾ 청산(liquidation)이 벌칙의 부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는 IMF의 불법적 행위나 행정상의 오류에 명백히 관련된 것은 아니다.⁴⁴⁾ IMF의 행위에 반대하는 회원국은 자유롭게 즉시적 효력을 갖는 탈퇴를 할 수 있으며 회원국은 탈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다른 국제기구에서 시행의 오류를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취해 왔다. 만약 회원국이 IMF로부터 탈퇴한다면 실제적인 결과는 청산(liquidation)이다. 오로지 총회만이 IMF의 청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격한 결정에 대한 특정한 이유를 강변함이 없이 투표의 과반수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협정은 IMF가 자신의 해석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대한 법률적 근거

43) 제9조제3항

44) 제27조제2항

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분명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IMF가 회원국과 IMF 사이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에 대한 결과로써 도달한 유권적 해석에 일치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IMF와 회원국 모두에게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그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건간에 최종성(finality)은 양당사자가 그들의 행위에 있어 반드시 존중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권적 해석이 상당히 소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례에서만 발견된다. 아마도 만약 IMF가 자신의 비공식적 해석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IMF에 대한 혐의는 협정의 前文의 “이 협정에 서명한 정부들은 다음의 사항에 동의한다. (i) 국제통화기금은 이 협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활동하여야 한다.”는 선언에 근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혐의는 협정규정이 무효화되거나 개정되지 않는 한 유권적이든 비공식적이건 간에 IMF가 협정 규정의 해석에 일치하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 발생하게 된다. IMF가 협정규정에 없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회원국의 정부는 정치적인 문제로서 IMF의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⁴⁵⁾

(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권리

1944년 설립협정 제5조제3항의 규정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이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하나는 자금지원조건의 원칙에 관한 문제로서 IMF가 회원국에 의한 매입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the right to challenge)라 함은 IMF가 ‘본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지불’이라는 상기한 자금지원조건의 준수에 관해 부정적 판단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IMF가 그러한 부정적 판단을 내릴 경우 IMF는 회원국에 의한 기금재원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다른 하나는 이와같이 IMF가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회원국의 매입요청에 대한 IMF의 부정적 판단의 사유는 어떠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제5조제3항의 상기한 조건은 설립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지불로 다른 회원국 통화의 매입을 제한한다. 그런데 문제는 매입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설립협정의 규정이 동협정상 제한적으로 입안된 일부 규정들로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설립협정 제1조에 언급된 목적들까지 고려해야

45) Joseph Gold, op. cit., p.41.

되는 것인지의 여부이다. 만일 제1조상의 목적까지 적용된다면 IMF는 회원국에 의한 매입요청에 대한 판단을 내림에 있어 보다 큰 재량의 여지를 갖게 된다.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두 단계로 전개되었다. 첫 단계는 당사자들이 설립협정의 개정협상을 통해 동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 경우 그 협정은 국가의 주권평등을 강조하는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따라서 일국일투표권이 적용되며 국가는 자신이 동의하기 전에는 합의결과에 구속받지 않는다. 이러한 설립협정의 개정노력은 지난 1969년 및 1978년의 개정(amendment)을 통해 결실을 보았다.⁴⁶⁾

두 번째 단계는 이사회가 설립협정의 기구절차에 따라 협상을 벌여나갔다. 이 경우 동 절차에 적용되는 규칙은 가중투표제와 다수결로 설립협정의 범위에 관한 해석적 결정(interpretive decision)을 내릴 권한이 그 특색이다. 그렇지만 이들 결정에 찬성하지 않은 회원국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결정들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유권적 해석의 사례⁴⁷⁾

현재까지 이루어진 IMF의 유권적 해석은 모두 협정의 제1차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며 통상 10건으로 언급되지만 12건이 있었다. 유권적 해석의 건수에 관한 불확실성은 초기의 유권적 해석을 개정된 투자에 관한 최후의 2건의 해석이 유권적 해석을 위한 절차에 의해 채택되었는가 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들 두건의 결정도 유권적인 것이다.

(1) IMF 창립총회 당시 인도는 5번째의 IMF쿼터를 가지고 있었으나 만약 제1차 총회 이전에, 소련과 같은 다른 국가가 가입하게 되면 인도는 IMF의 이사를 지명할 수 있는 다섯 번째의 쿼터국 자리를 양보하여야 되었기 때문에 인도는 이 문제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였다. 이는 원협정 규정 제18조의 해석 문제로 제기되었다. 총회는 이 문제를 이사회에 부탁하였고 이사회는 1946년 5월 8일 정기선거(regular election) 당시 또는 정기선거와 정기선거의 사이에 5대 쿼터를 갖고 있는 회원국은 다음 정기선거 이전까지 이사의 지위를 갖

46) 高俊誠, 앞의 글, 34면.

47) Joseph Gold, *Interpretation: The IMF and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p.50~58.

는 이사를 지명할 권리를 갖는다고 결정하였다.

(2) 미국의 브레튼우즈협정법 제13조는 미국에 의해 지명된 총회의 대표와 이사에게 IMF의 재원이용이 다른 회원국의 주기적이며, 불경기를 반영하는 그리고 비정상적인 국제수지변동과 관련하여 회원국을 잠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의 통화안정운동을 넘어서까지 적절히 확대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 IMF는 자신의 재원을 구제(relief), 재건(reconstruction), 또는 군비(armaments)를 위한 시설제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또한 어떤 회원국의 광범위하고 승인된 자본의 유출을 충족하기 위하여 IMF가 자신의 재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하여 신속히 공식적인(유권적인) 해석을 요구하였다.

이들 문제의 일부는 협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답변이 이루어져 있는 듯 하지만 미국에 의해 요구된 해석의 동기가 된 우려는 미국의 브레튼우즈협정법 제13조의 표면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하지만 케인즈는 IMF에게 제2차대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구제 또는 복구를 위한 시설의 제공이나 국제적 부채의 처리를 금지하는 원협정의 제14조제1항, 그리고 IMF협정 제4조가 정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광범위하며 법적으로 승인된 자본의 유출을 위해 회원국이 IMF의 재원을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일부는 법적, 경제적 이유에 있어 거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⁴⁸⁾

IMF의 이사회는 협정의 규정이 IMF의 재원이용을 위한 권한은 통화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통화계정에 있어 국제수지적자를 잠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IMF의 목적에 따른 사용으로 제한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이사회의 해석은 어떠한 회원국도 이 문제를 총회에 제기하도록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다른 모든 회원국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석은 그 내용에 있어 'IMF의 목적에 따라'라는 부분에 대하여 순환론적으로 해석을 다시 요구하고, 총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총회에 의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의 해석을 '최종적'(final)인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실패하는 오류를 보였다.

48)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D. Moggridge(ed.),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Vol. 26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p.199~202. 참조.

'최종적'이라는 용어도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최종적인 해석들이 IMF와 회원국을 구속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또한 일단 결정이 최종적인 것으로 인정된다면 IMF의 내부 또는 외부의 어느 곳에도 더 이상의 이의제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해석에 관한 규정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해석 모두에 있어 총회의 결정만이 최종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어느 회원국도 이사회에 대한 문제의 제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다. 이사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회원국은 총회가 이사회의 결정에 대하여 번복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해 문제를 총회에 제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회원국은 IMF의 일반재원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이사회의 결정으로부터 최종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불확실성을 존속시킬 수 있다.

더욱이 이사회가 자신의 결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이사회는 '총회에 부의된 사안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신의 결정을 적용할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사회는 만약 당해 문제가 총회에 부의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권한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될 수 있다. 다르게 보면 이사회는 자신의 결정을 비록 최종적인 것이 될 수는 없지만 비확정적으로 (indefinitely)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비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총회에 해석문제에 대한 위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사회결정에 대한 최종성을 보류한다면 최종성의 목적은 좌절될 것이다.⁴⁹⁾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3) 이사회는 1946년 9월 26일 영국의 요구에 의하여 국내정책의 선택과 추진에 대한 회원국의 자유에 강력하고 불리한 영향을 갖는 협정규정의 정확한 의미에 관한 또 다른 유권적 해석을 채택하였다. 원협정은 근본적인 국제수지의 불균형(disequilibrium)을 개선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이 자국의 통화평가에 있어 변화를 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⁰⁾ 결정은 회

49) Joseph Gold, *Interpretation: The IMF and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54.

50) 원협정 제4조제5항(a)

원국이 자국통화의 평가에 있어 근본적인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변화를 도모하는 경우, IMF는 모든 관련된 상황의 측면에서 제의된 변화가 실제로 근본적인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결정할 것이 요구된다.⁵¹⁾

(4) 1949년 6월 10일 이사회는 제8조제2항(b)에 관한 유권적 해석을 채택하였다.

(i) 회원국의 사법적 또는 행정적 권한은 협정규정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다른 회원국의 환율관리규정에 상반되는 환율약정을 강제할 수 없다.

(ii) 이 원칙은 다른 회원국의 환율관리규정이 당해 포럼의 공공정책에 상반된다는 근거에서 반복될 수 없다.

(iii) 이와 마찬가지로 이 원칙은 당해 환율관리규정이 國際私法(private international law)에 의한 계약이나 계약의 이행을 규율하는 법이 아닌 회원국법의 일부라는 근거에서 반복될 수 없다.

(5) 제9조제7항에 따른 IMF의 통보에 있어 IMF의 특권에 관한 규정의 유권적 해석이 1950년 2월 20일 채택되었다. 이 문제는 미국 연방통화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of the United States)의 절차와 관련되어 있다.

(6) 체코슬로바키아의 강제적 제명과 관련된 IMF의 절차에서 1954년 8월 11일 이사회에 의하여 유권적 결정이 채택되었으며 1954년 9월 28일 총회에 의하여 확정되었다.⁵²⁾ 체코슬로바키아는 몇 년후 다시 복귀하였지만 1993년 1월 1일 체코공화국과 슬로백공화국간의 분리로 회원국의 자격이 정지되었으며 각국이 각각의 권한을 갖는 회원국이 되었다. 이때 채택된 결정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IMF는 회원국의 제명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당해 회원국이 협정 제15조 제2항(a)에 따른 IMF의 재원이용에 적격을 갖추지 못했음이(ineligible) 선언되어야 한다.

51) Selected Decisions, 3rd Issue (Washington, D. C., 1965), p.17.

52) Ibid., p.99.

(나) 일정한 기간이 당해 조치와 관련하여 규정되었는가와 관련없이 그리고 당해 회원국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와 관련없이 당해 회원국이 협정 제15조 제2항(a)에 따른 IMF의 재원이 용에 적격을 갖추지 못했음이 선언되어진 후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time)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 당해 회원국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자국에 대한 제소(Complaint)내용을 통지받아야하며 구두(orally) 그리고 서면으로(in writing) 당해 문제와 관련된 사실적 또는 법적 주장을 IMF에 제출할 적절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7) 원협정은 회원국이 자국의 통화에 대신하여 12개월 동안 자국의 할당액의 25%를 넘지 않는 금액에서 다른 회원국의 통화를 구입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5년 8월 24일에 채택된 IMF의 해석에 따르면 이 규정은 회원국들이 일시적 이용 외에는 어떠한 다른 이용도 할 수 없다는 원칙에 반하여 회원국이 IMF의 재원에 대한 지속적인 이용을 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8) 미국은 IMF의 초기에 행정적자(administrative deficits)로 인한 문제가 의회와 여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고민하였다. 여론은 IMF의 적자로 인하여 특히 적자가 운영비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미국의 지분가치가 감소된다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IMF가 행정적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투자를 하기 위한 IMF의 묵시적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1956년 1월 25일 IMF는 IMF가 미국에 대하여 미국 달러의 획득을 위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금(gold)의 일부를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당해 결정에 설립된 조건에 따른다는 유권적 해석을 채택하였다. 당해 투자를 위해 규정된 조건은 투자의 재정적 목적과 법적인 고려 양자 모두에 의하여 요구되어졌다. 유권적 해석은 만약 조건이 충족된다면 고려하고 있는 투자는 협정과 법률적으로 양립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결론보다 더욱 광범위한 것이었다.

(9) 1956년 1월 25일의 결정은 원협정 제4조제8항(a)와 투자에 상당한 자산의 관계를 다루는 두번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당해 규정에 따라 "어느 회

원국의 통화에 대한 환율평가 또는 외국환율평가에 있어서 변화에도 불구하고 IMF의 금가치(gold value) 자산은 유지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가치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 IMF는 투자의 모든 측면이 미국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이 자국통화의 대외적 가치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의해 의무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⁵³⁾ 全時期에 걸쳐 설명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통화를 발행하는 회원국이 제4조제8항(a)에 따라 IMF에 통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10-12) IMF의 누적 적자는 위의 8번과 9번의 해석을 채택한 이후 신속히 해소되었다. 1957년 11월 27일의 결정은 당해 투자가 장래의 적자에 대비하여 축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결정은 1956년 1월 25일의 결정에 의하여 명백히 개정되었기 때문에 당해 해석이 유권적 해석으로 채택되었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1959년 7월 24일의 결정은 유권적 해석인가를 밝히지 않고 투자프로그램의 총액을 확대하였지만 투자프로그램의 미국 정부채권의 장기만기를 단기만기로 대체한 것은 당해 결정이 협정 규정의 유권적 해석임을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의 변경으로 간주되었다. 1960년 11월 30일의 결정은 투자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1961년 11월 3일의 결정은 당시까지 장기만기로 남아있는 채권에 의한 투자프로그램의 전체 총액중 일부의 투자를 허용하였다. 어떤 결정도 해석으로써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이 두 결정은 모두 앞의 결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공식화되었다.

초기에 발간된 결정문집(Selected Decisions)에서 유권적 해석으로 분류해 놓은 것에 근거하면⁵⁴⁾ 1957년 11월 27일의 결정과 그에 뒤따른 결정은 유권적 해석으로써 간주되어진다. 그리고 이 명확한 기준에 의하면 1956년 1월 25일 결정, 1959년 7월 24일 결정, 그리고 1961년 11월 3일 결정의 특정한 부분은 유권적 해석이다. 단순히 투자프로그램의 총액을 확대하는 결정은 유권적 해석 또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의 해석으로도 간주되지 않는다.

일부 결정의 유감스러운 점은 전체의 결정중 4개의 결정은⁵⁵⁾ 유권적인 것으로 명백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한 건은 ‘해석’(interpret)이라는 용어

53) Selected Decisions, 3rd Issue, pp.113~114.

54) Ibid., pp. xii.

55) 위의 결정중 1번, 2번, 10번 그리고 12번.

가 짧은 표현으로 사용되어졌으며 4개의 결정은 유권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진다. 결정들이 항상 특정한 협정의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라는 것을 서술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결정의 중심내용을 통해 어떤 규정이 해석되고 있는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또는 결정이 함축된 권한을 확인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특정 규정으로부터 추론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4. 협약의 해석절차⁵⁶⁾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에 있어 회원국과 기금간에 또는 기금의 회원국 상호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이사회에 회부하여 결정된다. 동 문제가 이사 임명권이 없는 회원국에 대하여 특히 영향을 미칠 때에는 당해 회원국은 제12조 제3항 (j)에 따라 대표자를 출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을 내린 경우 각 회원국은 동결정일자로부터 3월 이내에 총회에 회부하여 최종결정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총회에 회부된 문제는 총회의 해석위원회가 검토한다. 이 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총회는 동위원회의 위원자격 절차 및 의결정족수를 정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총회가 총투표권의 85「퍼센트」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별도의 결정을 하지않는 한 총회의 결정이 된다. 회부된 문제가 계류중일 때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은 이사회에 따라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기금과 탈퇴한 회원국간 또는 기금의 청산기간중 기금과 회원국간에 의견의 상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에 이것을 회부한다. 중재인 중 1명은 기금이 지명하고 1명은 회원국 또는 탈퇴회원국이 지명하며 1명의 심판인은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사법재판소장 또는 기금이 채택하는 규정에서 정한 기타 기관이 지명한다. 심판인은 당사자간에 의견이 상위되는 모든 계정건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를 결정하는 전권을 갖는다.

56) 제29조

5. IMF자금지원의 근거와 해석

(1) IMF자금지원조건의 법적기초

IMF 자금지원조건에 관해 규정한 설립협정 제5조제3항(a)의⁵⁷⁾ 의미와 관련하여 1948년 3월 이사회가 내린 결정은 당해 규정이 설립협정의 규정 및 설립협정 제1조상의 목적 양자 모두를 가리키는 것임을 밝힌 것이다. 여기서 규정은 설립협정 제5조제3항의 규정과 그 밖의 명시적으로 표시된 설립협정의 규정들로서 이러한 규정들은 제한적이고, 기술적이며 따라서 IMF로 하여금 그 적용에 있어 별 다른 재량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목적은 설립협정 제1조에 언급된 IMF의 목적과 관계되며 특히 '적절한 안전장치하에서' 재원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는 제1조(v)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적절한 안전장치'는 제한적이지 않고 따라서 IMF로 하여금 그 해석에 있어 넓은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IMF협정에 따른 조건

먼저 IMF 설립협정의 규정에 명기된 조건들은 회원국이 어떻게 매입요청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다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여 준다. 이러한 조건들의 준수에 관한 IMF의 회원국요청평가는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는 기속적 재량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회원국은 자신의 요청이 수락될 것인지의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된다.⁵⁸⁾

설립협정 제5조제3항(b)에서는 기금재원의 이용조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첫째, 회원국의 기금일반재원이용은 이 협정의 제규정 및 이 협정에 따라 채택된 제정책과 부합되어야 한다.

둘째, 회원국이 국제수지 및 대외준비상태나 대외준비의 변동으로 인해 매입

57) 기금은 대기성차관약정이나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을 포함하여 기금의 일반재원이용에 관한 정책을 채택한다. 또한 기금은 특수한 경우에 국제수지조정을 위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국제수지문제를 해결하려는 회원국을 지원하고 기금의 일반재원의 일시적 이용에 대한 보장조치가 되는 특별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

58) 高俊誠, IMF의 資金支援條件에 관한 法 및 政策의 考察(上), 通商法律, 1998. 2. 38면.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매입신청이 준비부분에 대한 매입이든가 또는 동 매입신청으로 기금의 한 가입국 통화보유액이 동 회원국 할당액의 2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기금이 본조 제5항, 제6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a)에 의하여 매입 희망회원국이 기금의 일반재원의 이용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선언한 일이 없어야 한다.

(3) IMF 목적에 따른 조건

다음으로 IMF의 목적으로부터 추론되는 조건들은 제한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IMF에게 그 해석상 상당한 재량의 여지를 부여한다. 이러한 IMF의 목적은 설립협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중 자금지원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v) 적절한 안전장치하에서 회원국에게 기금의 일반재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로써 회원국이 국내 또는 국제적 번영을 파괴하는 조치에 의하지 않고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회원국들에게 신뢰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금은 기금의 모든 정책 및 결정에 있어 설립협정에 규정된 목적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설립협정 제1조의 마지막 문장도 의미가 있다. 여기서 특히 제1조제(v)항의 ‘적절한 안전장치하에서’라는 문구는 설립협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 이외에 다른 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는 상당한 여지를 허용한다. 즉 이는 IMF로 하여금 회원국에 의한 매입이 보충적 규정(supplementary rules)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정책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⁵⁹⁾

(4) IMF 조건부자금지원제도의 발전

(가) 스탠드바이약정(1952. 2. 13. 이사회결정)

1952년 2월 13일의 IMF 이사회 결정은 일정한 기간동안 단계적인 인출을

59) 제1조제(v)항의 ‘적절한 안전장치하에서’라는 문구의 해석에 관하여는 高俊誠, 앞의 논문, 39면~41면 참조.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급하였다. 1952년 10월부터 1953년 12월까지의 여러 이사회결정들에서는 스탠드바이신용약정(Stand-By Credit Arrangement)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회원국들은 정해진 기간동안 IMF의 통제없이 일정규모의 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보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스탠드바이 약정에 따른 권리는 이사회에 의한 설립협정 제5조제5항에 기한 공식의 부적격선언, 이사나 총재에 의한 그러한 요청 또는 긴급조치의 포고에 의해서만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말해 IMF는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일시적으로 요구되는 통화를 매도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신용(Credit)이란 말은 삭제되었다. 스탠드바이약정이 IMF 자금지원조건에 있어 핵심적인 수단으로 발전하여 왔다. 오늘날 IMF 지원을 요청하는 모든 회원국들은 스탠드바이약정의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⁶⁰⁾

이러한 스탠드바이약정은 최대 6개월간 지속될 수 있다. 이사회는 보다 긴 기간에 걸친 경제상황의 평가는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주장한 것이다. 그럼에도 1953년 12월 23일의 이사회결정은 IMF로 하여금 보다 긴 기간의 스탠드바이약정을 허용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

(나) 추가양해(1953. 12. 23. 이사회결정)

1952년 2월 13일 이사회결정에서는 스탠드바이약정이 원칙적으로 6개월간 지속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1953년 12월 23일 이사회결정은 이와 같이 6월 이상의 긴 기간의 스탠드바이약정에 대해서 IMF는 추가적으로 양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고 추가양해는 스탠드바이약정의 조항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들 조항은 그 후 표준조항(standard provisions)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스탠드바이약정은 원칙적으로 IMF 이사회의 매입승인이라는 단일의 결정에 의해 즉시 인출에서 이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여준다. 스탠드바이약정의 경우에 있어 IMF는 정기적인 협의와 단계적인 매입을 통해 매입된

60) 현재 IMF의 중심적 자금공여수단으로서 스탠드바이약정은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간 회원국 쿼터의 100% 이내를 한도로 하여 이루어진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0% 한도를 초과하여 공여한다. 이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IMF는 당해 회원국에게 구조조정 등의 정책이행의무를 부과한다. 1997년 12월 3일 우리나라가 받은 IMF자금도 스탠드바이 자금이다.

통화의 정당한 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한다. 만일 중간협의(interim consultation) 및 객관적인 이행기준(performance criteria)에 대한 심사후 안정화정책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하면 당해 회원국은 기금으로부터 추가매입을 거부당할 수 있게 된다.

(다) 스탠드바이약정의 표준조항

IMF의 실행에 있어 스탠드바이약정은 조건부 국제수지 지원을 위한 중요한 문서로 발전하였다. 스탠드바이약정의 조항들은 이행기준과 협의 및 단계적 매입허가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이행기준에 관한 조항은 IMF로 하여금 안정화프로그램의 진전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 이행기준은 IMF의 목적을 실현하는 대상과 더불어 프로그램의 이행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준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국이 처한 문제 및 법규칙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이행기준의 범위 및 내용에 관해 어떠한 일반원칙을 추론하기란 어렵다.

단계적인 매입허가에 관한 조항은 수년에 걸쳐 스탠드바이약정의 표준조항으로 발전하였다. 여기서 협의 및 단계적 조항 모두 회원국이 IMF의 재원을 이용하는 동안 안정화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수행되도록 보장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갖는다.⁶¹⁾

협의조항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프로그램의 진전에 관해 IMF의 의견을 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조항은 모든 스탠드바이약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행기준조항, 단계적 매입허가조항 및 협의조항 등은 회원국이 상위크레디트트랑셰(upper credit tranche)에서 매입을 하는 동안에만 그 스탠드바이약정에 포함되어 적용된다. 단 단계적 매입허가조항은 예외적인 경우에 생략할 수도 있다.⁶²⁾

61) 高俊誠, 앞의 논문, 44면.

62) 상위 크레디트 트랑셰의 개념은 IMF신용제도에 의한 것이다. IMF가 회원국에게 재원을 공여하는 지원제도로서 정규신용제도인 트랑셰정책(tranche policy)하에서 회원국이 자신의 IMF 출자쿼터의 25%까지 매입할 수 있는 리저브트랑셰(reserve tranche)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도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회원국이 국제수지상 필요한 경우 자국의 쿼터의 25%씩 각각 1차분부터 4차분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그 인출을 허용하는 신용트랑셰(credit tranche)는 IMF에서 인출할 수 있는 일반지출권준비자산(reserve position)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IMF 회원국은 할당액을 25%

이와같은 정규신용제도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IMF의 신용제도로서 1974년 확대신용제도(Extended Fund Facility)가 신설되었다. 이는 구조적 요인으로 국제수지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국제수지 기반이 취약하여 적극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할 수 없어 정규신용제도보다 장기의 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상 3년에 걸친 중기정책목표와 그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및 최초 12개월간의 상세한 정책목표 이행계획 등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확대약정(extended arrangement)이 필요하다. 또한 더욱 장기간의 조정기간과 크레디트 트랑세 및 확대신용에 의한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대규모의 자금지원을 요하는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1981년 확대금융지원(Enlarged Access Facility: EAF)이 신설되었다. 이는 상위크레디트 트랑세의 스탠드바이약정이나 확대약관과의 연계하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는 SDR로 나머지 75%는 자국통화로 납입하여야 한다. SDR로 납입한 25%부분을 리저브포지션이라고 한다. 회원국이 IMF에서 인출할 수 있는 총일반인출권(GDR)은 할당액 200%인데, 자국통화로 납입한 75%는 제외되므로 결국 125%이고 여기서 다시 리저브포지션 25%를 공제하므로 결국 할당액의 100%가 신용트랑세이다. 신용트랑세는 제1-제4신용트랑세로 구분하고 각각 25%씩이다. 따라서 한꺼번에 100%를 인출할 수 없고 단계별로 인출하여야 한다. 상위단계로 올라갈수록 인출절차가 까다로워 보통 제2트랑세까지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2단계 이후의 인출을 가리켜 '상위신용트랑세'라고 한다. 이러한 상위 신용트랑세를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지원조건이 포함된 IMF의 스탠드바이 약관이 필요하지만 제1신용트랑세에 대하여는 그러한 스탠드바이약정이 없이도 인출이 가능하다.

제4장 해석기준으로서 IMF의 이념과 법률자문가의 역할

1. IMF의 이념

(1) 협정해석의 기준으로서 IMF의 이념

비록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는 본문에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해석은 협정본문내용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기능이다. 법률자문가들의 견해는 해석권한을 행사하는 IMF직원들을 구속하지 않는다. 법률자문가들의 영향력은 그들이 협정의 협상과 약정에 참여하였는가, 그들이 해석을 요구받았는가 그리고 그들이 당해 협정이 어떻게 채택되었는가에 관하여 내부자로서의 지식을 갖고 있는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존한다. 이러한 지식은 장점이 되지만 법률자문가들이 협정의 초안작성을 지원하하는 경우 그들이 의도했던 의미표현으로 협정을 해석하도록 편견을 주게 된다. 비록 협정에는 명백한 개념설명이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협정문을 해석하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률자문가들은 IMF의 이념을 마음에 유의하고 있어야 한다. 즉 IMF는 회원국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떠한 활동을 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는가를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

협정 제1조에 나타나 있는 IMF의 목적은 IMF의 임무에 관한 원칙을 정함으로써 IMF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에 더욱 가깝다. 지금까지 협정 제1조에 나타나 있는 목적들은 그 자체가 해석을 요하고 있다. 더욱이 목적으로서 공식화되어 있는 IMF의 목표는 합의의 외교적 성격과 기술적 성격으로 인해 제1조 이외의 조항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해석자는 좀더 완벽한 해석을 위해 이러한 요소들을 이해하여야 한다. 협정에 충분히 공표되었는가를 떠나 IMF의 이념은 배제될 수 없는 것이다. 결정권자에 의해 공감되지 않은 해석자의 이념은 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광범하게 인정되고 있는 IMF의 이념은 동기구가 회원국의 안정적인 수지균형을 달성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들은 정

책이 실시되는 회원국의 이익 또는 다른 회원국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정책에 의해 달성되어진다. 제1조 자체는 IMF의 존재이유에 관한 이러한 이념을 지지하는 부분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제1조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서술된 6개의 목표중 가장 최후의 규정은 문두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목적을 하나의 이념내에 구성요소로서 통합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즉 “전항에 따라(in accordance with the above) 회원국의 국제수지에 있어 불균형상태의 존속기간을 단축하고 완화한다.”⁶³⁾

이 목적은 그 자체로만은 너무 간결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IMF의 이념에 대한 부분적인 단서로만 서술되었다. 예컨대 조문은 단지 수지불균형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현재의 균형 또는 최소한 수지균형에 있어 지속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회원국을 지원하는 기능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기능은 조문의 前段文言의 ‘전항에 따라’라는 표현에 의해 IMF의 협정 제1조에 나타나 있는 목표중 여섯 번째의 목표에 통합되어져 있다. IMF의 임무는 IMF의 조정적, 재정적 그리고 자문적 형태의 권한행사를 통해 기구의 목적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것이다.

IMF의 이념은 회원국의 수지균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IMF가 제시한 문제가 수많은 해석의 의문을 제기하는 문제일지라도 수지균형을 무시할 수는 없다. 예컨대 IMF는 소위 예방적 대기성차관협정(precautionary stand-by agreement)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⁶⁴⁾ 그리고 예방적 대기성차관협정은 비록 협정체결 당시에는 당해 회원국이 수지문제에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지 않더라도 만약 미래의 일정한 기간에 회원국이 자국의 수지균형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IMF의 일반재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주는 것인가하는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 또한 IMF는 상징적 대기성차관협정(symbolic stand-by agreement)이라고 불리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가? 이 협정은 어떤 회원국이 건전한 수지상태에 있으며 계속적으로 그러한 상태를 유지할 것같다는 IMF의 판단을 회원국의 채권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IMF의 재원에 대한 최소금액접근만을 허용

63) 제1조제6항

64) 대기성차관협약(stand-by agreement)이란 IMF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기 위하여 체결되는 협정을 가리킨다. 이 협정을 신용한도(credit line)의 설정이라 볼 수 있으며 이 한도 내에서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대기성차관협약이 체결되면 대기성차관(stand-by credit)이 제공된다.

하거나 재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거나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접근에 대한 보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다. IMF 일반재원의 일시적 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협정에 의해 특정된 기본적인 기간은 3년에서 5년이며 개발과 같은 다른 목적이 아닌 수지의 지원에 일시적 이용이 사용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하에서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IMF는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연장된 기간을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⁶⁵⁾ IMF는 제5조제2항(b)에 따라 실시된 정책하에서 10년동안 연장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IMF의 목적과 일치해야되기 때문에 기간을 2배로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최장의 기간도 일시적인 것으로서 처음부터 간주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제8조제2항(b)는 IMF의 이념조항이 협정에 포함되었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 IMF이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상당기간동안 동조항은 IMF의 실무 직원들보다 학자들 사이에 더욱 관심의 초점이 되어왔다. 일부 논자들은 본문 상의(textual) 고려와 상충되게 그리고 IMF의 일부 이념에 대한 관련성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환율관리의 공표자(the promulgator of exchange control regulation) 사이의 계약은 이 조항에 의해 규율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해석은 비록 계약이 국제수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회원국들이 계약을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다루어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인정하는 저자들은 어떤 IMF의 이념이 자신들의 견해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왜 회원국들이 다른 회원국의 환율관리에 대하여 국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무를 수행하는 태도를 취해왔는지를 설명해야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⁶⁶⁾

(2) IMF의 해석권한

좀더 실질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문제들이 명백히 국제수지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문제들에 있어 IMF의 관련성과 관계되어 제기되어졌다. 예컨대 IMF에 대한 미국의 참여를 규정하는 미국의 법제는 기본적 인권상의 필요, 보건, 주택, 교육 등과 관련된 사회프로그램, 빈곤의 구제, 인종차별정책,

65) 제5조제7항(c), (d), (g).

66) Joseph Gold, *Interpretation: The IMF and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558.

농산물수출보조금지금,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불공정무역과 투자프로그램, 환경, 군사비지출, 그리고 자연자원의 관리 등과 같은 사항들을 IMF에 결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문제들은 당해 문제와 관련된 IMF의 일부 활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국제수지와 충분히 밀접한 관련을 갖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IMF의 재원을 이용하는 권한은 통화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통화계정에 있어 재정적 수지적자를 일시적으로 지원한다는 IMF의 목적에 따라 제한된다'는 1946년 9월 26일의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이에 만족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이러한 해석은 현재 IMF의 일반재원이라고 불리우는 것의 이용과 관련된 해석이지만 IMF가 회원국의 국제수지와 관련된 기관으로 인식되는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⁶⁷⁾ 문제의 의도와 이에대한 대응으로서 이루어진 해석이 IMF로 하여금 다른 재정분야 특히 세계은행의 업무범위와 중복되어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⁶⁸⁾

IMF에 있어 미국의 중요성은 미국의 법제에 따라 또는 어떤 다른 이유로 미국을 위해 이루어진 제안에 대해 진지한 고려를 하도록 하였다. 비록 IMF가 과거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성장이나 다른 관심사항에 대해 많은 주의를 하고 있지만 IMF의 원래 이념에 대한 IMF 또는 미국의 공식적인 거부나 개정은 없었다. 비정부적 차원에서의 비판은 IMF의 활동범위변화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더욱 공개적이다. 이들 비판은 IMF의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나 비판에 의해 옹호되는 개혁을 정당화하는 협정의 해석문제를 다루지도 않았다.⁶⁹⁾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비록 다른 어떤 법률적

67) 제5조제3항(b)(ii)는 "회원국이 국제수지 또는 대외준비상태(reserve position) 또는 대외준비(reserve)의 변동으로 인하여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하는 경우"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통화를 매입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재원이 수지와 전혀(wholly) 관계없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제안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제2차개정에 대한 주석에 의해 지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자국의 수지균형 또는 리저브포지션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또는 비록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수지개념에 따르면 자국의 수지에 적자가 없더라도 예컨대 임박한 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자국의 대외준비(reserve)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변경이 있는 경우 회원국은 IMF로부터 다른 회원국의 통화를 매입할 수 있어야 한다. 리저브 또는 리저브포지션에 대한 언급이 국제수지와 관련이 없지만 리저브가 안전한 수지를 지원하기 위해 주장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였다.

68) Joseph Gold, *Interpretation: The IMF and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559.

69) 환경보호론자들은 환경의 악화가 점검되지 않은 채 진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있어서 환경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한다 : "Seminar Explores

문제보다도 권한문제에 더욱 조심스럽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지만 IMF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⁷⁰⁾

만약 IMF가 해석문제를 무시하고 그 결과 자신의 권한의 적정범위를 넘는다면, IMF는 다른 국제기구들이 우선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목적들에 간섭하려고 시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국제기관과는 분별되는 IMF만의 책임도 손상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되면 IMF는 자신의 독특한 색채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은 현재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도덕적 이유의 추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로 인하여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기구들이 IMF가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거대한 재원을 현재 갖고 있으며 장래에는 더욱 그 재원의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IMF와의 협력을 추구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이다.⁷¹⁾

권한에 대한 느슨한 접근은 IMF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도 있지만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 다른 국제기구들은 IMF의 배타적인 권한에 속하는 문제들에 간섭하는데 있어 IMF가 다른 국제기구의 관할사항에 관여했던 사례에 의해 고무되어질 것이다.

제2차개정의 협상과정에서 몇몇 회원국들은 만약 제5조제2항(b)와 같은 규정이 개정된 협정에 포함된다면 IMF가 가치가 있는 사항이던 아니던간에 인정된 IMF의 이념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사소한 문제들에 연루되어질 것에 대하여 우려했다. 망설였던 국가들은 IMF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들이 IMF의 목적과 일치하여야 하며 IMF가 일반재정국 또는 특별인출권국(SDR Department)의 계정내의 자산에 의해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지는 재정적 책임이 수반되어서는 안된다는 경고만으로 양보하였다.

Links Between Marco Policy and the Environment," IMF Survey, Vol.22(1993), pp. 177, 187~190. 참조.

70) 1991년 초 IMF 이사회는 비공식적으로 IMF가 다룰 수 있는 환경문제의 범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IMF는 경제정책과 경제활동 그리고 환경변화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하여 유념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IMF의 활동수행이 지속적인 성장과 수지의 건전성을 증진하는 한편으로 IMF가 환경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을 피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사회는 IMF의 환경에 관한 업무수행이 모든 지역에 있는 그리고 모든 발전에 단계에 있는 작은 국가에게도 공평하고 보편적이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 IMF Survey, Vol.22 (1993), p.188.

71) Joseph Gold, op. cit., p.561.

(3) 국제수지균형과 IMF의 이념

국제수지균형을 위한 국제기구로서 IMF의 이념은 회원국의 거시경제정책이 포기되어서는 안되지만 어떤 회원국이 이를 포기한 경우 IMF가 심도있는 구조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IMF의 재정적 권한은 원래 IMF의 조정권한에 의해 회원국에 부과되었던 의무를 회원국이 준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의도되었던 것이다. 원칙적으로 재원은 회원국이 수지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자국통화의 고정환율기준으로 만족할만한 수지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각 회원국은 당해 조항에 따라 자국통화의 고정환율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통상 IMF와의 협력을 의미한다. 해석결정을 하는 중요한 기관은 통화의 유동계좌태환성(current account convertibility of currencies)과 상충하는 제한 및 차별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액면가와 환율에 관해서도 발전을 이루어 왔다. 제2차 개정에 의한 고정환율체제(par value system)의 폐지와 함께 IMF의 많은 권한과 IMF의 해석기관이 사라졌다.

협정의 범위내에 있는 통화문제에 대한 회원국의 조치들에 관한 IMF의 진정한 영향력은 IMF의 재정적 권한을 통해서 현재 거의 배타적으로 행사되고 있으며 IMF가 아직까지 자신의 조정권한 아래에서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IMF의 감시기능에 관한 연성법규범(soft law)을 형성하고 있다. IMF는 자신의 재원사용과 이 재원에 회원국들이 접근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IMF의 많은 해석적인 결정은 현재 자신의 재원이용에 관한 정책내용의 일관성과 회원국들이 재원에의 접근을 추구하는 경우 IMF의 정책과 당해 회원국프로그램의 일치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⁷²⁾

IMF의 조정권한에 대한 거부는 예상된 것이었으며 실제에 있어서도 많은 국가들이 제2차 개정안의 협상과정에서 그러한 시도를 하였다. 거부의 이유는 고정환율체제처럼 철저하게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어느정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문들은 IMF가 회원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확고한 감시'(firm surveillance)를 하고 회원국들의 정책과 관련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지침이 될 수 있는 일정한 원칙을 채택하여

72) Joseph Gold, op. cit., p.561.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³⁾ '확고한'이라는 용어는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이 단어는 IMF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욕적이고 열성적이어야 한다는 조문내에 들어 있는 유일한 지시이다. 미국은 종래의 IMF의 동의에 의한 선택으로서 고정환율에 의한 단일환율협정을 대신해서 회원국들이 자국의 환율약정(exchange arrangement)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적 환율배치체제의 정착을 지원하는 회원국을 이끌었다. 미국은 그 동안의 경험과 해석의 결과로서 "구체적 원칙"의 규범발전을 예견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종류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IMF는 세 가지의 구체적 원칙을 도입하였으며 그 중의 한 원칙은 협정내에 규정되고 단지 다른 두 원칙과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원칙으로 다시 받아들여졌다. 최초의 원칙들은 숫자나 범위의 확대없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원칙규범은 회원국들이 자신들의 환율협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것이다. 협정에 다시 언급되지 않는 다른 두 원칙은 연성법이다. 재량적 환율협정체제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정책을 결정하고, 변경하며 수정하는데 있어 외부적인 제한으로부터 자유롭도록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2. 일반차입협정(GAB)과 연성법(soft law)

(1) 일반차입협정(General Agreement to Borrow)

고정환율체제가 존재하는 동안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책임은 자국의 통화가 국제무역과 지불에 있어 갖고 있는 중요성때문에 주로 주요 선진 국가들이 부담하였다. 따라서 그들 국가의 상당수는 IMF의 재원을 이용하는 국가들중에서도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이들이 이용한 금액의 총액도 다른 회원국들에 의한 것보다 훨씬 많았다. 선진국들에 의한 IMF재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IMF는 연성법의 도구로써 회원국에게 협정 자체에 의해 어떠한 조건들이 부과되었는가와 관계없이 회원국이 IMF의 재원에 접근하는 조건으로 부과된 경제적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IMF협정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추궁으로부터 회원국을 보호하는 대기성차관협정을 고안하였다.

고정환율체제와 IMF의 성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선진국들에 의해 제기된

73) 제4조제3항(b)

좀더 명백한 책임의 확대는 일반차입협정(GAB)⁷⁴의 협상이다. 최초의 일반차입협정은 회원국과 IMF사이의 동의에 의해 동협정의 참가국을 8개의 회원국과 두 개의 추가회원국 중앙은행으로 하였다. 10개 참가국은 모두 선진국이다. 그들은 자국통화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통화보유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반차입협정이 차별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동협정은 다른 회원국이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199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최소한 1억달러의 가치를 갖는 중량과 순도의 금을 IMF에 납입하여야 한다. 생각컨대 이 정도의 금액은 개도국이 회원국이 참가하는 것을 단념하게 할 만한 막대한 금액이다. 일반차입협정의 규정에 따르면 참가의 중요성은 IMF가 일반차입협정의 참가국과의 재정거래에 대하여만 대출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일반차입협정은 참가를 신청하는 회원국 또는 중앙은행이 이미 결정된 최소한의 금액으로 표현된 협정상 총대부금을 선납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였다. 개정된 일반차입협정은 그 금액과 관계없이 가입시기에 현재의 참가국에 의해 이행된 최소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바꾸었다.

동일한 특혜적 대우의 사고방식속에서 주요 선진국과 최초의 10개 참가국은 자신들이 IMF의 재정관리에 자신들이 광범위한 권한을 갖도록하고 있는 일반차입협정내에 대부금공여국 또는 잠재적 공여국으로써 규정되도록 일반차입협정의 협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그들이 주장하는 권한이 IMF협정과 병존할 수 없다는 근거에서 IMF측의 협상대표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저지되었다. 그러나 소위 그룹10(Group of Ten)⁷⁵으로 자신들을 조직한 참가국들은 사실상의(de facto) 실체로써 IMF내에서의 표결권에 충분한 다수를 갖고 있으며 IMF의 주요문제와 IMF의 주요 설립목적인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결의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제1차개정의 협상과정에서 그룹10은 SDR의 창설을 위한 협정을 시작한 중

74) 일반차입협정은 IMF의 주요 10개국(Group of Ten)이 IMF의 자금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IMF에 대출할 것을 약속하는 제도이다. IMF입장에서는 차입이므로 이렇게 부른다. 이는 1962년에 설립되어 5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다. 이 협정은 IMF협정의 해석에 따라 자국통화의 태환의무를 준수하도록 특정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IMF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 Joseph Gold, *The Fund's Concept of Convertibility*, IMF Pamphlet Series, No. 14 (1971).

75) 미국, 캐나다, 일본, 스웨덴, 영국, 서독,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10개국을 말한다.

심집단이었다. 처음 그룹10의 입장은 선진국들만이 국제통화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리저브를 필요로 한다는 근거에서 새로운 대외준비 자산(reserve asset)이 선진국들에게만 할당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개도국들은 자국의 개별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통화재원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부분적으로는 할당(quotas)이 문제의 해결실마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당이 모든 회원국의 참가를 암시하고 있다면 새로운 통화자산의 할당을 위한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근거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큰 이유는 개도국으로부터의 특별인출권의 배당보류로 인한 정치적비용이 막대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독단적인 입장은 결국 포기되었다. 어떤 경우에서건 할당에 근거한 배당은 전체 배당의 작은 부분이 개도국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배당에의 참가를 보류하였을 경우 제기될 반감에 비교해 보았을 때 그 비용은 사소한 것이다.⁷⁶⁾

고정환율체제의 붕괴와 철폐의 결과는 개도국들이 IMF 재원의 유일한 이용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국가들도 IMF 재원을 이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들 회원국들의 숫자는 증가되었으며 국제경제에서의 영향력도 강력해졌다. 즉 이들 국가는 협정의 개정에 있어 거부권을 갖고 있으며 특정 규정에 의한 결정에 있어 특별다수결을 요하는 규정들하에 거부권을 갖는다. 선진국들은 자국이 필요로 하는 재원의 마련을 위해 금융시장에 참여해 왔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 국가는 개도국들과 함께 IMF의 재원이용에 대한 신청자로서의 지위에 서는 불명예를 회피할 수 있었다.

(2) IMF의 연성법규범(soft law)

IMF의 재원이용의 필요성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은 IMF의 재원이용에 관한 IMF의 정책의 숫자와 종류를 증가시켰다. 많은 결론들이 이러한 정책의 변화로부터 나왔다. 여러 가지의 이유로 연성법규범이 발전하였다. IMF는 회원국의 의무위반책임을 묻지 않고서도 회원국의 경제활동에 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IMF는 자신의 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위반에 대해 벌칙부과를 하지 않았으며 좀더 엄격한 행위기준을 개도국에게 요구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하

76) Joseph Gold, *Interpretation: The IMF and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563.

여 차별을 하는 듯한 모습을 피할 수 있었다. 만약 의무위반협약이 회원국의 경제정책준수실패에 근거하기 때문만이라면 개도국에 대한 차별이라는 평가는 IMF와 회원국 모두에게 불편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그러한 정책의 장점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것이다.

이미 발생한 변화된 해석기능의 하나는 경성법과 연성법의 구분에 대한 필요성이다. 다른 기능은 연성법의 준수실패에 대한 IMF의 재원보호를 위한 구제수단이 협정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은 IMF 역사의 상이한 단계에 있어서 해석과 관련하여 약간의 확대경향을 설명한다. IMF 초기의 해석경향은 IMF의 강제권한해석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그 이유의 하나는 새로이 설립된 국제통화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른 동기는 국제경제의 주요과제가 재설정되고 발전되었으며 국제수지를 유지하지 못했던 당시에 재원의 오용으로부터 IMF의 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해석이 IMF의 강제권한과 국제수지에 관한 기구로서 IMF의 이념을 분명히 하였다. 만약 강제권한의 해석이 IMF의 재정적 권한행사에 대한 장애를 너무 강하게 제기한다면 IMF는 비해석적 기술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IMF가 자신의 재원에 대한 좀더 많은 접근을 허용할 수 있게 된 후에 해석의 주된 임무는 연성법을 확대하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법개념의 선례는 권한 없는 고정환율의 변화를 다루는 최초의 조항에서 발견할 수 있다. 새로운 국제수지문제와 IMF의 재정적활동의 확대는 IMF의 재정적 권한에 관한 IMF의 법규범해석이라는 새로운 문제의 고려를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제2차 개정으로 고정환율체제가 폐지되었을 때 IMF의 권한축소에 의해 크게 자극 받았다. 국제수지의 개선과 자본시장에서의 재원의 이용가능성증가로 해석은 IMF의 성장에 대한 관심증가와 수지에 대한 관심약화를 정당화하는데 맞추어졌다. 이러한 IMF역사의 다양한 단계에 있어 해석기능의 주요변화에 대한 개요는 해석에 대한 목적론적인 접근방식에 지속적 증가에 대한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두 개의 상이한 등급에 속하는 회원국의 IMF와의 관련성에 있어 변화는 고정환율체제 이후 IMF의 관행에 의해 더욱 분명해졌다. 예컨대 일반차입협정은 비록 참가국의 필요성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안정장치와 함께 일반차입협정의 비참가국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협정에 의해 IMF가

차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도국이 국제통화체제에 있어서 선진국의 파트너이며 주로 선진국들을 위해 그리고 선진국들에 의해 조직된 통화체제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는 관련성에서 IMF와 개도국 간의 거래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재원의 활용가능성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관련성은 일반차입협정의 前文이 동협정의 목적으로 국제통화체제의 위협에 대해 사전예비하거나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IMF에 보충적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하다. 더욱이 총재는 IMF가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성격과 전체적 크기를 갖는 회원국들의 국제수지문제와 연관된 자금조달에 대한 실질적이며 예상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적절한 자원상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차입협정하에서 회원국에게 선납을 요구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⁷⁷⁾

관행의 다른 많은 측면이 개도국의 지위에 있어 발생한 변화를 설명한다. 위에서 언급한 그룹10의 활동은 위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은 아직까지 그 기능을 이사회에 반영하고 있는 조직으로서 개도국집단에 실질적인 숫자의 의식을 제공하고 있는 IMF의 중간위원회에 의해 이행되도록 만들었다.

3. IMF의 이념과 해석

(1) 획일성의 원칙

원협정의 초안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차이를 표현함이 없이 그리고 개발의 촉진이 IMF의 목적이라는 이념에 대한 승인없이 만들어졌다. IMF에 의해 승인된 해석은 IMF의 독자적인 관심이 회원국의 국제수지균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며 국제수지균형의 개념은 모든 회원국에게 동일하다는 것이다. IMF의 재정적 권한은 일반적자 및 잉여와 관련하여 행사되어 왔으며 국제수지균형에 있어서 특정한 항목과 관련하여 행사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고로부터 획일성의 해석원칙이 발생하였다.⁷⁸⁾

77) Ibid., p.565.

78) Gold, Uniformity as a Legal Principle of the Fund, *Selected Essays*, Vol. 1.

이 원칙은 개도국 회원국들이 선진국들에 비교하여 자신들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대우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반면에 동 원칙은 특별적 대우를 요구하는 개도국들에 대해 선진국들이 방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원칙은 대체로 실증주의적 고려에 근거하였으며 국제법상의 국가평등원칙에서 유추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은 정치적 전략으로써가 아니라 협정의 해석으로써 분명히 확립되어졌다.

모든 국가가 IMF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개념은 특별인출권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할당하는 권한으로써 그리고 할당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두 그룹 모두에게 적용함으로써 인정되어졌다. 이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등급의 회원국에 대한 정책의 혜택을 제한하는 것이 협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때문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회원국들이 정책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일성의 원칙은 협정 제5조제2항(b)에 따라 IMF에 의해 이행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원칙은 IMF의 다른 활동에도 적용되어져 왔지만 동원칙의 해석에 대한 정밀화는 IMF 활동의 범위와 유연성의 확대를 승인해 왔다. 모든 회원국에 대한 통일된 개념으로써 국제수지의 균형은 포기되지 않았지만, 국제수지에 있어 어려움을 야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그러한 구분이 협정의 해석에 있어 합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인정되었다. IMF의 재원사용에 관한 정책은 회원국들의 등급에 대한 차별적 성격보다는 국제수지균형문제에 대한 차별적 성격에 근거해 왔다.⁷⁹⁾ 많은 법원이 국내법에 있어 확일성원칙이 차별을 허용하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다만 이러한 차별은 자의적이어서는 안되며 해석되어져야 하는 규정에 관한 주제와 관련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확일성원칙은 차별을 배제하지 않는다.

모든 회원국에 대한 확일대우원칙이 협정내에 함축되어 있다는 해석은 여전히 유효하다. 확일성원칙에 대한 승인과 빈번한 인용의 동기는 개도국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거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원칙은 사실상 이들 회원국들에

Chapter 13, pp.469~519, at p.469.

79) Joseph Gold, *Interpretation: The IMF and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566.

게 우호적인 것으로 변형되어져 왔다. 이러한 변화는 동원칙을 정책의 혜택이 정책의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달성되어졌다. 정책은 특정한 국제수지문제가 정의되어져 있기 때문에 개도국에 대한 혜택을 위해 유효하게 수립될 수 있으며 그들에게 제한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그 성격으로 인해 선진국들과 정면대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협정 원안의 기초자들은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혜택의 법적 가능성을 제안하는 문구를 협정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집요하게 저항하였으나 제2차 개정의 협상자들은 최소한 특정한 조항에⁸⁰⁾ 근거한 그러한 혜택에 대하여 자신들이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음을 밝혔다. 이러한 동기가 개도국들로 하여금 제2차개정을 승인하도록 분위기를 조장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있어 관행은 개도국대우에 대한 관대한 대우를 언급한 특정한 조항에 한정되지 않았다. 정책은 일정한 등급의 회원국에게 특별한 이익이 되며, IMF의 재원이용을 위해 IMF가 규정한 조건에 의해 IMF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하는 다른 규정에 의해 수립되었다.⁸¹⁾

1968년 결정에서 이사회는 조건부 매입에 관해 그때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자금지원조건의 적용에 있어 회원국들간에 차별을 하지 않고 균등하게 회원국들을 대우해야 한다는 IMF의 원칙을 성문화하였다. 이 결정의 채택 배경은 영국의 스탠드바이약관이 다른 개도국들에 적용된 것보다 유연한(flexible) 조건들이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⁸²⁾ 개도국 출신이사들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평등한 대우(equal treatment)에 대해 염려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이 결정은 자금지원조건의 부과에 있어 융통성의 필요를 강조하기는 했지만 이와 아울러 모든 회원국에 대한 균등하고도 '형평'에 맞는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제14조의 '경과약정'에 대한 해석

제14조의 도입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IMF에 의한 해석의 연구에서 논의된 많은 주제들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 주제들은 새로운 모델을 형성하기

80) 제5조제12항(e), (f) (ii) 및 (iii)

81) Joseph Gold, op. cit., p.567.

82) 高俊誠, IMF의 資金支援條件에 관한 法 및 政策의 考察(上), 通商法律, 1998. 2. 46면.

위한 해석, 관행, 그리고 개정에 의해 조화될 수 있다.

제14조의 기본정신은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자국의 통화에 대한 대환성을 부여하도록하는 IMF의 의무를 회원국이 이행하기 전에, 회원국은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그리고 만약 당해 회원국이 적국에 의해 자국 영역을 점령당했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현재의 국제거래를 위한 수지 및 이전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기 위해⁸³⁾ 자신의 권한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들 조항의 모든 명사, 동사, 그리고 형용사는 부분적으로는 당해 조항내의 표현에 있어 일부 부조화로 인하여 해석의 대상이 되었다.

제14조의 전체 표제는 '경과약정'(transitional arrangement)이다. 당해 조항내의 한 원칙은 '전후 과도기간'(the post-war transitional period)이었지만 다른 표현에서는 '과도기간'(transitional period)으로 언급하고 있다. 조건들이 허용되자,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들과 국제수지와 환율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용이한 통상 및 재정협정을 발전시켰다. 특히 동 규정은 회원국들이 어떠한 제한도 없이 IMF재원을 부적절하게 이용하지 않고 자국의 국제수지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충족'하는 즉시 제14조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제한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⁸⁴⁾

회원국은 IMF의 의견에 답변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지만, 회원국의 의무를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IMF가 당해 회원국이 IMF의 재원이용에 부적절하다는 선언을 하는 결과가 되어 IMF는 제1조에 반하는 제한조치를 유지하려는 회원국의 주장과 부딪치게 될 것이다.

과도기간 또는 경과약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들 중에는 당해 협정의 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IMF가 재정적 활동을 시작한지 3년 또는 5년간 지속하는가 또는 이는 불확정 기간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만약 3년이 정해진 종료기간이 아니라면 IMF가 종료시점을 선언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83) 제14조제2항

84) 이 문제에 의해 제기된 논쟁에 관련된 다른 요소는 첫째, IMF가 재정적 기능을 시작한 지 3년 후 그리고 그후 매년 제14조에 의해 아직 효력을 갖고 있는 제한조치들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둘째, IMF가 재정적 기능을 시작한 지 3년 후, 아직까지 그와 같은 제한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각 회원국은 그와같은 조치들의 계속적인 유지와 관련하여 IMF와 협의하였다. 셋째, '예외적인 상황에서' IMF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MF는 회원국에게 그러한 조건이 모든 또는 일부 제한조치의 포기에 적합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Joseph Gold, op. cit., p.568.

IMF의 권한은 IMF의 시각에서 IMF가 제시한 의무의 불성실이행국인 회원국에 대하여 불이익(penalty)을 적용하는 권한과 함께 사례에 따라 회원국의 제한조치에 대한 축소 또는 포기를 허용한 조건을 개별 회원국들에게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제한되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IMF가 과도기간의 종료시점을 선언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특히 중점을 두고 IMF의 초기에 논의되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일부 해석가들이 과도기간 또는 경과약정에 관한 협정의 협상자들에 의한 승인은 현실인정 또는 그들에 의한 선언이며, 브레튼 우즈체제는 실패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⁸⁵⁾ 원협정의 준비자료(Travaux preparation)는 이 문제에 대해 명백한 답변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준비자료들은 미국과 영국간에 첨예한 의견의 차이가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협상대표자들은 과도기간이 불확정한 기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⁸⁶⁾ 미국은 프랑스와 함께 과도기간이 정해진 기간이고 합리적인 짧은 기간이어야 한다는 해석을 선호하였으며 이러한 입장을 1960년까지 견지하였다. 협정에 따라 정의된 대로 해석되지 않으면 IMF가 과도기간을 종료하는 권한을 갖는다고 미국이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⁸⁷⁾

과도기간에 대한 미국과 영국사이의 의견차이와 IMF가 과도기간을 종료시킬 권한을 부여받았는가하는 것에 대한 합의에 양국이 도달하였는가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 이는 양국이 이 문제의 해결을 연기하는데 동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IMF의 해석문제로서 이 문제는 '바람직한 기간'(desirable date)으로 귀착되었다.⁸⁸⁾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이 문제가 제한적이고 까다로운 것이며 의견이 대립하는 양당사자에 대하여 긍정적인 표현이 제14조에서 발견되고, 따라서 양당사자는 모두 궁극적 해석이라는 해결방안을 받아들였다. 조문상의 표현과 협상자들의 의도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IMF는 IMF의 목적이라는 기준과 경험을 고려하여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었다. 어떠한 가설하에서도 IMF는 수용가능한 해석을 이끌어내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85) J. W. Breyen, *Money in a Maelstrom*, (New York, 1949), pp.185~189.

86) Horsefield, *History 1945~1965*, Vol. 1, pp.84, 108~109.

87) Ibid., pp.84, 479~480.

88) Joseph Gold, *Interpretation: The IMF and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569.

만약 이러한 추측이 옳다면, 이 문제는 협상의 당사자들이 의도적으로 남겨 놓은 미해결의 분쟁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석에 의존하는 또 다른 기술적 방법의 한 예가 될 것이다. 일부 학자는 이러한 방법이 진정으로 해석에 의존한 것인가하는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만약 해석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면 곤란한 점은 확립된 국제법원칙과 관련하여 이 방법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IMF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길고 어려운 토론을 거친 이후에 IMF가 제8조와 제14조의 관련성에 관한 결정을 채택한 1960년에도 이 결정은 과도기간의 종료문제에 관한 어떠한 입장의 표명을 회피하였다. 법무담당관실(Legal Department)은 이사회에 IMF가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자문을 해주었다.⁸⁹⁾ 비록 1960년의 결정은 선진국들이 제8조에 의한 태환성의 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하였다는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이 문제는 미해결의 문제로 남았다.

미국의 최초 입장은 전후 최강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제한과 차별에 목표를 두었던 것 같다. 그러나 만약 다른 회원국들, 특히 점차 강력한 경제력을 갖게 된 나라들에게 짧은 과도기간 이후에 태환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였다면, 미국은 수년간의 과도적 특혜기간에 의한 희생을 감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은 만약 특정 회원국이 과도기 또는 경과약정에 의해 권한이 위임된 제한조치들을 철회한다면 일정 기간 이후에 다시 제14조에 의한 제한조치들로 다시 돌아가거나 부활시킬 수 없다는 IMF의 법률자문가의 결론에 의해 어느정도 안심을 하였다. 제한조치들은 오직 제8조에 의한 IMF의 승인이 있어야만 다시 부과될 수 있다.

예측가능한 보다 안전한 조건들속에서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들에게 제한조치들을 철폐하도록 권장하는 IMF의 노력에 의존할 수 있으며 차별적 관행을 회피할 수 있다. 미국 이외의 회원국들로부터 과도기협정을 유지함으로써 예상할 수 있는 이익을 박탈함이 없이 IMF는 확신을 회원국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89) 법무담당관실은 이사회가 과도기간을 종료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이사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위는 이사회의 견해에 의하면 전후 과도기간의 조건은 해소되었다는 근거에서 조건들은 포기(withdrawal) 또는 제한(restriction)을 위한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다 ; Horsefield, op. cit., pp.84, 479~480.

IMF가 과도기간을 종료시킬 권한이 있다는 결론에 의해 IMF는 회원국으로부터 그러한 이익을 박탈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결정에 의하여 과도기의 혜택을 박탈당하는 회원국들은 대부분 IMF의 회원국으로서 지속적으로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개도국일 것이다.⁹⁰⁾ IMF는 개도국에 대한 반감과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회원국간의 논쟁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유사한 계기가 공식적 유동성의 창출을 위한 계획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모든 회원국들에 대한 SDR의 배분에 관한 결정에도 관계되어 있다.

해석의 문제로서 IMF가 과도기간을 종료시킬 권한을 갖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사실상 그러한 권한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아무런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은 IMF와 회원국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새로운 회원국들은 자신들이 과도기협정을 이용할 의도가 있는지를 IMF에 통지하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미 그러한 선택권을 행사하고 있는 회원국들은 이러한 특권을 계속하여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1978년 4월 1일, IMF의 133개 회원국들중에서 87개의 회원국들이 과도기협정을 이용할 수 있었다. 1993년에 경과약정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들은 177개 회원국들 중에서 100개국이었다.

회원국들이 경과약정을 계속 이용함으로써 IMF의 권한은 축소되었다. 만약 IMF가 과도기간을 종료하였다면 IMF는 제14조로 인하여 이러한 통제로부터 자유로웠을 제한조치들에 대하여 제8조에 근거하여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권한을 갖고 있을 것이다.

제14조에 의한 제한조치들은 IMF가 이 조치들의 존속을 유지하기위한 경제적 정당성이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조치들을 존속시키고 있는 회원국들에 의해 항상 IMF와의 정기적인 협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IMF는 IMF와의 협의요건을 회원국과 IMF관계자 사이의 접촉, 당해 관계자에 의한 세부보고, 이사회에서의 논의, 그리고 당해 조치의 보유에 대한 승인 또는 비난의 결정을 수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사회의 비난은 매우 주목받는 국제기구에 의한 비난에 대한 회원국의 민감성으로 인하여 회원국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 이러한 IMF의 대응행위에 대해서는 IMF가 회원국들의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IMF의 대응행

90) J. W. Beyen, op. cit., p.189.

위는 IMF가 자신의 권한내의 다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당해 회원국에게 손상을 주는 것이다. 더욱이 IMF의 재원이용을 고려하고 있는 모든 회원국들은 비록 IMF가 회원국에 대하여 비난 이상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국이 IMF의 재원을 필요로할 때 IMF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을 우려할 것이다.

비판적 결정에 의해 제기되는 한계확정(edginess)은 IMF의 재원을 이용하고자하는 회원국에 한정되지 않는다. 어떤 국가가 IMF의 재원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IMF와 회원국간의 협의결과 당해 회원국에 대한 비판적 결정이 예상되는 경우 IMF의 대응조치는 명백히 이루어 질 것이며 새로운 협정안의 작성으로 이어진다.

제2차 개정안의 협상자들은 회원국의 환율정책에 관한 철저한 감독절차의 일부로서 정기적 또는 임시(ad hoc) 협의를 하는 경우 회원국들이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게되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방법으로써 제한조치에 관한 제14조, 또는 환율정책에 관한 제4조에 의한 협의, 또는 협정의 다른 규정에 따른 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협의는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친 것이거나 사실상 회원국 경제전반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IMF의 해석에 의해 영향력을 증대해 왔다. 계속적인 협의대상의 확대는 더 이상 권한범위를 이유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 이는 협정내에 강제권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전에 종료예정일을 정함이 없이 그리고 종료일을 정하는 IMF의 권한에 대한 승인없이 과도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실상의 해석은 제2차 개정에 의한 제14조의 개정의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이전의 관행이 협정의 잘못된 해석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제2차 개정이 이전의 관행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의 관행이 바람직하였다는 것이다.⁹¹⁾

제2차 개정은 제14조에서 과도기간 또는 전후 과도기간에 관한 모든 언급을 삭제함으로써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 제14조는 현재 '과도기간' 대신에 '경과약정'으로 표제가 이루어져 있으며, '경과약정'이라는 표현은 제14조 본문에 이

91) Joseph Gold, *Interpretation: The IMF and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572.

전에 '기간'이라는 단어를 대체하였다. 기타 다른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현재의 본문은 IMF가 제14조의 경과약정을 종료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결정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⁹²⁾

(3) 용어사용의 오류⁹³⁾

(가) 잘못된 용어사용관행

IMF내에서 그리고 IMF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IMF 자신을 가리키거나 IMF의 활동을 언급하는 경우에 IMF의 용어는 종종 IMF의 법규범과 모순된다. 이와 같은 어법의 위반은 쉽게 발견된다. IMF의 일반재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거래는 대출(loans) 또는 신용(credits)이라고 불리우지만 법적으로 이는 IMF가 매입국가에게 통화 또는 SDR을 매도하고 당해 회원국의 통화를 매입하는 교환거래에 더욱 가깝다. 이러한 거래를 언급하면서 협정규정은 확고하게 회원국에 의한 구매와 회원국과 IMF간의 통화교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IMF의 기본정책에 근거하여 일반재정계정을 통해 수행되는 거래는 신용트랑셰(credit tranche)정책이라고 불리운다. 어떤 회원국이 IMF의 일반재원에 대한 이용을 종료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당해 회원국은 민간 또는 경제관련회의에서 IMF에 변제(repaying)하였다고 이야기되지만 협정문언에 의하면 당해 회원국은 이전의 거래에서 자국이 구입하였던 SDR 또는 다른 회원국통화를 주고 IMF에 이전하였던 자국통화를 재매입(repurchasing)하는 것이다. 대기성차관협약은 협약의 형식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노력이 기울여 졌지만 현재는 일반적으로 협약으로 언급되고 있다. IMF의 차입재원과 자체보유재원 사이에 종종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이사들이 회원국의 대표라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고 협정에 그들은 단지 IMF의 직원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이사들은 빈번히 회원국의 대표로 언급된다.⁹⁴⁾

협정문의 표현은 다양한 정책적 이유로 인하여 협정의 협상당사국들에 의해 선호되어졌던 표현들이 선택되어졌다. 협정상의 표현은 협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을 포함한 주요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유지되었다. 거래(trans-

92) Ibid., p.573.

93) IMF협정 제30조는 협정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나 실제상의 일부용어 사용은 이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94) 제9조제8항

action)와 관련하여 원협정 협상자들의 기본적인 목표는 회원국이 IMF에 탁발을 들고 구걸하듯이 접근하는 듯한 인상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대신에 선택된 법적 기술과 결과적으로 채택된 표현은 납입된 재원으로부터 회원국 상호간에 협조하는 인상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대변하였으며 일반원칙에 따라 회원국과 IMF에 의해 가치(value)를 유지하였다.

잘못된 언어사용관행에 대한 놀라운 측면은 비록 다른 많은 측면에서 제2차 개정은 경험을 통한 교훈을 협정에 새로이 포함시키기는 하였으나 원협정을 협상하였던 회원국이나 다른 회원국들 모두가 협정문의 유권적 표현에 대한 잘못된 언어사용을 대체하기 위해 고려되어졌던 사항에 대하여 개정과정에서 아무런 제안을 하지않았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공식용어의 정확성에 대한 선호는 드물게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용어가 회원국들의 의도와 상반된다거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인정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의제기를 유발하지 못했다. 몇몇 측면에서 공식용어의 변화를 위한 제안은 아마도 의심과 원하지 않는 논쟁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때때로 이사는 자신의 지위에 관한 언급이나 회원국대표로서 다른 이사의 법적 지위와 같은 일부 용어사용법에 대하여 불평할 것이다. 만약 법률전문가들이 가끔 불평을 한다면 법적 수사로 이해될 것이다. 법률자문가들은 최소한 IMF의 격주간 간행물에 다음과 같은 각주를 붙이게 될 것이다.

"IMF Survey에 게재된 법률적 측면이 포함된 어떤 의견이나 자료도 IMF의 공식적인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⁹⁵⁾

확고한 용어사용법에 대한 경시는 협정상 개념들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을 이유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설명은 왜 그렇듯 엉뚱한 용어가 IMF 자체내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에 대하여는 고위급 실무직원의 퇴임사에 의해 IMF는 법적인 IMF와 경제적 IMF가 있다는 설명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표현속에는 경제적 IMF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법적인 IMF는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은 날카로운 지적이지만 진실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소위 경제적 IMF는 잘못된 해석에 의한 경우 외에는 법적 IMF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IMF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로지 법적이거나 오로지 경제적인 문제는 상대적으

95) Joseph Gold, *op. cit.*, p.575.

로 매우 드물고 양자 모두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빈번하다. IMF의 법과 경제가 어떤 의미에 있어서 결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견해를 견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것이 아니다. 비록 회원국들은 IMF협정의 해석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경제적 해법에 대한 법적인 타당성을 뒷받침하기를 희망하고 만약 그러한 희망이 좌절되었을 경우에는 법률적 해석에 대한 신랄한 불만을 표출하지만, 회원국들은 통상 제안된 정책이나 조치가 IMF의 협정과 일치하는 것인가에 대해 우려한다.

(나) 법적 IMF와 경제적 IMF

IMF의 정책과 결정이 IMF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반적인 방향을 넘어서서, 법적인 IMF와 경제적인 IMF사이의 대비는 IMF협정이 IMF가 자신의 재정적 활동에 있어 따라야 하는 정책에 관하여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당화되어진다. 고정환율체제시대에는 IMF가 IMF의 협정을 기본적으로 동 협정에 의해 설립되고 유지된 고정환율을 지원하기 위해서 IMF의 재원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기 쉬웠으며 또한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IMF의 고정환율체제는 폐지되었으며 IMF와 회원국들은 유연한(flexible) 환율협정을 선호하며 경제적 성격의 다른 규범이 IMF의 기본정책이 자신의 재원에 대한 이용에 근거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는 과거보다 확대되었다. 만약 회원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에 있어 IMF의 경험이 이를 공식화할 수 있다는 예상이 현실화된다면,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정책과 관련하여 회원국을 지도하기 위해 특정한 원칙의 실질적 규범을 다시 공식화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제한은 원칙의 확대가 불가피하게 회원국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회원국과 IMF의 경제분야 직원의 의견이 동기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회원국들은 더 이상의 원칙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기를 꺼렸으며, 만약 회원국들이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면 할 지라도 새로운 원칙이 다른 회원국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 일부 회원국에게는 반사적인 이익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공식화된 세 가지 원칙중에 두 가지는 연성법(soft law)이지만 회원국의 환율정책과 관련하여 회원국을 지도하기 위한 특정한 원칙들은 토의되거나 수정된 적이 없다.⁹⁶⁾

IMF의 부정확한 용어사용은 위험하며 비용부담을 지게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결과중 가장 극단적인 것은 입법자들에 의한 IMF의 성격과 재정적 활동에 대한 오해이다. 예컨대 미국의 많은 입법자들은 IMF를 국제개발기구 또는 국제지원기구로 생각해 왔다. IMF회원국들의 쿠틀타조정을 통해 IMF의 재원을 증가시키기 위한 제안이 이루어졌을 때 이 제안은 개발기구의 재원증가를 위한 규정과 통합되어졌었으며 종종 미국내의 정치적 긴장으로 인한 이러한 기여금조성에 관한 의회의 파행은 IMF에 역효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의회는 관련규정에 미국에 의해 지명되는 총회의 대표(Governor) 또는 이사에게 IMF에서 일정한 지위를 맡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IMF의 협정과 일치하는지 의심스럽다.

(다) 융자 및 거래

사실조사의 흥미로운 분야는 일반재정계정을 통한 IMF의 통화와 SDR의 매매가 대출이라는 오해가 IMF의 융자조건(conditionality)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그러한 효과가 회원국에게 불이익이 되었는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는 제2차개정 이후 IMF협정이 스탠드바이협정을 IMF의 결정에 의한 조건에 따라 회원국이 IMF에 의해 정해진 일반재원의 총액을 구입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IMF의 결정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⁹⁷⁾ 이러한 보장은 회원국에게 IMF의 재원에 의한 지원과 함께 회원국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1979년 3월 2일 IMF는 회원국에 대한 확신의 허약성을 피하기 위해 스탠드바이협정의 근본적 존재이유인 IMF의 이해와 회원국의 이해 사이의 신중한 균형을 깨는 융자조건과 스탠드바이협정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사실조사는 스탠드바이협정이 일반재원의 대출을 제공한다는 믿음이 IMF의 결정에 의해 추구되는 균형과 조화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⁹⁸⁾

이와 유사한 사실조사는 제1단계 신용트랑셰(first credit tranche)의 매입에 있어 융자조건인 정도와 상위단계트랑셰의 구입에 있어 융자조건인 정도

96) Joseph Gold, *Interpretation: The IMF and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576.

97) 제30조(b)

98) 당해 결정은 IMF가 일반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는 대출(loan)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이에 아직 어떤 구분이 준수되고 있는가하는 것을 조사하게 될 것이다. 만약 구분이 IMF의 결정에⁹⁹⁾ 의해 규정된 만큼 잘 준수되지 않는다면 IMF가 대출을 한다는 오해가 이러한 발전에 영향을 미쳤는가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흥미로운 것이 될 것이다.

거래에 대한 또 다른 잘못된 분석은 일반재정계정이 이러한 한계에¹⁰⁰⁾ 대한 IMF의 포기에 대한 필요성없이 회원국 자신의 쿼타에¹⁰¹⁾ 상응하는 총액을 출금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또는 유추에 근거하여 한계를 넘는 금액의 거래는 당좌대출(overdrafts)로¹⁰²⁾ 간주되어질 수 있다.

당해 거래를 대출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통화의 구입과 매매 또는 교환 거래이외의 일반계정을 통한 IMF의 기본적 거래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재분류를 시도함에 있어 어려움은 법적 및 경제적 범주의 빈곤이다. 만약 매입, 매도 그리고 교환의 개념이 현실적이 아니라거나 만족스럽지 않다고 간주된다면 전통적 범주들은 그러한 독특한 거래에 적절치 않다. 그러한 상황에서 분류화하는 것은 당해 거래를 강제로 유사한 대출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 인해 파괴되기 쉽다. 일부평론가들은 SDR을 단순히 신용의 한 형태로 해석하는 비슷한 실수를 해왔다.

대출과 비교될 수 있는 경제적 요소가 일반계정을 통해 IMF가 행하는 거래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대출이 유효한 법적 분석이라든가 또는 완전한 경제적 해설이라는 분석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거래와 대출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예컨대 IMF로부터 갑국의 통화에 의한 매입은 IMF의 일반재정계정의 갑국의 통화보유를 증가시키게 되지만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당해 통화의 지출을 위한 그후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 더욱이 IMF의 갑국 통화매출은 IMF의 일반재원을 이용하기 위해 갑국의 능력을 증가시킨다. 구분은 상대적으로 덜 기술적일 수 있다. 예컨대

99) IMF의 제1단계 트랑세내에서의 거래를 위한 요건은 자유로운 것이며, 다만 회원국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한계를 넘는 거래는 실질적 정당화사유를 필요로 한다 : Joseph Gold, *Interpretation: The IMF and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578.

100) 제5조제4항

101) 제5조제3항(b) (iii)

102) 외국환은행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예치환거래은행이 당좌예금계정의 자금부족시 제공하는 단기자금공여를 가리킨다.

본 사례에 있어 갑국의 통화를 매입하는 회원국은 거래에 적용되는 IMF의 용자조건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⁰³⁾ 그러한 조건을 준수하면서 회원국은 갑국을 포함한 IMF의 회원국가들에 대한 잠재적 이익을 위한 국내적 및 국제적 번영에 기여하게 된다.¹⁰⁴⁾

4. 법률전문가의 역할

외부적 해석에 대한 IMF의 저항과 IMF의 유권적 해석권사용의 빈곤은 법률전문가의 작업에 대한 더욱 많은 고려를 정당화한다. IMF직원의 기능과 조직에 관한 1991년도의 해설서는 법무담당관실의 책임의 범위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법무담당관실의 소개를 위한 前文은 당해 실의 주된 기능이 조언하는 것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즉 “IMF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 문제, 특히 협정조문, IMF의 결정, IMF정책의 공표와 이행 그리고 IMF의 조직과 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한다. 더욱이 회원국들과 다른 국제적 기구들에 대해 이용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다.”¹⁰⁵⁾

제1항은 운영과 직원, 이사회와 총회 및 두 기관의 위원회, 그리고 개별적 이사 및 총회대표에 대한 법적인 조언이 주어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10가지의 업무의 범위가 열거되어 있다.

법무담당관실은 (b) 협정의 조문과 기금의 다른 법률적 문서에 대한 조언을 하며; (c) 총회의 결의를 포함한 IMF의 결정, 규칙(by-laws), 준칙, 이사회의 결정 그리고 협정조문의 개정에 관한 초안을 준비하고; ... (f) 회원국과 IMF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특히 IMF의 협정문과 결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 준수에 관한 조언; ...을 한다.¹⁰⁶⁾

이러한 종류의 서술은 법률적 작업의 범위에 대한 많은 통찰을 주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 예컨대 법률문서에 대한 기금 자체의 준수와 기관간 그리고 기관과 기금의 권력분립에 의한 운용기관 사이의 분쟁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있

103) 제5조제3항(c)

104) 제1조(v)

105) Handbook, p.35.

106) Ibid.

는 기능에 대하여는 명백하지 않다. 제2차 개정은 권한의 분배와 위임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왔다.

비록 핸드북에 나와있는 법률문제에 관한 해석을 포함한 몇 가지 범주의 기능을 법무담당관실이 수행하고 있지만, 특히 법률적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현안 문제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IMF의 다른 부서직원들의 견해를 고려하여야 한다.¹⁰⁷⁾

어떤 것이 법률적 문제 또는 본질적인 법률문제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확립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문제의 분류에 있어 논쟁이 있는 경우, 이사는 어떤 부서 또는 어떤 직원이 이사회에 보낼 권고적 의견의 준비를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의 결정은 문제의 법률적 측면과 경제적 또는 정책적 측면에 대한 별개의 문서를 준비하도록하거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별개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다. 만약 문서가 합쳐진다고 해도 법률적 문제는 다른 측면과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의가 제기되기도 한다. 서류준비에 책임이 있는 부서와 이를 승인한 고위 직원은 문서의 표제부에 기재된다.

부서간의 협력필요성은 해석에 대한 존재론적 접근에 의해 요구된다. 법률가들 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도 협상, 초안작성 그리고 협정의 적용과 협정 개정에 참여해왔다. 협정은 경제용어로 가득차 있으며 이 모든 용어가 협정 제30조의 용어해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당해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의 해설은 그 자체가 또 다른 해석을 필요로 하는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다른 부서와 협의하여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힌 후에 법률담당직원들은 관련법에 관한 당해 부서의 자문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이 책임은 법률담당직원들이 합리적인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내용없는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논쟁이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법률담당직원이 추천한 견해에 찬성하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법률담당직원들이 모든 가능한 해석에 찬성 또는 반대한다는 주장을 제출한다. 이러한 접근방식만이 당해 직원이 어떤 특정 파벌이었다거나 논쟁이 되는 법률적 문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데 있어 잘못이 있다는 혐의를 축소할 수 있다.

107) Joseph Gold, *Interpretation: The IMF and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580.

총재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거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어떤 법률적 의견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만약 자신이 다른 과정을 선택한다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특정한 의견이 이사회에 제출되지 못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만약 그가 이사회 또는 다른 기관에 당해 제안의 이전을 허용하였다면 그가 당해 의견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이 되지만 그는 당해 의견이 논의되는 시점에 자신의 중립이나 반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률전문가는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만약 총재가 당해 법률전문가에 의한 법률적 의견과 의견을 달리한다면 그의 지위는 지탱하기 힘들게 된다. 이것이 함축하는 의미는 양자간의 조화로운 업무관계가 발전되어야 하지만 조언자의 직업적 양심에 대한 타협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⁰⁸⁾

당해 법무담당관은 문제의 불투명성이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당해 법무담당관이 모든 이해당사자의 변호인처럼 행동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지나치게 역설적이다. 좀더 나은 표현은 IMF의 법률가들이 합리적인 분석으로 어떤 사건을 판결하여야 하는 판사처럼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방식은 비록 자신의 입장이 법률전문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적절한 기술적 방식으로 법률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여야 하는 이사를 지원하는 법률전문가의 임무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법률전문가들이나 법무담당관들에 대하여 표명된 견해로부터 다양한 결론들이 이끌어 진다. 결론의 하나는 법무담당관실이 자신의 주장과 결론을 밝히는 데 있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무담당관실이 오로지 운영에 대한 자문자로서 역할하여야 하고 운영자가 선호하는 결론의 경우에만 의견의 제출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담당관이 자신의 결론을 제출하기 위한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¹⁰⁹⁾ 이와 유사하게 여기에서 옹호된 관행은 오로지 총재의 승인이 있어야만 직원에 의해 작성된 메모들이 IMF의 기관에 제출되는 절차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총재는 정책에 관한 직원의 제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협정에 근거한 관

108) Ibid., p.582.

109) 제12조제4항(b)

리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총재는 재량권을 행사한다. 법률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사한 재량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문제들에 대해서 총재는 해석기능에 본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총재는 의견의 전달을 거절할 수 있지만 법률자문가에게 의견을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만약 총재가 법률담당관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는 총재가 IMF가 수행하기를 바라는 정책을 좌절시키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총재는 승인에 대해 보류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는 이사회가 자신이 결정해야만 하는 문제에 관해서 어떠한 공식적 법률자문도 받을 수 없다는 딜레마상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사회가 직원의 법률적 의견에 대하여 논의할 때 만약 총재가 의심을 표시한다면 법률담당관들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결국에는 붕괴될 것이다.

통상적인 절차는 총재와 협의를 갖는 것이며 만약 법률문제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서 직원은 법률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관리자에게 설득하기 위한 완전한 기회를 갖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총재는 다른 법률적 의견이 좀더 건전한 법규라는 것을 직원에게 설득할 수 있다. 총재와 법률자문가 사이의 신뢰와 지원은 법률자문가 뿐만 아니라 총재의 성공적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

(1) 법률용어

세계 각국의 출신으로 구성된 기관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법률적 조언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개념, 언어 그리고 법체계내에서 추론과정의 차이 등에 기인할 수 있다. 법원칙들과 일치되는 일종의 법률적 국제용어가 발전되어야 한다. 국내법체계으로부터 추출된 '일반적' 법원칙은 일반국제법원칙의 한 존재 형식이다.¹¹⁰⁾ 그러나 의사교환의 문제는 조언을 하는데 요구되는 일반적 원칙을 모색하는 것보다 광범위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특정한 법률적문제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 원칙을 이끌어 내기에는 국내 법원칙이 너무 다양하거나 그 문제가 지나치게 특수화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

110) M. Cherif Bassiouni, "A Functional Approach to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1 (1990), pp.768~815.

다. 그러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조언을 지지하는 법적 논거가 조언을 제공하는 법률전문가가 교육받은 법체계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법적 근거나 개념이 하나의 법체계 또는 단지 몇몇 법체계에서만 발견된다고 해서 당해 법적 근거나 개념의 인용이 배제되어서는 안되지만 그 법적 근거는 설명되어야 한다. 만약 개념이 원개념의 모든 의미를 내포하지 않고 광범위한 유추로서 인용되어졌다면 이러한 사실 역시 공개되어야 한다. 서약·보증·담보(pledge), 조건부날인증서(escrow), 지분청구권(equity)¹¹¹⁾ 등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된 몇몇 개념에 불과하다. 항상은 아니지만 때때로 정교하기보다는 대략적인 유추에 의하여 개념의 도입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논의되는 활동에 있어 진정한 해석과 입법사이에 선을 긋는 것은 미묘한 관행이 되었다.

이는 법무담당관실의 직원이 다양한 법률문화로부터 채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¹²⁾ 따라서 법체계의 다양성이 대표되는 총회의 해석위원회(Interpretation Committee)의 구성에 매우 큰 중요성이 부여되어야 한다.¹¹³⁾

(2) 배타적 권한으로서 해석권

(가) 원협정규정과 개정규정

의도적으로 또는 우연히 또는 양자 모두에 의하여 해석은 이사회의 배타적 권한이 되었다. 이사회의 권한은 유권적 해석의 실제적 실증에 의해 제고되었다. 이사회의 비공식적 결정은 다른 기관에 의하여 반복되지 않았지만 이사회는 비록 자신의 결정을 반복하거나 변경하기를 꺼리기는 하였지만 착오에 의한 결정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결정을 쉽게 반복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사회의 해석위원회는 수십년동안 미가동의 존재였다. 이사회나 총회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국제사법법원(ICJ)에 권고적의견을 요청한 적이 없다. 외부감사위원회는 해석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해결추진으로 인해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비록 제한의 한계가 아직 명백하지는 않지만 행정법원(Administrative Tribunal)의 해석권한에는 제한이 있다. IMF의 회원국은 이사회에 의

111) 여기서 equity란 자본국의 지분 또는 자산에 대한 권리나 청구권을 말한다.

112) 이는 국제사법법원(ICJ)의 법관임용기준과 유사한 것이다; ICJ규정 제3조제1항 참조.

113) Joseph Gold, *Interpretation: The IMF and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583.

한 IMF의 법규범제정 뿐만 아니라 법의 해석을 원하였다.

이사회가 해석기능에 대한 완전한 실질적 통제를 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제1차 개정에 의하여 협정에 도입된 이사회 결정에 의한 이의제기에 관한 규정의 영구성이다. 지금까지 총회는 해석위원회에 대한 지명조차도 불가능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동 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효력을 갖도록 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또는 상설기구로서 동 위원회에 관해 해석문제를 위한 협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동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총회의 준칙에 대한 논의 또한 십여년전에 이루어졌지만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였고 다시 재론되지도 않았다.

개혁의 지지자들은 개혁의 대상인 원규정과 관행, 주로 비공식적이지만 사실상 이사회에 의한 결정적인 해석인 관행이 광범위한 해석의 오류 또는 심각한 위험한 잘못으로 유도한다는 근거를 제시하도록 반대자들로부터 요구받았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개혁지지자들은 과거에 해석의 임무가 수행되었던 방식에 만족을 나타내는 반대자들의 표현에 동의하였지만 장래는 불확실하다는 가설을 근거로 하였다.

원규정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여 제시된 정당화의 근거는 해석의 문제에 관하여 특히 SDR에 관한 긴 협상과 제1차 개정규정의 시각에서 잘못된 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왜 원협정조항의 혁명적 규정이 당해 협상의 일방당사자를 자극하지 못하였는가하는 것은 설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협정규정의 허약성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이는 협정의 개정 등에 의해 제거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해석의 문제가 간과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협정에 대한 실질적 지식은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고 숙고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이 문제는 비록 IMF가 자신의 해석관행을 비공식적 해석으로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존재한다.

법률담당직원들은 IMF의 활동 또는 IMF의 제안된 활동에 있어 해석의 필요성에 주의를 이끌어 내는데 주된 책임을 져야한다.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률담당관실의 구성에 있어 경험있는 변호사의 유치와 새로운 변호사의 임용사이에 이상적인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해석에 있어 미국의 영향력

해석에 관한 원협정규정에 대한 개정을 제안한 사람들에 의해 개진된 개정사

유는 SDR에 관한 새로운 규정과 IMF가 회원국에 부과한 새로운 재정적 의무의 도입 필요성이었다. 그러나 해석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또 다른 동기는 SDR에 관련된 경우만이 아니라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해석에 관한 규정의 개정은 논의되지 않았다. IMF에 제기되는 문제에 관한 미국의 영향을 축소하려는 노력은 미국 경제의 규모와 힘으로 인해 그리고 미국이 다른 회원국들에 의해 이용되는 IMF재원의 상당한 몫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허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다른 국가의 경제력의 향상은 IMF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의 영향력은 자국이 제출하는 제안에 대해 다른 회원국의 승인을 획득하기보다 다른 회원국이 제출하는 제안에 대한 미국의 승인거부라는 반대자의 위치에서 더욱 성공적으로 행사되어 왔다. 총회의 해석위원회에 있어 동등 투표권은 주요 선진국가간의 상호관계에 있어 또는 유럽연합과 같은 회원국간의 결합으로 인한 평등의 확대에 대한 미국의 승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또는 잠재적 변화에 대한 승인이 그와 같은 양보와 해석에 있어 가중투표제는 정통적인 것이 아니라는 유럽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주요 동기였다. 만약 위원회가 소규모로 구성되고 결정을 위해 만장일치가 요구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상대적인 투표권은 유지되는 것이었다.¹¹⁴⁾

IMF의 초기에 이사회의 결정에 있어서 프랑스측 이사의 수많은 반대는 해석에 있어 평등에 대한 기대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IMF의 협정이 회원국들에게 특히 환율과 관련한 의무에 있어 평등에 대한 보장을 주었다는 확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원협정에 의한 관행에 있어 미국의 배타적 이익으로 이해되던 특권과 조화되지 않는다. 협정의 문구에 따르면 IMF는 회원국의 금에 의한 거래를 위해 고정환율의 상하에 일정한 변동폭(margin)을 설정하도록 요구되었고 어느 회원국도 고정환율의 정해진 변동폭 이상 또는 이하의 가격으로 금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¹¹⁵⁾ 각 회원국은 협정과 일치되는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외환거래에 대한 협정의 제한 범위내에서만 자국 통화와 다른 회

114) 만장일치는 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될 것 같지 않았으며 해석에 관한 문제의 해결에 대한 어떠한 확신도 없었다; Joseph Gold, op. cit., p.586.

115) 원조약 제4조제2항

원국 통화의 외환거래를 허용할 의무가 있었다. 만약 어떤 회원국의 통화당국이 국제적인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협정에 의하여 정해진 범위내의 환율으로 사실상 자유로운 금의 매매에 대한 옵션(option)을 행사한다면 당해 회원국은 자국의 통화에 대한 환율과 관련한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질 것이다.¹¹⁶⁾ 미국만이 자국의 통화로 이러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고정환율체제의 시종일관한 결론이었다.

이러한 옵션을 선택하는 회원국은 자국의 통화에 대한 환율과 관련하여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당해 회원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자국통화에 대한 환율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외환시장에의 개입과 같은 더 이상의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 만약 자국통화와 다른 회원국통화가 연루된 거래가 양국 통화간의 평가를 기준으로 정해진 상하변동폭의 한도 외의 환율로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환율은 미국이 아닌 회원국의 책임인 것으로 IMF에 의해 간주된다. 그 회원국은 정해진 환율변동폭을 준수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지 못한 회원국으로 간주된다.

(다) 고정환율제도의 붕괴

금의 거래와 관련된 미국의 관행은 사실상 고정환율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고정환율제도는 1971년 8월 15일 미국이 그 동안 자국이 행사해오던 지불옵션을 중지하겠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붕괴되었다.¹¹⁷⁾ 이러한 옵션을 규정한 원협정 조항에 대한 解釋不在는 자유로운 금의 매매라는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미국을 대신할 의지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회원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심각한 법적 어려움과 계속해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그리고 IMF의 체제 내에서 당해 규정이 갖는 중대성의 견지에서 해석의 보류에 대한 가장 예외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해석보류에 대한 설명은 동 규정의 중요성이다. 만약 동 규정의 주제에 관하여 몇 가지 측면에서 미국에 의해 준수되던 관행과 다른 어떤 해석이 지지된다면 고정환율제도는 거대한 긴장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되었다.

해석의 필요성과 미국의 금거래관행과 다른 해석의 위험성 모두를 감소시키

116) 원조약 제4조제4항(b)

117) Joseph Gold, "Gold in International Monetary Law: Change, Uncertainty, and Ambiguity" in Joseph Gold, *Selected Essays*, Vol. 2, pp.723~777.

기 위해서 협정은 만약 국제거래의 결제를 위해 어떤 회원국의 통화당국이 '사실상' 자유롭게 금의 거래에 관하여 IMF가 정한 제한의 범위내에서 금을 매매한다면, 그 회원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외환거래에 있어 자국의 통화에 대한 환율과 관련하여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¹¹⁸⁾ '사실상'이라는 문구의 목적은 언급된 관행에 대한 의문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로 분산되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협정에 표현된 옵션의 의미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금의 자유로운 매매를 위한 약속을 1949년 5월 20일까지 IMF에 통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문으로 인하여 그리고 아마도 고정환율제도에 있어 그러한 약속의 중심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지연으로 인하여 미국은 1949년 5월 20일 그 약속이 협정의 관련규정에 따른 것일 뿐 만 아니라 그 약속은 미국이 협정에 서명하기 전과 후에 그리고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 준수해왔던 정책과 다르지 않음을 발표하도록 요구되었다. 금의 자유로운 매매에 대한 옵션을 허용하는 규정에 대한 몇 가지 측면만이 IMF의 공식적인 해석의 대상이었다. 동규정의 몇 가지 모호성들이 IMF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결론에 의해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해결되었다. 회원국들이 그 결론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승인을 위해 법률담당직원들에 의해 이사회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사회에 의해 결정에 의해 보증되지 않았다.

의문에 대한 공식적인 관대함은 옵션에 따른 관행이 IMF의 발전에 대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는 고정환율제도의 주요 규범으로서 옵션의 등장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옵션과 유사한 것은 어느 것이든 제2차 개정에서 제외되었다.¹¹⁹⁾ 금은 더 이상 국제통화제도의 주요 대외준비자산이 아니며 SDR에 의하여 "주요 대외준비자산"이 대체되었다. 만약 고정환율제도가 개정된 협정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이었다면, 환율과 관련된 의무이행으로 간주되는 관행으로써 자유롭게 SDR을 매매하는 옵션과 유사한 것은 없었다.¹²⁰⁾ 새로이 이루어

118) 제4조제2항, 제4항

119) 제8조제7항; 제22조

120) 제4조제4항; 부표(Schedule) C.

진 고정환율제도의 공통분모는 SDR 또는 IMF에 의해 정해진 금 또는 통화가 아닌 공통분모이어야 한다.¹²¹⁾

국제통화체제와 IMF에 대한 보다 덜 모호하지만 동등하게 지속적인 옵션의 효력은 확일성의 원칙으로부터 이탈을 위한 정당화사유로서 균형성의 원칙을 제공하는 한 사례일 것이다.¹²²⁾ 균형성의 원칙은 회원국의 대우에 있어 동일성과 비교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 옵션은 일부 비평가들로부터 미국이 한 회원국의 외환시장에서 국내통화에 대한 환율관리를 하기 위해 갖고 있는 다른 회원국에 의해 발생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허용해주는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측에서는 “국제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이용하는 미국에 의해 주장되는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 균형은 협정에 따라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회원국에 의한 리저브의 이용에서의 균형성에 의해 달성된다. 미국은 이미 협정에 부합되는 가격으로 다른 회원국과 달러화와 금의 교환 또는 금과 달러화의 교환의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서의 입장에 있었다. 다른 회원국들은 적절한 환율로 외환시장에서의 외환거래에 달러 또는 달러로 환전될 수 있는 다른 통화에 간여할 수 있었다.¹²³⁾

확일성과 균형성의 원칙은 상호보완적이며 유연성을 허용한다. 균형성은 확일성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균형성이 회원국의 계층 사이에 비교가능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유연성은 과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3) 법률자문가의 역할과 지위

(가) 법률자문가의 역할

IMF 법률자문가의 역할과 지위는 해석을 논함에 있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다. 국내정부기관과 국제기구의 법률자문가들은 국제적 차원의 법발전과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¹²⁴⁾ 법률자문가는 자문위원, 변호사, 판사, 공적 양심의 보유자 그리고 공적 행위의 변명자, 전통의 감시인 그리고

121) 부표(Schedule) C, 제1항

122) Gold, "Symmetry as a Legal Objectiv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in Gold, *Selected Essays*, Vol. 2, pp.255~307.

123) Ibid., pp.726~732.

124) H.C. Merillat, *Legal Adviso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Dobbs Ferry New York, 1966, p. vii.

개혁자, 학자 그리고 운영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¹²⁵⁾ 국내법률자문가들과 국제기구의 자문가들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국제적 자문가들은 국내자문가들이 직면하지 않는 문제들을 갖고 있다. 국제기구의 자문가들은 이전의 관행이나 확립된 원칙들 가운데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들을 거의 갖지 못하였다. 더욱이 그들은 확인할 수 있는 고정된 의뢰인(client)은 없지만 광범위한 공무원과 기관으로부터 자문요구를 받는다. 그들은 국내법률자문가들보다 더욱 많은 외교적 기술을 필요로 한다. 한 사람의 국제기구법률자문가는 주어진 인구와 영역내에서 계속적인 자원의 기초를 갖는 국제법의 주체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다른 주체 즉 국제기구를 창조하는 주체이다. 이 새로운 창조물은 그 자체의 생명과 영향력을 갖지만 선진회원국들이 허용하는 범위와 속도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국제기구에 관한 지각있는 논평이 유권적 해석권과 함께 부여됐으나 외부해석자의 독립적이며 객관적 법적시각은 국제기구의 실제적 영향력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이는 비록 그들이 소수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유권적이며, 확실한 그리고 추정할 수 있는 지속적인 해석을 강제하는 것에 대하여 모든 회원국의 혐오감을 더하도록 하였다. 만약 이것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법률적으로 완벽한 법원칙의 적용을 지원하지 못한다. 이는 국제기구에서 유권적 해석의 힘을 갖는 비공식적인 법률적 결정을 채택하는 관행에 반영되어졌다.¹²⁶⁾

회원국들이 국제기구에서 추구하는 만장일치정책은 만장일치의 달성과정에서 당해 기구직원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회원국에 대한 당해 기구의 권위를 강화한다고 평가된다.¹²⁷⁾ 이러한 견해에 담겨 있는 의미는 만장일치정책의 목적이 국제기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며 만장일치의 달성실패의 결과는 직원이 당해 목적의 수행을 위한 자신의 임무를 이행함에 있어 기왕에 내려진 정책적 결정에 구속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전제에 있어 두 가지 요소는 모두 IMF의 사례에 있어서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의

125) Hans Corell, "Third Legal Advisers' Meeting at UN Headquarters in New York,"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7, (1993), pp.323~328.

126) *Ibid.*, p.11.

127) Antonio Cassese, *International Law in a Divided World*, (Oxford, 1986), pp.89~90.

견일치의 부재는 직원들로부터 자신의 임무를 확대할 능력을 박탈하거나 직원이 이미 확립되어 있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교착상태를 발생시키기 쉽다.

만장일치정책이 의문스러운 해석의 위험을 노정한다는 전제에는 더 많은 진실이 담겨있다.¹²⁸⁾ 만약 우호적인 만장일치를 위한 타협을 지원하는 법적인 분석을 법률자문단장이 찾아내게 된다면 그 직원의 신망이 제고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직원의 영향력이 만장일치정책에 의해서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법과 국제법의 올바른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IMF에 대하여 다음의 두 가지 권고가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국제기구는 법률자문가의 지위를 높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둘째, 법률자문가는 모든 정책수립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야 한다.¹²⁹⁾

IMF의 이사회가 해석기능을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의 규범을 채택하지 못한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고위경제전문가는 이러한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사회에 권위를 제고하고 이사회가 해석문제에 대한 수궁할 만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이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겠다는 것으로 원칙규범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IMF 법률자문가의 지위와 관계없이 법률자문가의 자리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¹³⁰⁾ 이사회가 사실상 해석의 독점권을 갖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는 일반적으로 IMF의 법원칙에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IMF에는 다른 효과적인 항소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자문가는 큰 영향력을 갖는다. 자문가들은 성실성에 근거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사회가 해석기술에 대한 주제에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해석관행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없었기

128) Ibid., pp.89~90 ; 또 다른 만장일치제에 대한 비판은 이 정책이 모호한 해석적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A.H. Hermann, "Lessons from across the Channel," Financial Times, December 19, 1991.

129) 이는 미국의 국제법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수립시에 법률자문가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제시된 권고를 국제기구의 차원에서 적용한 것이다; "Current Development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5 (1991), p.369.

130) Joseph Gold, *Interpretation: The IMF and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603.

때문에 법률자문가의 지위는 강력한 것이다. 해석문제에 대한 적절한 접근은 IMF의 역사에 있어 단지 몇 차례 있었을 뿐이며 그도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해석의 기술에 대한 이사회와 총회의 태도에 대하여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1차 개정시에 해석관련규정의 개정이 논의되면서 가장 긴 해석기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논의는 당시의 법률자문가와 이사가 된 과거의 법률자문가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다. 결론은 이사회와 총회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IMF가 협정의 해석에 배타적이며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행위방식에 대한 법률적 근거없이 행위한다는 것이다.

(나) 법률자문가 지명방법의 개선방안

이사회구성원의 변화라는 견지에서 법률자문가측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을 피하기 위해 사전예방조치가 취해져야 비록 법률자문가가 이사회에 신뢰를 획득한다고해도 그가 제시한 의견이 자동적으로 또는 추정적으로라도 IMF의 규범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훌륭한 토론에 의해서 법률이 밝혀지게 된다는 법률격언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사법절차에 있어서 행하여지는 변론체제는 그 자체가 바람직한 안전지침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사들이 법률가로서 전문적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재무부나 중앙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국제적인 문제에 변론절차와 같은 것이 생기게 될 것이다. 법률가로서의 자격을 갖춘 일부 이사들은 법발견을 위한 훌륭한 토론에 기여해왔다. 그들은 회원국간에 사전조정없이 이러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쌍방 당사자간 또는 다수당사자간의 합의를 기대할 수 없는 또 다른 가능성은 일부 이사들이 법률가로서 가급적이면 금융기관에서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자문가로서 임명하는 것이다. IMF내에서 이러한 자리에의 임명은 개별적 이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때로는 이사회구성원간 또는 이사의 국적국 행정기관의 양해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한다. 만약 지명된 자가 IMF의 법규범에 익숙하지 않다면 변론적 절차의 목적달성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명은 제한적인 유용성만을 갖게 될 것이다.¹³¹⁾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제도적 해결책은 동시에 근무하는 두 사람의 법률담당관을 임명하는 것이다.¹³²⁾ 두 사람의 법률자문관을 임명하는 데에는 협

131) Ibid., p.597.

132) 국제기구인 African Development Bank(ADB)는 법무담당관실(Legal Department)과 총

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의 직원은 전통적인 지위와 현재의 법률자문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법률감찰관(Legal Ombudsman)으로써 또 다른 한 직원의 기능은 이사회나 총회에 의해 요구되거나 이들 기관의 구성원인 일정한 숫자의 위원에 의해 요구에 의해 그 기관의 이익을 위해 그 기관이 받은 법적 자문에 대하여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해결방법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는 전통적인 법률자문관은 총재에 의해 지명되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른 법률자문관은 IMF의 기관에 대하여 유사한 관계를 갖으면 된다고 한다. 두 사람의 법률자문관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니셔티브의 행사에 관한 관행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협정규정들은 권한의 배분에 있어 SDR의 할당을 의도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니셔티브의 기능이 총재에게 부여된다고 서술하고 있지 않다.¹³³⁾ 즉 SDR의 할당만이 총재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진다. 총재는 어떠한 제안을 하기 전에 당해 제안에 대하여 회원국간에 광범위한 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를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차입협정(GAB)하에서 차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유사한 절차가 존재한다. 총재는 항상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기능을 행사한다. 이사회는 항상 총재의 이니셔티브에 대응하여 IMF의 결정을 채택하는 기능을 행사한다. 직원의 수장으로서 총재와 실질적 크기의 기구를 가지고 있는 이사회는 이러한 권한의 배분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사회는 이미 1948년 1월에 이러한 책임의 분배를 인정하였다. 총재체제하에서 IMF가 해결하여야만 하는 주요 정책과 문제들에 대하여 그리고 이사회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확보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摘要(memoranda)를 제출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를 하는 것은 직원들의 책임이다.¹³⁴⁾ 총회의 결정에 따라 IMF의 정책을 결정하고 제도화하는 것과 IMF의 주요문제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사회에 책임이다. 따라서 이사회는 총재의 제안이 수용가능한 것인가 또는 법률적 문제를 포함하여 경제적 또는 다른 이유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팔자문실(General Counsel)이라는 두 개의 법률자문부서를 두고 있다. 이들 두 부서는 분명히 업무의 내용에 있어 어느 정도 중복이 있으며 ADB내에 있는 서로 다른 공식적 기구에 보고를 한다.

133) 제18조제4항

134) Joseph Gold, *Voting and Decisions in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1972), p.249.

이니셔티브의 범위는 고려할 만하다. IMF의 3분되어있는 권한은 회원국에 대한 IMF의 통제의 단계별 순서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최대의 법률적 통제에는 IMF의 조정권한을 통해 행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대라 함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해석된 바와 같이 회원국들이 이러한 권한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선택권도 없음을 뜻하며 권한에 따른 명령이 광범위한 통화관련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 단계의 순서는 IMF의 재정적 권한이다. 회원국은 재정적 지원을 신청할 것인가를 결정할 선택권을 갖는다. IMF의 재원에 대한 접근에 주어지는 조건은 협정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 않다. IMF의 법적 또는 재정적 권한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조건은 사례에 따라 결정된다. 권한의 세 번째 형태는 IMF의 기술적 지원과 감시의 기능을 포함하는 권고적 기능이다. 협정에는 어떠한 세부적인 규정도 없다.

이러한 구조는 IMF에 의한 법적 통제의 단계적 순서로써 뿐만 아니라 이니셔티브를 위한 기회의 단계별 순서이기도 하다. 총재는 이니셔티브를 이사회에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의견을 일반 여론이나 청중들에 대한 연설을 통해 살필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궁극적으로 이사회에 제의될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여론과 각국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명의 법률담당관을 임명하자는 의견은 직원들 사이에 경쟁심을 촉발시키기 때문에 논쟁을 일으킬 것이며 그 논쟁은 반드시 건설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만약 이러한 생각이 법률적 결론에 있어 차이를 확대킨다면 이사회와 해석위원회에 총회가 재의결하지 않는 한 최종적인 결정을 채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그러한 경향을 축소할 것이다. 대신에 예컨대 한 직원이 다른 한 직원을 통솔하는 등에 의해 두 직원간에 너무 긴밀한 연락관계가 발전된다면 그러한 약정은 2인법률전문가제도의 목적인 대립체제의 장점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인사이동이 해결방법일 것이다.¹³⁵⁾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질문은 법률전문가라는 유일한 통로로부터의 지원에 근거하여 현재 이사회가 행사하고 있는 해석의 독점이 새로운 그리고 효과적인 이의절차를 위한 사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완전하게 이

135) Joseph Gold, op. cit., p.599.

러한 의미에서의 국제적인 법률자문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통 국제법하에서 협정의 당사자는 입법자들이다. 정부에 의해 채택된 협정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지명하거나 선출한 직원을 통해서 활동하는 경우 협정에 가입하여 비록 그들이 준입법적(quasi-legislative) 그리고 준사법적(quasi-judicial)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의미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그들이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협정당사자들은 해석의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승인과 함께 그리고 협정상의 조건이 애매하거나 모호한 의도나 양해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함께 협정에 가입할 때 반드시 그들이 의미했던 것 또는 이해했던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계속적인 의도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새로운 해석으로 귀결되며 협정에 의해 제시된 약정에 대한 진정한 해석이 아니다. 이러한 접근은 개정의 절차를 회피하며 국내법에 의해 입법부에 부여된 기능을 제거한다.

이사회와 이사회의 법률자문관들이 절대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사례는 어떤 IMF의 기관이 해석 대신에 입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독립된 보완사례로 분류된다. 총회의 해석위원회를 기능하도록 하는데 있어 난점은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될 필요없다. 예컨대 해석위원회는 자신의 상급자에게 자문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법률가를 데리고 오는 정부대표로 구성될 수도 있다. 위원회 구성의 문제는 만약 목적이 상임위원회에 관한 동의라면 특히 위원회의 평등투표권이라는 견지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일 것이다. 위원회의 경험이 상임위원회에 관한 동의에 관한 장애에 대한 좀더 나은 평가를 허용하지 않는 한 해석과 관련된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특별 위원을 지명하는 것이 더 가능성있는 쉬운 방법일 것이다.¹³⁶⁾

(4) 투명성과 홍보

(가) 투명성

IMF의 해석에 있어 정확성에 대한 다른 방법에 의한 접근은 바람직한 것이다. 미국 국무성에서 법률자문관의 역할에 관한 보고서는 국무성내의 소속 법

136) Joseph Gold, *Interpretation: The IMF and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599.

를가에 의한 외부적 통제는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에 다른 정부기관 법률가와 민간법률가들이 자신의 법률지식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조언은 사법적 또는 다른 공정한 심사의 안전장치를 제공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국무성 법률자문에 의해 주어지는 조언은 통상 국제법정이나 다른 국제적 기구에 의한 확고한 심사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러한 평가는 IMF의 법률자문의 의견이나 이사회회의 해석적 결정 양자에 모두 동등한 관련성을 갖고 적용되는 것이다. 더욱이 다른 직원들, 언론 그리고 국민들 중에는 일반적으로 국제법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법률자문가들은 정통한 공적 또는 공식적 감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실제에 있어 법적 견지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하거나 국제적인 법 질서를 위반하거나 훼손하는 법률적 조언이나 변호에 대하여 법률자문가 자신의 주의(awareness), 완벽함의 추구 그리고 성실성 외에는 어떠한 안전망(safety net)도 존재하지 않는다.¹³⁷⁾

이러한 문제가 IMF에 적용된다면 이는 해석적 결정에 대한 법적 추론(legal reasoning)에 주어지는 공공성일 것이다. 협정의 해석을 위한 단체의 개념은 IMF협정에 가입한 각국의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협정상외의 문제에 있어 전문가 그리고 해석적 결정의 국제법일반에 대한 관련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국제법원칙에 대한 설명 또는 새로운 원칙의 전개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해석적 결정에 대해 관심이 놓여졌다. 한 국가의 공무원이 아닌 협정의 해석을 위한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협정의 초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협정에 대한 평가를 위해 초청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이들 모두는 협정이 만들어진 이후 법적 측면에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단체를 구성하는 자들은 해석과 법적 기초에 관한 자신들의 견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외부전문가들에 의한 사후적 평론들은 이미 채택된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규범적 영향력을 갖지 않지만 학자들의 평가를 받는 것은 법률담당 직원들에게 그리고 외부 전문가에게 교육적 그리고 교훈적인 영향력을 갖을 수 있다. 외부전문가는 국제법을 포함한 미국정부의 정책에 관하여 매우 가치있는 객관적 전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외부전문가들이 이러한 비판적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구의 통합성과 국

137)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85 (1991), p.361.

제법체제에 대한 최적의 참여에 모두 중요한 것이다.¹³⁸⁾

해석단체의 법률전문가들과 IMF의 상호협력은 IMF와 경제전문가들 사이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IMF의 경제적활동들은 IMF의 직원들에 의한 해설자료들의 주요내용의 주제이며 그들은 동일한 분량 또는 더 많은 분량을 외부 경제전문가들의 전문적 반응에 할애한다. IMF는 외부전문가들의 비판적 활동을 장려하며 외부전문가들이 비판적 글의 결론에 이르기 전에 그들을 초청한다. 국제기구의 법률전문가들은 전문가들과의 접촉의 가치를 강조해 왔다. 국제법상의 문제에 대한 해석단체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지만 국제금융기관의 법률자문가로 구성된 집단이나 IMF회원국 중앙은행의 법률자문가 또는 재무장관 또는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다른 단체를 상상할 수 있다.

외부 법률가들과의 접촉에 있어 또 다른 가능성은 IMF의 법률자문가들이 국제법상의 문제에 대하여 자신보다 더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것이다. 누구도 그에게 IMF의 활동과 명백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 관련되어지는 국제법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백과사전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총회에 해석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진행될 때 해석위원회가 외부자문을 받도록하는 발상이 지지 받았다. 법률자문가들은 통상적으로 이사회에 통보된 메모(memoranda)에 외부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다. 국제사법법원규정(ICJ)은¹³⁹⁾ '다양한 국가의 저명한 국제법학자의 학설'이 국제사법법원이 적용할 법원칙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자문가들은 외부전문가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라도 그들과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외부법률전문가와 협의하면서 법률자문가는 이 사실을 외부전문가의 자문과 관련되어 있는 문서화된 의견으로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률자문가들은 IMF의 기관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고려하도록 제출하게 될 의견을 작성하는데 있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법률자문가들이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였다는 것이 분명한 경우 당해 법률자문가는 이를 평가하고 어느정도 이 의견이 설득력있는

138) Ibid., p.367.

139) ICJ규정 제38조제1항(d)

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률자문가는 자문을 구함에 있어 공적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IMF는 법률자문가가 외부의 법률적 자문을 이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지 않았다.

(나) 대외홍보

IMF는 결정문집(Selected Decisions)이나 연례보고서(Annual Reports) 등을 통해 제한없이 그리고 비용없이 이용할 수 있는 수많은 해석적 결정을 공표해왔지만 당해 결정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나 결정의 법적측면에 대한 설명을 공표하는 관행은 따르지 않았다. 개정안에 대한 보고서는 개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왔지만 제2차개정과 관련한 6권의 방대한 해설자료집을 IMF가 한정된 수량으로 판매한 것이 이 분야에 있어 유일하게 완벽하게 공개한 자료이다. 이 자료집은 모든 관련 직원의 메모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의 대부분은 법적인 성격의 것이고 직원의 견해를 논의하던 당시의 매우 광범위한 이사회 회의록이다. 이 자료집은 그 이후 다른 자료집의 발간을 위한 선례로 이용되지 못하였다. 이들 자료집의 발간은 선례가 없는 것이었으며 그만큼 IMF의 경험에 있어 독특한 것이었다.¹⁴⁰⁾

비록 세계은행은 특정한 법률적 문서의 발간을 고려하고 있지만 대체로는 IMF의 관행과 유사하다. 세계은행의 부총재와 자문위원들에 의해 이사회에 제출된 법률적 의견들은 사례별 적용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사회 결정에 의해 공개될 수 있을 것이다.¹⁴¹⁾

해석적 결정과 그러한 결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에 대한 설명은 과거 법률담당관실의 직원에 의해 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였다. IMF의 법률업무에 대한 연구와 일반인의 이해를 위한 이러한 기여는 IMF에 의하여 공표되어 왔다. 이러한 관행의 재개는 IMF 자신과 국제법의 발전에 이익이 될 것이다. 해석적 결정의 발간을 허용하지만 결정에 대한 설명이나 결정의 근거가 된 법적 근거를 검열하기 위한 정당한 근거가 무엇인가하는 것을 밝혀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제2차개정과 관련된 자료와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는 기밀성의

140) Joseph Gold, *Interpretation: The IMF and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602.

141) The World Bank Policy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Washington, D. C., 1994, p.12.

충돌없이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통찰할 수 있는 정보를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IMF와 그 직원에 대한 유일한 위험은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검열을 통해 정당화되며, 기밀성을 위반하는 어떠한 위험한 위반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각국 당국은 과거의 비공개관행으로부터 좀더 공범위한 공개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5. 해석의 오류

(1) 해석의 오류와 이의제기

해석의 오류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까지 성실한 원칙의 준수가 해석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된 문제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은 명목적인 관심 뿐 아니라 최대한의 관심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투표에 있어서 결과는 문제가 제기되거나 이해되어진 방법에 의해 영향받는다. 만약 IMF가 독창성의 추구에 연관되는 것을 방해하는 해석도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다시 주어진다면 그 반응은 다르거나 최소한 머뭇거리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의 관행에 따르면 이사회의 해석적 결정에 대하여 IMF의 결정으로 이의가 제기된 적이 없다. 이사회는 협정규정의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의미를 결정하며 때로는 이전의 결정을 반복하기도 한다. IMF의 기관에 의한 해석적 결정은 가중투표권(weighted voting power)의 행사에 의해 채택된다. 이러한 이론에 대한 반대는 해석을 가장한 재협상의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제1차 개정이 효과적인 이의절차의 제정을 통하여 그러한 이론을 거부하려고 의도하였다면 그러한 시도는 실패하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절차가 IMF관행의 일부로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자체는 이 이론의 확인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위에서 개괄적으로 설명한 이론은 월권이론(doctrine of ultra vires)이 IMF와 같이 자신의 설립협정에 대하여 내부적 그리고 배타적 해석권한을 갖는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론과 유사하다. 이 이론은 이사회의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IMF에 의한 해석의 오류가능성을 부정한다. 잘못을 입증할 어떠한 공식적 방법도 없는 것이다. 비공식적

견해는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제1차 개정에 의해 도입된 이의절차가 반드시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이러한 이론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이론은 해석의 오류가능성을 받아들이지만 회원국들이 잘못된 해석의 위험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회원국들은 해석의 오류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내부적 해석의 이점을 삼가지 않아도 될 만큼 결정이 정당성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해석의 최종성개념은 만약 해석의 오류가 명백해진다면 이를 수정할 수 있다고 협정의 협상자들이 생각했다는 견해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두 이론의 지지자 또는 해석의 오류가능성에 대하여 회원국을 조정하려고 노력하는 다른 이론의 지지자들은 해석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위안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 해석의 오류는 한 회원국에 대하여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모든 회원국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은 이사회의 결정에 구속된다. 해석적 결정은 투표자의 다수에 의하여 채택될 수 있지만 협정의 개정에 대한 수용은 전체 투표권의 85%를 갖는 회원국들을 포함하여 회원국의 5분의 3 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석의 오류는 회원국들로부터 개정절차에 의해 회원국들이 받고 있는 보호를 박탈하게 된다. 해석적 결정을 찬성하는 의결정족수를 구성하는 회원국들은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니며 모든 회원국들은 동일한 문제에 관한 해석의 오류에 있어 잠재적 피해자이다.¹⁴²⁾

반대하는 회원국은 이사회의 해석적 결정에 대하여 총회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단계는 해석위원회의 설치를 위해 총회와 내규(by-law)를 협상하는 고난속으로 이사회가 다시 한번 빠져들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움직임에 의해 제기되는 무관심은 반대자를 협정 제 29조에 따라 총회에 해석문제를 협의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2) 해석의 오류에 대한 주의

해석의 오류에 관한 주의가 필요없다는 견해를 정당화하는 실리주의적 이론

142) Joseph Gold, *Interpretation: The IMF and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605.

은 법의 설득력 또는 적확성을 거부하거나 감소시키며 해석의 기준으로써 편의주의에 의존하는 것이다. 법은 해석적 결정의 채택에 책임이 있는 다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회원국들에 대한 보호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에 의사 결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합의 또는 광범위한 합의정책은 결정에 대한 반대를 제거하거나 반대를 감소시켰다는 것은 사실이다. 결정의 채택에 있어 다수를 구성하는 국가에는 본의와 다르게 포함된 국가도 있을 것이며 따라서 반대하는 국가만이 결정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하는 국가가 아니다. 정책으로써 편의주의가 적절한 해석으로써 법의 보호를 대신한다면 그러한 국가들의 숫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것이다. 해석자로서 IMF의 통일성에 대한 신뢰가 축소되고 있으며 회원국간의 협력과 회원국공동체의 개념은 명시된 목적의 추구에 결합되어 있다.

해석의 오류에 대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으로부터 추출되는 추론은 잘못된 해석에 대한 구제가 IMF의 역사와 IMF의 법률적, 경제적, 그리고 외교적 원칙을 인식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완을 가진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가장 고위직에 있는 직원은 당연히 유지되어야 한다. 또 다른 추론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에 의한 것이든 해석의 오류는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에 의하여 지배되는 집합체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IMF는 반드시 해석을 위한 기술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하며 IMF가 수용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기술을 확립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해석문제가 고려되는 경우 하나의 해결책을 지지하는 모든 합리적인 견해가 제시되어야 하고 IMF의 법률담당 직원에 의해 IMF에 의해 확립된 기술의 기초에 근거한 IMF가 권고한 해석에 가깝게 설정된 합리적 결정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만약 법관이 수용가능한 몇몇 절차적 방법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능력이 있다면 자유에 대한 두려움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¹⁴³⁾

해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의 위험은 대부분의 개별국가에는 전체 투표권의 매우 일부만 배당하고 가중투표제도에 의하여 결정을 채택하는 국제기구에 있어서 특히 중대한 것이다. 효과적인 절차는 이사회로부터의 이의제기에 적절한

143) Thomas Morawetz, "The Epistemology of Judging" in Dennis M. Patterson, et. al., (ed.), *Wittgenstein and Legal Theory*, 1992, p.5.

것이어야 한다. 비록 이의절차에 대한 의존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드물다고 할 지라도 이의절차의 존재는 IMF의 기관, 운영 그리고 직원들에게 교훈적인 영향력을 갖을 수 있다. 정책은 결정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법률적 근거에 대한 설명의 공표가 뒤따라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뒤따른다면 법률전문가들은 자신의 지식을 기여할 수 있으며 국제법의 신성한 의무를 보존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로서 그리고 국제기구에 대한 존중으로서 협정해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강조할 수 있다.

(3) 협정의 자체개정문제

회원국의 국내적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협정의 개정이 어렵게 하는 이유의 하나이다. 따라서 원협정규정들이 협상되고 있을 때 국내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IMF의 협정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제안들이 IMF의 관계 부서에 제출되었다. 제2차 개정안의 초안준비작업 당시에 회원국들이 보유한 통화를 예치할 수 있는 대체계좌(Substitution Account)를 포함하는 몇 개의 그러나 중요한 주제에 관하여 IMF의 기관에 의한 '자체개정'(self-amendment)을 허용하자는 제안이 있었다.¹⁴⁴⁾ 이러한 제안은 IMF의 기관에 의한 자체개정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체계좌와 관련된 상세한 규정에 합의가 이르지 못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초안의 한 조항은 약정의 교환과 관련하여 자체개정을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져 왔다. 이 모든 제안들은 절차에 있어 유사하며 당해 문제에 관해 완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협상자들에 의해 후에 IMF의 기관의 해석에 의한 해결로 남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권한은 협정본문의 변경으로 귀결되지는 않았다.

자체개정을 위한 모든 제안은 주로 협상자들이 자신들이 자체개정에 긍정적인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입법과정에서 제안된 개정안의 전체에 대한 거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거부되어왔다. 입법자들은 자체개정을 자신들의 특권에 대한 우회방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듯하다.

비록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원협정과 관련한 자체개정안은 특정한 상황하에서 본문의 개정없이 그리고 사실은 회원국들이 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개

144) Joseph Gold, "Substitution in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Selected Essays*, Vol. 2, pp.308~378.

정을 고려하는 동안 한정된 간격을 확립하기 위하여 IMF가 특정한 조항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타협을 이끌어 냈다. 어느정도 자체개정 또는 조항의 운영정지와 유사한 다른 방법은 몇몇 조항의 특정한 요건을 변경하는 IMF의 권한이다. 변경은 해석이 아니라 IMF에 부여된 재량권의 결과이다. 변경은 성문의 협정규정의 몇몇 요건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조문의 문언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다.¹⁴⁵⁾

(4) 통합성

통합성(integrity)이란 용어는 매우 복잡한 단어의 하나이다. 통합성은 한편의 의미로는 전체성 또는 건전성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직성 모두를 함축하고 있다. 이 용어는 특히 유권적 그리고 비공식적 해석에 대하여 내부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권한을 외부기구에 양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구의 한 기관을 통해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기도하는 국제기구로서 IMF에 있어서 해석의 지침으로서 적절한 것이다.¹⁴⁶⁾

확립된 지침이 없다면 편의주의에 의한 자의적 결과에 대하여 보호기능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찾기 힘들다. 지침이라는 것은 올바른 해결을 위한 지도이며 잘못된 해석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해석의 오류는 두 가지 방식에 있어 모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는다. 이는 모든 사례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만약 금을 매도하여 남은 금액이 과거의 공식가격을 초과한 경우 협정 제5조제2항(b)에 의한 IMF의 정책실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이용되어 질 수 있다. 이와 동일한 금의 이용은 다른 정책에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묵시적 권한이 다른 묵시적 권한을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도달한 해석은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의 오류는 다른 조항에 대한 해석의 오류를 지지하는 선례로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만약 IMF의 해석권한행사가 다음의 세 가지 형태의 존중과 일치한다면 IMF에 있어서 통합성은 통합의 모든 의미에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45) 자체개정, 변경권 그리고 규정효력의 정지에 관하여는 Joseph Gold, *The Rule of Law in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Pamphlet Series, No. 32(1980), pp.17~20.

146) Joseph Gold., op. cit., p.608.

살아있는 협정이라는 의미에서 문언의 부정확성에 대한 인정과 함께 현재에 대한 존중이다. 둘째, 협정 협상자들의 의도와 이전의 결정을 포함한 과거에 대한 존중이다. 셋째, 해석 또는 IMF의 근거법에 대한 재해석에 대한 결정이 IMF의 목적추진에 가장 적절하다는 의미에서 미래에 대한 존중이다.

국제법에 있어 '객관적' 용어는 없다. 모든 법률용어는 해석되어야 하며, 모든 해석은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모든 해석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법의 원칙은 중요한 사실적 그리고 상황적 고려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¹⁴⁷⁾ IMF협정의 해석 또한 이러한 국제법원칙의 해석원리에 따라 현 협정문언의 해석 필요성, 협정문 기초자들의 입법취지와 협정의 운영 그리고 새로운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 전체적이며 권위가 있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47) Anthony D'Amato, *International Law Anthology*, 1994, p.219.

제5장 IMF의 기능강화에 따른 협정의 개정과 해석

1. IMF 기능강화

지난 50년간 IMF는 3차례에 걸친 설립협정의 개정을 통해 업무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국제통화질서의 변천에 따라 스스로의 역할을 적응시켜왔고 또 여전히 국제통화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유용한 기구로서 역할을 하여왔다. 1970년대 초 고정환율제라는 브레튼우즈체제의 기초가 무너진 이후, IMF는 두 차례의 석유위기, 1980년대의 남미국가 외채문제, 1990년대 초 공산주의의 붕괴 등 새로운 사태의 발발에도 불구하고 매번 상황의 개선에 중추적인 기여를 해왔으며 원조약의 일시적 외환부족 지원을 위한 스탠드바이약정도입에 추가하여 새로운 신용공여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지원수요에 대처하여 왔다.

더욱이 IMF는 최근의 세계금융·경제환경의 변화, 즉 금융·경제의 세계화,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정, 회원국간 거시경제의 불균형 및 국제통화제도의 불안요인의 확대 등에 대응하여 회원국경제에 대한 조기경보체제의 일환으로 회원국이 양질의 금융·경제통계를 공표하도록 특별공표기준을 확정하여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회원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기능강화를 위하여 11개항의 중점정책과제를 제시한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파트너쉽선언”을 채택하고 회원국과의 연차협의를 1년단위로 정례화하여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체제의 적절성과 국제적인 감독기준준수 등을 통한 금융제도의 건전성확보와 자본자유화를 위한 IMF의 역할제고 및 신차입협정(New Arrangement to Borrow:NAB)의 체결을 통한 IMF의 금융위기 대응능력강화 등을 위한 방안도 강구중이며 개도국의 구조조정 및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¹⁴⁸⁾

또한 IMF는 은행 및 금융부문과제에 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감시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설립협정 제4조에 따른 전 회원국과의 연차협 의시에 거시경제전반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시스템상의 취약점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교정정책을 제안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48) 한국은행, 최근 IMF 기능강화를 위한 주요조치 및 논의내용, 한은정보(1997. 3.), 87면~90면 참조.

국제통화제도 자체의 개혁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음의 요인들이 근거로 제기되고 있다. 우선 현행 세계통화정책은 체계가 없어 국제사회나 각국의 정책수립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없으며 앞으로 환율의 안정성을 보장할 가능성 또한 보여주고 있지 않다. 둘째, 냉전체제의 종식에 따른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자유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과 동아시아국가들이 급격히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셋째, GATT에서 WTO로의 세계무역의 기본체제변화 등의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 맞추어 국제통화체제 역시 여기에 걸맞는 근본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⁴⁹⁾

2. IMF협정의 개정필요성

IMF는 현실적응적인 설립협정의 해석적 결정과 비공식적 해석이라는 노력을 통해서 전통적인 기능외에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 및 논의를 해왔으나 장기적으로 IMF는 연성법(soft law)의 개발 및 IMF설립협정의 개정 등을 통해 현재의 기능 이외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자본거래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미 자본이동규제를 거의 철폐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개도국의 경우에도 자본이동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투자 및 금융서비스의 장벽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자본거래자유화는 외국인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IMF는 자본거래 자유화를 위해서 자본이동 자유화에 따라 급격한 유출입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선결조건을 회원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둘째, 첫 번째의 새로운 역할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은행시스템을 강화하는 활동이다. 그 동안 선진국과 후진국 여러 나라에서 대형은행들의 부실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금융기관 부실문제 해소를 위한 구제조치(bailout operation)는 결국 회원국 재정에서 부담하게 되지만 이는 회원국의 재정적자증가 등 경제안정을 해치게 된다. 이에 따라 IMF는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과 협력하여 건전성규제, 회계제도, 금융감독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149) 裴容浩, 國際通貨制度의 改革論議 - 브레튼우즈위원회의 안을 중심으로 -, (국제문제분석 제10호) 1995. 4. 국회도서관, 6면, 한국경제신문, 1994. 7. 7. 23면.

연성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축통화간 환율조정과 관련 IMF의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동남아 국가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외환위기도 각국의 물가수준이라든가 이차율수준, 재화의 국제적 이동에 따른 외환의 수급관계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던 현실의 환율이 실물경제의 교란을 흡수하면서 발생한 미국 달러화의 강세와 관련이 있다. 세계적으로 균형되고 안정된 무역거래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기축통화간의 환율안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변동환율대(flexible exchange rate bands) 등의 새로운 환율체제도입을 전향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1999년 1월 1일로 예정된 유럽통화통합 및 Euro의 도입과 함께 IMF협정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문제이다.

넷째, 새로운 유형의 외환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IMF는 신차입협정의 체결을 통해 긴급자금동원능력을 확대하고 조기경보체제의 일환으로 경제·금융통계의 공표기준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을 위한 IMF의 연성법이 형성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IMF설립협정의 개정이 있어야 하지만 이는 IMF내에서 총회와 이사회의 협의절차 및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협상과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IMF내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각국의 국내법에 따른 비준절차에서 국내적 반발로 인하여 개정의 실질적 효력발생까지는 많은 시일이 요구되므로 모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하지만 IMF내에서 채택되는 새로운 유권적 해석은 신속성을 확보하면서도 회원국 모두를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3. IMF협정해석의 지침

확립된 지침이 없다면 편의주의에 의한 자의적 결과에 대하여 IMF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보호기능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찾기 힘들다. 지침이라는 것은 올바른 해결을 위한 지도이며 잘못된 해석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침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석의 오류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는다.

목시적 권한이 다른 목시적 권한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도달한 해석은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동일한 논리에 의해서 한 건의 해석의 오류는 다른 조항에 대한 해석의 오류를 지지하는 선례로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만약 IMF의 해석권한행사가 다음의 세 가지 형태의 거시적인 지침과 일치한다면 IMF에 있어서 해석의 오류는 배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살아있는 협정이라는 의미에서 문언의 부정확성에 대한 인정과 함께 현재에 대한 존중이다. 둘째, 협정 협상자들의 의도와 이전의 결정을 포함한 과거에 대한 존중이다. 셋째, 해석 또는 IMF의 근거법에 대한 재해석에 대한 결정이 IMF의 목적추진에 가장 적절하다는 의미에서 미래에 대한 존중이다.

법의 해석은 본문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규정의 목적뿐만 아니라 선례의 역사와 정책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 등을 참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록 1〉

IMF의 연혁

연 도	주 요 내 용
1944	미국 뉴햄프셔주 Bretton Woods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nference에 참석한 45개국이 IMF와 세계은행의 설립협정문안 (Draft Articles of Agreement for the IMF and World Bank) 합의
1945	29개국이 협정문을 채택함으로써 협정문이 발효
1946	창립총회를 미국 조지아주 Savannah에서 개최하고 본부를 Washington D.C.에 두기로 함. 32개국에 대한 고정환율제 도입
1947	IMF신용개시: 프랑스가 처음 지원받음
1952	독일과 일본이 가입; 최초의 자금지원제도인 스탠드바이차관제도 도입
1959	제1차 쿼터증액(50%)
1961	유럽 9개국 경상거래지급자유화(제8조국)
1962	G-10의 60억달러 규모의 일반차입협정(General Arrangement to Borrow) 발효
1967	특별인출권(SDR)창설 기본원칙 합의 ; 영국파운드 스텔링 평가절하, 영국에게 14억달러 스탠드바이자금 지원
1969	SDR 창설(제1차협정문 개정)
1970	제1차 SDR 배분개시(95억 SDR)
1971	미국달러금태환정지(suspension of Convertibility) ; 브레튼우즈체제(고정환율제 및 금태환) 소멸
1974	이탈리아에게 10억달러의 스탠드바이자금 지원 ; Interim Committee도입 ; EFF자금 지원제도 도입
1975	영국에게 Oil Facility 10억달러, 스탠드바이자금 7억달러 지원결정
1977	영국에게 33.6억 SDR의 스탠드바이자금 지원결정
1978	자유변동환율제도 수용, 가맹국 환율제도채택 자유화(제2차 협정문 개정)
1980	중국이 대만 대신에 가맹국이 됨
1982	멕시코 대외부채위기, 멕시코에 36억 SDR지원결정
1983	아르헨티나에 20억 SDR 지원결정 ; 브라질에게 50억 SDR 지원결정
1985	서울총회시 베이커 미국 재무장관, 고위채 15개국 지원방안 발표
1986	SAF(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도입
1987	제7대 칸드쉬 총재취임 ; ESAF(enhanced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도입

1989	Brady 미국재무장관, 개도국 외채경감방안 발표 ; IMF이사회, 외채 및 외채상환금 경감방안 마련
1990	체코슬로바키아, 몽골 등 체제전환국 가입 ; 폴란드에 7억 SDR 지원결정
1992	구소련 12개국 가입 ; 제9차 쿼터증액(50%) ; IMF자금 연채국에 대하여 회원자격 정지제도 도입(제3차 협정문 개정)
1993	동구권 및 구소련 국가의 시장경제지원을 위하여 체제전환 자금지원제도도입
1994	부총채를 3인으로 늘리고 수석 부총채제를 도입
1995	멕시코에 121억 SDR 스탠드바이자금 지원결정 ; 러시아에 43억 SDR 스탠드바이자금 지원결정
1996	러시아에 69억 SDR EFF자금 지원결정 ; IMF, 세계은행 공동으로 고외채빈곤국 외채경감방안마련 ; 주요통계 민간공표기준도입
1997	신차입협정을 체결(340억 SDR)하고 대상국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5개국으로 확대 ; IMF쿼터 증액(1,450억 SDR에서 2,120억 SDR로 45%증액) ; SDR 추가배분(214억 SDR에서 429억 SDR로 100% 증가)

〈부록 2〉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대한 제3차개정

이 협정에 서명한 각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 문

- (i) 국제통화기금은 당초에 채택되고 그후 개정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된다.
- (ii) 기금의 운용과 거래의 수행을 위하여 기금은 일반재정부와 특별인출권부를 둔다. 기금에의 가입으로 특별인출권부에의 참여권이 부여된다.
- (iii) 이 협정에 의하여 인정된 운용과 거래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원계정·특별지급계정 및 투자계정으로 구성되는 일반재정부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다만, 특별인출권에 관련된 운용과 거래는 특별인출권부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제1조 목 적

국제통화기금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i)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협의와 협력을 제공하는 상설기구로서 국제통화협력을 촉진한다.
- (ii) 국제무역의 확대와 균형있는 성장을 조장하고 이로써 경제정책의 주요목표인 모든 회원국의 높은 수준의 고용과 실질소득의 촉진 및 유지와 생산자원의 개발에 기여한다.
- (iii) 환율의 안정을 촉진하고 회원국간의 질서있는 환율약정을 유지하며 경쟁적인 환율절하를 회피한다.
- (iv) 회원국간의 경상거래에 관한 다각적 결제제도의 확립과 세계무역의 성장을 저해하는 환율에 관한 제한의 제거에 협력한다.
- (v) 적절한 안전장치하에 회원국으로 하여금 기금의 일반재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로써 회원국이 국내 또는 국제적 번영을 파괴하는 조치에 의하지 않고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회원국에 신뢰감을 준다.

(vi) 이상과 같은 조치로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의 지속기간을 단축하고 그 정도를 경감한다.

기금은 기금의 모든 정책과 결정에 있어 본조에 천명된 목적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제2조 회원국

1. 원회원국

기금의 원회원국은 국제연합통화금융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국가로 그 정부가 194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을 수락한 국가로 한다.

2. 기타 회원국

기타 국가들도 총회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출자조건을 포함한 제조건은 이미 가입을 한 회원국에 적용되었던 조건과 동일한 원칙을 따른다.

제3조 할당액 및 출자

1. 할당액 및 출자납입

각 회원국은 특별인출권으로 표시된 할당액을 배분받는다. 국제연합통화금융회의에 참석하고 194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을 수락한 회원국의 할당액은 부표A에 기재된 바와 같다.

기타 회원국의 할당액은 총회에서 정한다.

각 회원국의 출자액은 회원국의 그 할당액과 동액이며 이 출자액은 적절한 예탁기관을 통하여 기금에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2. 할당액조정

(a) 기금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회원국의 할당액에 관하여 일반 검토를 행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회원국에 대한 할당액의 조정을 제의한다. 기금은 또한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관계 회원국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 회원국의 할당액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b) 기금은 언제든지 제5조제12항(f) (i) 및 (j)의 규정에 의해 특별지급계정에서 일반재원계정으로 이전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1975년 8월 15일 현재 회원국의 할당액에 이전금의 누적액을 동 일자의 동 회원국의 할당액에

비례하여 증액시킬 것을 제안할 수 있다.

- (c) 할당액의 변경은 총투표권의 85퍼센트 이상의 다수결을 요한다.
- (d) 회원국의 할당액은 당해 회원국이 할당변경을 동의한 후 납입을 완료하지 않고서는 변경되지 않는다. 단, 본조 제3항(b)에 따라 납입이 완료되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3. 할당액 변경시의 납입

(a) 할당액의 증액에 동의한 회원국은 본조 제2항(a)에 따라 기금이 결정하는 기간내에 증액분의 25퍼센트를 특별인출권으로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총회는 전회원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전기납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이 선정하는 타회원국의 통화로 통화제공국의 동의를 얻은 후 납입하거나 혹은 당해 회원국의 자국통화로 납입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특별인출권부의 비참가국은 증액분중 특별인출권부의 참가국이 특별인출권으로 납입하는 부분을 기금이 선정하는 타회원국의 통화로 통화제공회원국의 동의를 얻은 후 납입하여야 한다. 증액분중 잔여액은 당해 회원국의 자국통화로 납입한다. 기금이 보유하는 회원국통화는 본항의 규정에 따라 타회원국이 행한 납입으로부터 인하여 제5조제8항(b)(ii)에서 규정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준을 초과하여 증가할 수 없다.

(b) 본조 제2항(b)에 의하여 할당액의 증액에 동의한 각 회원국은 그 증액분에 상당하는 출자액을 기납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c) 회원국이 그 할당액의 감액에 동의하였을 경우 기금은 60일 이내에 그 회원국에 감소액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다.

지급은 그 회원국통화와 특별인출권 또는 기금이 선정하고 동의를 얻은 타회원국의 통화로 하되 특별인출권 또는 타회원국 통화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금의 당해국가 통화보유액이 새로운 할당액 이하로 감소되지 않는 범위로서 한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 기금은 그 회원국에 당해 국가통화로 지급함으로써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국가통화를 새로운 할당액 이하로 감축할 수 있다.

(d) 상기 (a)에 관한 결정에는 총투표권의 70퍼센트 다수결을 요한다. 단, 동규정에 따른 기간의 결정 및 통화의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4. 증권에 의한 통화의 대체

기금은 기금운용 및 거래상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일반재원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떤 회원국 통화에 대체하여 그 회원국 또는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그 회원국이 지정한 예탁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이와 유사한 채무증권을 받을 수 있다.

채무증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무이자증권이며 지정예탁기관에 있는 기금계정에 대기함으로써 그 액면가액을 청구 즉시 지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본항은 회원국들의 출자통화 뿐만 아니라 기타 원인으로 기금에 납입하거나 또는 기금이 취득하여 일반재원계정에 보유하게 되는 통화에도 적용된다.

제4조 환약정에 관한 의무

1. 회원국의 일반적 의무

각 회원국은 국제통화제도의 주요 목적이 각국간에 재화와 용역 및 자본의 이동을 촉진하고 건전한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 기구를 마련하는데 있고 또한 주된 목표가 재정 및 경제의 안정을 위해 질서있는 기초여건을 계속 개발하는데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각 회원국은 질서있는 환율약정의 준수와 안정적인 환율제도의 촉진을 위해 기금 및 타 회원국과 협력할 의무가 있다. 특히 각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i) 각 회원국은 당해 국가의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물가안정을 유지하며 질서있는 경제성장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당해 국가의 경제 및 재정정책을 지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i) 각 회원국은 질서있는 경제 및 재정적 기초여건을 육성시키고 돌발적인 와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통화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안정의 증진을 모색한다.

(iii) 각 회원국은 효율적인 국제수지조정을 지지하거나 또는 타회원국과의 경쟁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환율이나 국제통화제도를 조작하는 행위를 회피한다.

(vi) 각 회원국은 본항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에 부합되는 환정책을 시행한다.

2. 일반환약정

(a) 각 회원국은 이 협정의 제2차 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국이 본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국이 적용할 환약정에 대해 기금에 통보해야하며 이 환약정에 어떤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기금에 통보해야 한다.

(b) 1976년 1월 1일 현재 실시중인 국제통화제도의 환약정에서는 (i) 회원국이 특별인출권이나 또는 그 회원국이 선정한 금 이외의 다른 공통단위로 표시한 당해 국가통화가치를 유지하거나, 또는 (ii) 회원국들이 그들의 통화가치를 타회원국의 단일통화나 수개통화의 가치에 관련지어 유지하는 상호약정이나, 또는 (iii) 회원국이 선택하는 기타 약정 등이 포함될 수 없다.

(c) 국제통화제도의 발전에 상응하여 기금은 총투표권의 85퍼센트 이상의 다수결로 일반적 환약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회원국이 당해 국가의 선택에 따라 기금의 목적 및 본조 제1항의 의무에 부합되는 환약정을 채택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받지 않는다.

3. 환약정에 대한 감독

(a) 기금은 국제통화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국제통화제도에 대한 감독을 하며 또한 본조 제1항의 의무에 대한 각 회원국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b) 상기 (a)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금은 각 회원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실시하며 또한 전 회원국에 대한 환율정책의 지도를 위해 별도의 원칙을 채택한다. 각 회원국은 기금의 감독업무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기금에 제공해야하며 기금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금과 당해 국가의 환율정책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기금이 채택하는 제원칙은 회원국들이 그들의 통화가치를 타 회원국의 단일통화나 또는 수개통화의 가치에 관련지어 유지하게 되는 상호약정 뿐만 아니라 기금의 목적과 본조 제1항에 합치되게 회원국이 임의 선택한 기타 환약정과도 부합되어야 한다. 이 원칙들은 회원국의 국내의 사회적 및 정치적인 제정책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이 원칙들의 적용에 있어 기금은 회원국의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4. 평 가

기금은 총투표권의 85퍼센트 이상의 다수결로 세계경제의 여건이 안정적이

나 조정가능한 평가에 기초를 둔 광범위한 환약정제도의 도입을 허용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기금의 이와같은 결정은 세계경제의 기초가 안정적이라는 근거하에서 행해지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기금은 회원국경제의 물가변동과 성장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기 결정은 국제통화제도의 진전이라는 관점에서 특히 유동성의 공급을 참작하고 또한 평가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불균형조정을 위한 개입 및 처리에 관한 회원국의 제약정 뿐만 아니라 국제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이 공히 국제수지조정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대칭적인 조치를 취하게 하는 제약정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결정이 이루어지면 기금은 회원국에 부표C의 규정이 적용됨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회원국 영토내의 별종통화

(a) 이 협정에 따라 한 회원국이 자국통화에 관하여 취한 조치는 별도로 그 회원국이 상기조치가 당해 국가의 본토의 통화에만 관련하는 것인가 또는 일종 또는 수종의 특정한 별정통화에만 관련하는 것인가 혹은 본토의 통화와 일종 또는 수종의 특정된 별종통화에 관련하는 것인가를 표명하지 않는 한 당해 국가가 제3조제2항(g)에 의하여 이 협정을 수락한 당해 국가 전 영토내에 있는 모든 별종통화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b) 이 협정에 따라 기금이 취한 조치는 기금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상기 (a)에서 언급된 한 회원국의 모든 통화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기금의 운용과 거래

1. 기금과의 거래기관

각 회원국은 자국국고·중앙은행·안정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재정기관을 통하여서만 기금과 거래하여야 하며 기금도 상기 기관들을 통하여서만 거래하여야 한다.

2. 기금의 운용 및 거래에 관한 제한

(a) 이 협정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금계정상의 거래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매입 희망 회원국의 통화와 상환으로 일반재정계정에서 보유하게 될 기금의 일반재원으로부터 특별인출권 또는 타회원국 통화를 회

원국에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한한다.

- (b) 기금은 요청에 의해 제회원국이 기부한 재원의 운영을 포함하여 기금의 목적과 부합되는 금융 및 기술용역 지원을 실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상기 금융지원에 관한 운용은 기금의 계정에서 행하지 않는다. 본호에 따라 지원을 실시할 경우에 당해 회원국이 동의를 하지 않는 한 동회원국에 어떠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3. 기금의 일반재원 이용에 관한 조건

- (a) 기금은 대기성차관약정이나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을 포함하여 기금의 일반재원이용에 관한 정책을 채택한다. 또한 기금은 특수한 경우에 국제수지조정을 위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국제수지문제를 해결하려는 회원국을 지원하고 기금의 일반재원의 일시적 이용에 대한 보장 조치가 되는 특별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
- (b) 회원국은 다음 조건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타회원국통화를 이에 상당하는 자국통화와 상환으로 매입할 수 있다.
 - (i) 회원국의 기금일반재원이용은 이 협정의 제규정 및 이 협정에 따라 채택된 정책과 부합되어야 한다.
 - (ii) 회원국이 국제수지 또는 대외준비상태나 혹은 대외준비의 변동으로 인하여 매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 (iii) 매입신청이 준비부분에 대한 매입이든가 또는 동매입신청으로 기금의 일회원국 통화보유액이 동회원국 할당액의 2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iv) 기금이 본조 제5항, 제6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a)에 의하여 매입희망회원국이 기금의 일반재원의 이용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선언한 일이 없어야 한다.
- (c) 기금은 회원국이 신청한 매입이 이 협정의 제규정 및 이 협정에 따라 채택된 정책과 부합하는가를 결정짓기 위해 매입신청을 검토한다. 다만 준비부분에 대한 매입신청은 거부할 수 없다.
- (d) 기금은 매각할 통화의 선정에 관한 제정책 및 절차를 채택하며 이 경우에 기금은 회원국과 협의하고 동회원국의 국제수지와 대외준비상태 및 외환사정의 추이 상황을 고려하며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금내 통화간의

균형을 촉진시킬 것도 아울러 감안하여야 한다. 단, 한 회원국이 타회원국이 제공한 자국통화를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회원국 통화를 매입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동회원국은 기금이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금보유 특정회원국통화가 회소함을 통지한 일이 없는 한 그 특정회원국통화를 매입할 자격이 있다.

(e) (i) 각 회원국은 기금에서 매입된 당해 국가통화의 잔액이 자유사용가능 통화의 잔액이 됨을 보증하던가 또는 동잔액이 매입시에 제19조제7항(a)에 의한 양통화간의 환율에 상당하는 환율을 적용하여 당해 국가이 선정하는 자유사용 가능통화와 교환될 수 있음을 보증한다.

(ii) 각회원국의 통화가 기금에서 매입되거나 기금에서 매입된 타통화와 교환되어 취득하는 경우 각 회원국은 당해 국가통화의 잔액이 매입시에 타회원국의 자유사용가능통화와 교환이 가능하도록 기금 및 타회원국과 협력한다.

(iii) 상기 (i)에 의해 자유사용가능통화가 아닌 통화의 교환은 매입되는 통화의 회원국과 매입회원국간에 별도의 다른 절차에 합의하지 않는 한 매입되는 통화의 회원국이 행하여야 한다.

(iv) 기금에서 타회원국의 자유사용가능통화를 매입하여 동통화를 매입시에 다른 자유사용가능통화로 교환하기를 원하는 회원국은 이 통화를 제공하는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이 회원국을 상대로 교환하여야 한다. 동 교환은 상기 (i)에 의한 환율에 따라 통화제공국이 선정하는 자유사용가능통화와 상환으로 행하여진다.

(f) 기금은 기금이 채택하는 제정책과 절차에 따라 본항의 규정에 의해 매입을 하려는 특별인출권부 참가국에게 타회원국 통화대신 특별인출권으로 제공할 것을 동의할 수 있다.

4. 조건의 면제

기금은 그 재량에 의하여 그리고 그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 조건으로 특히 다액 또는 계속적인 기금일반재원의 사용을 회피하여온 기록이 있는 특정 회원국에 대하여 본조 제3항(b)(iii) 및 (iv)에서 정한 제조건을 면제할 수 있다. 조건의 면제에 있어 기금은 면제를 요구하는 회원국의 주기적 또는 예외적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금은 또한 회원국이 기금의 이익보전에 충분

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인수가능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것을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면제의 조건으로 이러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5. 기금의 일반재원 이용자격의 상실

회원국이 기금의 일반재원을 기금의 목적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 기금은 이에 관한 기금의 의견과 적당한 회답기한을 정한 보고서를 그 회원국에 제시한다. 전기 보고서를 회원국에 제시한 후 기금은 그 회원국의 기금 일반재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소정기간내에 그 회원국으로부터 보고서에 대한 회답을 접수치 못한 경우 또는 접수된 회답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기금은 그 회원국의 기금재원의 이용을 계속하여 제한하거나 또는 그 회원국에 합당한 통고를 발송한 후 동회원국에 대하여 기금재원의 이용자격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

6. 기금에 의한 기타의 특별인출권 매입과 매각

(a) 기금은 특별인출권부 참가국이 특별인출권 상당액의 타회원국 통화와 교환할 목적으로 기금에 제공하는 특별인출권을 인수할 수 있다.

(b) 기금은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타회원국 통화상당액을 대가로 특별인출권을 제공할 수 있다. 기금보유 회원국통화는 전기 거래로 인하여 본조 제8항(b)(ii)에 의하여 당해 국가통화보유액에 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준을 초과하여 증가할 수 없다.

(c) 본항에 따라 기금이 제공하거나 인수하는 통화의 선정은 본조 제3항

(d) 또는 제7항(i)의 제원칙을 고려하여 채택한 제정책과 부합되어야 한다. 본항에 의한 기금의 거래는 기금이 제공하거나 인수할 통화의 당해 회원국이 동통화의 사용을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7. 회원국에 의한 기금보유 자국통화의 환매

(a) 회원국은 언제든지 본조 제8항(b)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금 보유 자국통화분을 환매할 수 있다.

(b) 본조 제3항에 의해 매입을 한 회원국은 당해 국가의 국제수지 및 대외 준비상태가 개선됨에 따라 이 매입의 결과로 인한 기금 보유 자국통화와 본조 제8항(b)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금 보유 자국통화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환매를 한다. 만일 기금이 채택한 환매정책에 따라 회원국과

협의 후에 당해 국가의 국제수지와 대외준비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이유로 환매할 것을 기금이 요청할 경우에는 동회원국은 전기 자국통화를 환매하여야 한다.

- (c) 본조 제3항에 의해 매입을 한 회원국은 이 매입의 결과로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국통화 중 본조 제8항(b)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일자로부터 5년이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환매하여야 한다. 기금은 회원국이 매입일자로부터 3년내지 5년 사이의 기간중에 분할환매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기금은 총투표권의 85「퍼센트」이상의 다수결로 본호에서 정한 환매기간을 변경할 수 있고 이렇게 변경된 기간은 전회원국에 적용되어야 한다.
- (d) 기금은 총투표권의 85「퍼센트」이상의 다수결로 상기 (c)에 의해 적용되는 기간 이외에도 기금이 일반재원 이용에 관한 특별정책에 따라 기금이 취득하여 보유하는 통화의 환매기간을 채택할 수 있다.
- (e) 회원국은 기금이 총투표권의 70「퍼센트」이상의 다수결로 채택한 제정책에 따라 매입 이외의 이유로 기금이 보유하는 자국통화중 본조 제8항(b) (ii)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매하여야 한다.
- (f) 기금의 일반재원 이용정책에 따라 상기 (c) 또는 (d)의 환매기간을 현재 실시중인 기간보다 단축시키는 결정은 동 결정의 발효일 이후에 기금이 취득하여 보유하는 통화에만 적용된다.
- (g) 기금은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환매의무 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나 상기 (c) 또는 (d)에서 정하거나 상기 (e)에 따라 기금이 채택하는 정책에서 정한 최장기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기금이 총투표권의 70「퍼센트」이상의 다수결로 만기일의 의무이행이 그 회원국에 예외적인 부담이 되므로 환매기간의 연장이 기금의 일반재원의 일시적인 이용과 부합됨을 인정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h) 본조 제3항(d)에 의한 기금의 제정책은 기금이 본조 제7항에 따라 환매되지 않은 기금보유 회원국통화를 동회원국과 협의한 후 본조 제3항(b)에 의하여 매각할 것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정책과 보완되어 운용되며 후자의 정책은 기금이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의해 위임받아 취하게 되는 어떤 조치도 저해하지 않는다.

- (i) 본항에 의한 모든 환매는 특별인출권이나 또는 기금이 선정하는 타회원국통화로 행한다. 기금은 회원국이 환매에 사용할 통화 선정에 관한 본조 제3항(d)의 제원칙을 고려하여 제정책과 절차를 채택한다. 환매에 사용되는 일회원국통화의 기금보유액은 본조 제8항(b)(ii)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준을 초과하여 증가할 수는 없다.
- (j) (i) 상기 (i)에 의해 기금이 선정한 회원국의 통화가 자유사용가능통화가 아닐 경우에는 이 회원국은 환매당사국이 환매시에 피선정된 통화의 회원국이 선정하는 자유사용가능통화와 교환으로 환매통화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보증해야 한다. 본 규정에 의한 통화의 교환은 제19조제7항(a)에 의한 양통화간의 환율에 상당하는 양통화간의 환율로 행해진다.
 - (ii) 환매를 위해 기금이 선정한 통화의 회원국은 환매국이 환매시에 타회원국의 자유사용가능통화와 교환으로 선정 통화를 취득할 수 있도록 기금 및 타회원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 (iii) 상기 (j) (i)에 다른 교환은 선정통화의 회원국과 환매국간에 별도의 절차를 합의하지 않는 한 선정통화의 회원국을 상대로 하여 행하여야 한다.
 - (iv) 환매국이 환매시에 상기 (i)에 의해 기금이 선정한 타회원국의 자유사용가능통화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환매국은 타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기 (j)(i)에서 언급된 환율에 따라 기타 자유사용가능통화와 교환으로 특정회원국으로부터 통화를 취득하여야 한다. 기금은 교환시에 제공될 자유사용가능통화에 관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8. 수수료

- (a) (i) 기금은 회원국이 자유통화와 상환으로 특별인출이나 일반재원계정 보유의 타회원국 통화를 매입할 때 동매입액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부과한다. 단, 기금은 준비부분매입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의 매입보다 저율의 취급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준비부분매입의 취급수수료는 1/2「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ii) 기금은 대기성차관 약정이나 이와 유사한 약정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금은 어떤 약정에 부과된 수수료가 동약정에 의한 매입액에 상기 (i)에 따라 부과되는 취급수수료와 상쇄됨을 결정할 수 있다.

(b) 기금은 일반재원계정보유 회원국통화의 일간 평균잔액에 대하여 하기에
서 정한 범위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한다.

(i) 제30조(c)에 의해 제외규정이 적용된 정책에 따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통화분

(ii) 상기 (i)의 잔액을 제외한 후 회원국의 할당액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통화분

수수료율은 통상적으로는 잔액이 보유하고 있는 기간의 구간에 따라 증
가한다.

(c) 회원국이 본조 제7항에 의해 발생한 환매를 행하지 않을 때에는 기금은
당해 회원국과 기금보유 당해 국가통화의 감축에 관한 협의를 한 후 환매
를 했어야 할 기금 보유 당해 국가통화 해당분에 대하여 기금이 적절하다
고 인정하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d) 상기 (a)와 (b) 및 (c)에 따른 수수료율의 결정에는 총투표권의 70「퍼
센트」이상의 다수결을 요하며 상기 (a)와 (b)에 의한 수수료율은 전회원
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e) 회원국은 모든 수수료를 특별인출권으로 납입해야 하나 특수한 경우에
기금은 특정회원국과 협의한 후 회원국이 수수료를 기금이 선정하는 특정
회원국 통화로 납입하거나 또는 자국통화로 납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타회원국이 행한 납입의 결과로 상기 (b)(ii)에 의해 수수료
가 부과되는 수준을 초과할 수는 없다.

9. 보 상

(a) 기금은 하기 (b) 또는 (c)에서 정한 할당액의 일정비율액이 제30조 (c)
에 의해 제외규정이 적용된 정책에 따라 취득한 잔액을 제외하고 기금의
일반재원계정 보유 회원국 통화의 일간평균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
여 보상을 지급한다. 보상율은 기금이 총투표권의 70「퍼센트」이상의 다수
결로 결정하며 전회원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보상율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정한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고 또 동 이자율의 4/5이하로 저하될 수
없다. 보상율을 설정할 때에 기금은 제5조제8항(b)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b) 상기 (a)의 목적에 따라 적용될 할당액의 일정비율액은 아래와 같다.

- (i) 본 협정문의 제2차 개정일전에 가입한 각 회원국에 대해서는 이 협정 제2차 개정일자 의 동 회원국의 할당액의 75「퍼센트」에 상당하는 할당액의 일정비율액에 그리고 이 협정의 제2차 개정일 후에 가입한 각 회원국에 대해서는 동 회원국의 가입일자 현재 여타 전회원국에 적용된 할당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총금액을 동 일자의 여타 전회원국의 해당액 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할당액의 일정비율액에
- (ii) 상기 (b)(i)에서 정한 일자 이후에 회원국이 제3조제3항(a)에 따라 통화나 특별인출권으로 기금에 납입한 금액을 가산하고
- (iii) 상기 (b)(i)에서 정한 일자 이후에 각 회원국이 제3조제3항(c)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통화나 특별인출권으로 수취한 금액을 감한다.
- (c) 기금은 총투표권의 70「퍼센트」이상의 다수결로 상기 (a)의 목적에 따로 각 회원국에 적용되는 최근의 할당액 비율을 아래와 같이 증가시킬 수 있다.
 - (i)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회원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각 회원국별로 결정하는 비율
 - (ii) 전 회원국에 공히 100「퍼센트」
- (d) 보상은 특별인출권으로 지급된다. 단, 기금이나 회원국에 대한 보상지급을 동회원국 자국통화로 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0. 계 산

- (a) 일반재정부의 각 계정에서 보유하는 기금자산의 가치는 특별인출권으로 표시한다.
- (b) 제4조와 부표 C를 제외한 이 협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회원국 통화와 관련되는 모든 계산은 기금이 본조 제11항에 따라 동 통화를 처리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 한다.
- (c) 이 협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할당액에 관련된 통화금액을 결정하는 계산에는 특별지급계정이나 또는 투자계정에서 보유하는 통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11. 가치의 유지

- (a) 일반재원계정에 보유된 회원국 통화의 가치는 제19조제7항(a)에 의한 환율에 따라 특별인출권으로 표시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b) 회원국의 통화가 기금과 타회원국간의 운용이나 거래에 사용되는 경우와 기금이 결정하거나 또는 당해 회원국이 요청할 경우에는 본항의 규정에 따라서 기금의 회원국통화보유액은 조정된다. 조정을 위한 회원국의 납입이나 기금의 지급은 조정일로부터 기금이 결정하는 합당한 기간이나 또 회원국이 요청하는 다른 기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12. 기타 운용과 거래

(a) 기금은 본항에 의한 기금의 제정책 및 결정을 행함에 있어 제8조 제7항에서 정한 목적과 금시장에서 가격의 관리나 또는 고정가격의 실정을 회피한다는 목적에 따라야 한다.

(b) 하기 (c)(d) 및 (e)에 의한 거래 및 운용의 게시에 관한 기금의 결정은 총투표권의 85「퍼센트」이상의 다수결로 행한다.

(c) 기금은 금과 교환할 통화의 회원국과 협의한 후 그 회원국 통화를 대가로 금을 매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일반재원계정 보유 회원국 통화는 당해 회원국의 동의없이는 본조 제8항(b)(ii)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준을 초과할 수 없고 또한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금은 금매각시에 수취한 통화중 전기수준의 초과를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회원국 통화로 교환한다. 어떤 통화의 타회원국 통화와의 교환은 당해 회원국과 협의한 후 행해지며 이 경우에도 기금보유 당해 회원국 통화는 본조 제8항(b)(ii)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준을 초과하여 증가될 수 없다. 기금은 본조 제7항(i)에 따라 적용된 제원칙을 고려하여 교환에 관한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한다. 본 규정에 따른 회원국에 대한 금매각은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여 합의된 가격을 각 거래마다 적용하여 행한다.

(d) 기금은 이 협정에 의한 운용이나 거래에 있어 회원국이 특별인출권 또는 통화대신 금으로 납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본 규정에 의한 기금에의 납입은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여 합의된 가격을 각 거래마다 적용하여 행한다.

(e) 기금은 이 협정의 제2차 개정일에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1975년 8월 31일 현재 회원국이며 동 금의 매입에 동의한 회원국에 대하여 동 일자의 당해 국가의 할당액에 비례하여 매각할 수 있다. 만일 기금이 하기 (f)(ii)의 목적을 위해 상기 (c)에 따라 금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금은 동 금의 매입을 동의한 각 개발도상국 회원국에게 만일 상기 (c)의 규정에 따라 매각되었을 경우에 하기 (f)(iii)에 따라 매각초과분을 당해 국가에 배분시키게 되는 금부분을 매각할 수 있다. 본 규정에 의해 매각될 금의 매각대상국이 본조 제5항에 따라 기금의 일반재원이용자격을 상실한 회원국일 경우에는 기금이 조기 매각을 결정하지 않는 한 동 금은 당해 국가의 자격상실이 해제되었을 때 당해 국가에 매각된다. 본호 (e)에 따른 회원국에의 금 매각은 동 회원국 통화와의 교환으로 행하며 또한 매각시에 1특별인출권당 순금 0.888671「그램」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행한다.

(f) 상기 (c)의 규정에 따라 기금이 이 협정의 제2차 개정일 현재 기금보유금을 매각할 때마다 매각시 1특별인출권당 순금 0.888671「그램」에 상당하는 수입금은 일반재원계정에 보유하며 또한 기금이 하기 (g)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다른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초과 금액은 특별지급계정에서 보유한다. 특별지급계정 보유자산은 일반재정부의 다른 계정과 분리하여 보유하며 하기의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i) 본 항 이외의 이 협정규정에 의해 인정될 제운용 및 거래에 즉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반재원 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ii)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기금의 목적과 부합되는 제운용 및 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본 호 (f)(ii)에 의해 난국에 처해 있는 개발도상국 회원국은 특별한 조건으로 국제수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해서 기금은 1인당 소득수준을 고려한다.

(iii) 1975년 8월 31일 현재 회원국인 개발도상국 회원국에 동일자의 당해 국가의 할당액에 비례하여 상기 (ii)의 목적을 위해 기금이 사용할 것을 결정한 자산중 배분일자의 전회원국의 할당액 총액에 대한 동일자의 동 회원국의 할당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배분할 경우, 단 본 규정에 의한 배분의 대상국이 본조 제5항에 따라 기금의 일반재원 이용자격을 상실한 회원국일 경우에는 기금이 조기배분을 결정하지 않는 한 상기 배분금액은 당해 국가의 자격상실이 해제되었을 때 당해 국가에 배분한다. 상기 (i)에 의한 자산사용의 결정에는 총투표권의 70「퍼센트」이상의 다수결을 요하며, 상기 (ii) 및 (iii)에 의한 결정에는 총투표권의 85「퍼센트」이상의 다수결을 요한다.

- (g) 기금은 총투표권의 85「퍼센트」이상의 다수결로 상기 (f)에서 언급될 초과금액의 일부를 제12조제6항(f)의 규정에 의한 사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계정으로 이전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h) 상기 (f)에 따라 사용할 금액을 일시 유예할 때에는 기금은 특별지급계정보유 회원국통화를 동회원국의 시장성있는 채권이나 국제금융기구의 시장성있는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수익과 상기 (f)(ii)에 의해 수취한 이자는 특별지급계정에서 보유한다. 투자는 투자에 사용되는 통화의 회원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행해지지 않는다. 기금은 특별인출권이나 또는 투자에 사용된 통화로 표시한 채권에만 투자한다.
- (i) 일반재원계정에서 지급된 특별지급계정의 운영경비는 그 경비를 합당하게 계산하여 특별지급계정에서 일반재원계정으로 수시로 이전시킴으로써 변제된다.
- (j) 특별지급계정은 기금이 청산될 시에 종료되며 또한 기금이 청산되기전에 총투표권의 70「퍼센트」이상의 다수결에 의해 종료될 수 있다. 기금의 청산으로 인하여 동 계정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이 계정의 자산은 부표 K의 규정에 따라 배분된다. 기금의 청산전에 종료되었을 때에는 이 계정의 자산은 운용과 거래에 즉각 사용하기 위해 일반재원계정에 이전된다. 기금은 총투표권의 70「퍼센트」이상의 다수결로 특별지급계정의 운영에 관한 제규칙 및 규정을 채택한다.

제6조 자본이전

1. 자본이전을 위한 기금일반재원의 사용

- (a) 회원국은 본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다액 또는 계속적인 자본 유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금일반재원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은 회원국에게 이와 같은 기금일반재원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회원국이 이러한 요청을 받은 후에 적절한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금은 당해 회원국이 기금일반재원을 사용할 자격이 없음을 선언할 수 있다.
- (b) 본항의 어떠한 규정도
 - (i) 수출확대 또는 무역업 은행업 또는 기타 사업의 통상적 운영에 필요한

상당한 금액의 자본거래를 위하여 기금일반재원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ii) 회원국 자체의 재원으로 하는 자본이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원국은 전기 자본이전을 기금의 목적에 따라 행할 것을 약속한다.

2. 자본이전에 관한 특별규정

회원국은 자본이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준비부분을 매입할 자격을 갖는다.

3. 자본이전의 통제

회원국은 국제자본 이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를 행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국은 제7조제3항(b) 및 제14조제2항에 정하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을 제한하거나 또는 채무 결제를 위한 자금이동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이러한 통제를 행할 수 없다.

제7조 보전과 회소통화

1. 기금보유통화의 보전조치

기금은 기금거래의 필요에 따라 일반재원계정에서 보유하는 어떤 회원국의 통화를 보전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조치 중 일방 또는 쌍방을 취할 수 있다.

(i) 기금과 회원국간에 약정된 조건으로 회원국이 기금에 대하여 자국통화를 대여하거나 또는 그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기금이 동회원국영토내 또는 영토외에 있는 타 자금원으로부터 통화를 차입하도록 제외한다. 그러나 회원국은 기금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 통화를 대여할 의무나 또는 기금이 타 자금원으로부터 자국통화를 차입하는 것에 동의할 의무는 없다.

(ii) 회원국에 대하여 만일 그 회원국이 특별인출권부의 참가국이라면 제19조제4항에 따라 일반재원계정에서 보유하는 특별인출권을 대가로 당해 국가 통화를 기금에 매각하도록 요청한다. 특별인출권으로 보전을 할 때에는 기금은 제19조제5항에서 정한 지정에 관한 제원칙을 고려한다.

2. 통화의 일반적 회소

기금은 특정통화의 일반적 회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국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동회소원인을 설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다. 당해 통화가 속하는 회원국 대표 1인은 앞에서 언급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다.

3. 기금보유액의 회소

(a) 특정회원국통화에 대한 수요가 그 통화를 공급할 기금의 능력을 현저하게 위협하고 있음이 명백할 때에는 기금은 본조 제2항에 의한 보고서의 발표 여부에 불구하고 그 통화가 회소하다는 것을 정식으로 선언하고 그 이후는 전기 회소통화의 현재 및 장래의 공급액을 회원국들의 상대적 필요도 일반국제경제상황 및 기타의 제요소를 고려하여 할당한다. 기금은 또한 그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발표한다.

(b) 상기 (a)의 정식 선언으로 각 회원국은 기금과의 협의를 거친 후 상기 회소통화에 관한 환거래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4조 및 부표 C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회원국은 위의 제한의 성격을 결정하는 완전한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위의 제한은 당해 회원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장차 취득하게될 공급액 수준까지 그 회소통화에 대한 수요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한도이상으로 제한적이어서는 안되며 또한 이 제한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조속히 완화 또는 철폐되어야 한다.

(c) 상기 (b)에 의한 권한은 기금이 문제된 통화의 최소상태가 소멸되었다고 정식으로 선언하였을 때 종료한다.

4. 제한의 시행

본조 제3항(b)의 규정에 따라 타회원국통화에 제한을 과하는 회원국은 상기 제한의 시행에 관한 상기 타회원국의 어떠한 이의제기에 대하여도 호의적인 배려를 해야한다.

5. 제한에 관한 기타 국제협정의 효과

각 회원국은 이 협정 이전에 타회원국과 체결된 여하한 조약상의 의무도 본조 규정의 운용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원용하지 않을 것에 합의한다.

제8조 회원국의 일반적 의무

1. 총 칙

각 회원국은 이 협정의 각 조항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 외에 본조에 정한 의

무를 진다.

2. 정상지급에 관한 제한의 회피

(a) 제7조제3항(b)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이외에는 회원국은 기금의 동의없이 정상적 국제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자본 이전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지 못한다.

(b) 회원국의 통화에 관련된 환계약으로서 이 협정에 합치하여 유지 또는 부과되어 있는 그 회원국의 환관리 규정에 위배되는 환계약은 여하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도 이를 시행할 수 없다. 또 회원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회원국중 일방의 환관리규제를 일층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에 협력할 수 있다. 단, 그 조치와 규제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3. 차별적 통화조치의 회피

회원국은 이 협정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되었거나 또는 기금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제4조 또는 부표 C에 따라 정한 변동폭 내외의 범위를 막론하고 차별적 통화약정 또는 복수통화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제5조제1항에 기재된 자국의 재정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앞에서 서술한 약정 및 조치가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에 이미 실행되고 있을 때에는 그 회원국은 이의 점진적인 철폐를 위하여 기금과 협의한다. 단, 그 약정 및 조치가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유지 또는 부과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외국보유잔액의 교환성

(a) 각 회원국은 타회원국이 보유하는 자국통화잔액을 타회원국이 매입할 것을 요청하면서 다음 각호를 입증할 경우에는 이를 매입하여야 한다.

(i) 매입될 잔액이 정상거래의 결과 최근에 취득되었다는 것 또는

(ii) 그 교환이 경상거래상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

매입국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특별인출권으로 지급할 것인가 또는 매입요청국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b) 상기 (a)에 규정된 의무는 하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 그 잔액의 교환이 본조 제2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을 때

- (ii) 그 잔액이 회원국이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유지 또는 부과된 제한을 철폐하기 전에 행하여진 거래의 결과로서 누적되어 있을 때
- (iii) 그 잔액이 그 매입을 요청받은 회원국의 환관리규정에 위반하여 취득된 것일 때
- (iv) 매입을 요청하는 회원국의 통화가 제7조제3항(a)에 의하여 회소하였다고 선언되었을 때
- (v) 매입을 요청받은 회원국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기금으로부터 자국 통화의 상환으로 타회원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을 상실하였을 때

5. 자료의 제출

- (a) 기금은 회원국에 대하여 기금의 원활한 직무수행상 필요한 최소한도의 다음 사항에 관한 각국의 자료 및 그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i) 국내 및 국외에 있어서의 (1) 금 및 (2) 외국환의 공적 보유액
 - (ii) 국내 및 국외에 있어서의 (1) 금 및 (2) 외국환의 공적기관이외의 은행 및 금융기관의 보유액
 - (iii) 금의 생산
 - (iv) 금의 도착국별 및 원산국별 수출입
 - (v) 현지 통화로 표시한 상품의 도착국별 및 원산국별 수출입 총액
 - (vi) (1) 재화 및 용역의 무역 (2) 금거래 (3) 자본거래 및 (4) 기타의 항목을 포함하는 국제수지
 - (vii) 국제투자상황 즉 그 회원국 영토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하는 투자 및 그 회원국의 영토내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해외투자 단, 이 보고는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 범위에 한한다.
 - (viii) 국민소득
 - (ix) 물가지수 즉 도매 및 소매시장에 있어서의 상품가격지수와 수출 및 수입가격지수
 - (x) 외국통화 매매율
 - (xi) 외국통화관리 즉 기금에의 가입시에 실시중인 외국환관리의 개요와 그후 변경시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
 - (xii) 공적 청산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업 및 금융거래에 관한 미청

산액의 내역과 상기미청산액이 존속하고 있는 기간의 내역

(b) 기금은 보고를 요구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이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는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개인 또는 법인의 비밀이 누설될 정도의 상세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각 회원국은 요청된 자료를 가능한 한 현실적으로 상세하고 정확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단순한 추정을 피하여야 한다.

(c) 기금은 회원국과 더 상세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기금은 통화 및 금융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교환의 중심체로서 활동하여 기금의 목적을 촉진하는 정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회원국에 도움이 되도록 조사 연구를 조정하여야 한다.

6. 현행 국제협정에 관한 회원국간의 협의

회원국은 본 협정에 규정된 특별한 또는 일시적 사유로 환거래에 대한 제한을 유지 또는 설정하는 권한을 본 협정에 의하여 보유하며 또한 본 협정에 의한 제한의 시행과 저축되는 본 협정 이전에 체결된 회원국간의 협약이 있을 때에는 그 협약당사국은 상호간에 인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정을 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본조의 규정은 제7조제5항의 규제의 시행을 저지하는 것은 아니다.

7. 준비자산정책에 관한 협력의무

각 회원국은 회원국의 준비자산에 관한 정책이 국제유동성에 대한 국제적인 감독을 촉진하고 또한 특별인출권을 국제통화제도에 있어 주요 준비자산으로 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기금 및 타 회원국과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9조 지위, 면제 및 특권

1. 본조의 목적

기금에 부여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회원국 영토내에서 본조에 규정된 지위 면제 및 특권을 기금에 부여한다.

2. 기금의 지위

기금은 완전한 법인격이 있으며 특히 다음의 행위능력을 보유한다.

(i) 계약의 체결

(ii) 부동산 및 동산의 취득 및 처분

(iii) 소송의 제기

3. 소송으로부터의 면제

기금과 기금의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유자나 점유자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법적쟁송으로부터 면제된다. 단, 기금이 특정쟁송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계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면제를 포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행위로부터의 면제

기금의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나 점유자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색, 징발, 몰수, 수용 또는 기타의 행정적 또는 입법적 행위에 의한 압류로부터 면제된다.

5. 문서의 불가침

기금의 문서는 불가침이다.

6. 자산에 대한 제한의 면제

본 협정상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한도까지 기금의 모든 재산 및 자산은 그 성질 여하를 막론하고 제한 규제, 통제 및 지급유예로부터 제외된다.

7. 통신상의 특권

기금의 공적통신에 대하여 회원국은 타회원국의 공적통신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8. 역무직원과 사용인의 면제 및 특권

기금의 위원, 이사, 대리이사, 각 위원회의 위원, 제12조제3항(j)에 따라 임명된 대표, 앞에서 언급한 역무직원의 자문가, 역원 및 사용인은

(i) 그들이 직무상 행한 행위에 관하여는 법적쟁송절차로부터 면제된다. 단 기금이 그 면제를 포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그 국가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도 회원국이 타회원국의 동등한 지위에 있는 대표자, 역원 및 사용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출입국제한, 외국인등록의무 및 국민적역무의 면제와 환제한에 관한 편의가 부여된다.

(iii) 여행상 편의에 관하여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동등한 지위에 있는 대표자, 역원 및 사용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9. 조세의 면제

(a) 기금, 기금의 자산, 재산 및 수익과 본 협정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기

금의 운용 및 거래는 모든 내국세 및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또한 기금은 일체의 조세공과의 징수 또는 납부의 책임이 면제된다.

(b) 기금의 이사, 대리이사, 역원 또는 사용인이 그 나라의 시민, 민중 또는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c) 기금이 발행하는 여하한 채무증서 또는 유가증권 및 그 증권에 대한 배당 또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소지자가 누구임을 불문하고 다음 각호에 기재한 여하한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i) 단지 채무증서 또는 증권이 기금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한 불리한 차별세 과세

(ii) 증권이 발행되었거나 지급될 것이거나 또는 지급된 장소 또는 통화나 기금의 사무소 또는 업무장소를 유일한 법적근거로 한 과세

10. 본조의 적용

각 회원국은 국내법상으로 본조에 정하여진 제원칙을 시행할 목적으로 자국 영토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동조치의 상세한 내용을 기금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기금은 본 협정에 정하여진 범위내에서 전문적 책임을 지는 일반국제기구 또는 공공국제기구와 관련분야에서 협력한다. 앞에서 서술한 협력을 위한 협약이 본협정의 수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동협약은 제28조에 의하여 본 협정을 개정 한 후에 발효한다.

제11조 비회원국과의 관계

1. 비회원국과의 관계에 관한 의무

각 회원국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의무가 있다.

(i) 비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의 영토내에 있는 자를 상대로 본협정의 규정 또는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여하한 거래도 행하지 않으며 또 제5조제1항에 기재된 재정기관이 이러한 거래를 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ii) 비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의 영토내에 있는 자와 본협정의 규정 또는 기

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거래에 협력하지 않는다.

(iii) 비회원국 또는 그 영토내에 있는 자와의 본협정의 규정 또는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를 자국영토내에서 실시할 때에는 기금과 협력한다.

2. 비회원국과의 거래에 관한 제한

본 협정의 규정은 비회원국 또는 그 영토내에 있는 자와의 환거래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회원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기금이 위의 제한이 기금회원국의 이익을 해하고 또 기금의 목적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조직 및 관리

1. 기금의 조직

기금은 총회, 이사회, 총재, 직원 및 평의회를 둔다. 단, 평의회는 총회가 총투표권의 85퍼센트 이상의 다수결로 부표 D의 규정이 적용됨을 결정할 때에 존립한다.

2. 총회

- (a) 본 협정에 의해 총회, 이사회 또는 총재에게 직접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모든 권한은 총회에 속한다. 총회는 각 회원국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명된 위원 1명과 대리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 및 대리위원은 새로운 임명이 있을 때까지 재임한다. 대리위원은 위원이 부재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다. 총회는 위원 1명을 의장으로 선출한다.
- (b) 총회는 본 협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총회에 부여된 권한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 (c) 총회는 총회의 결정 또는 이사회에 의한 소집으로 회의로 개최한다. 총회는 15개 회원국 또는 총투표권수의 4분의 1 이상을 가진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한다.
- (d) 총회의 정족수는 총투표권수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과반수 이상의 위원의 참석으로 한다.
- (e) 각 위원은 자기를 임명한 회원국에 본조 제5항에 의하여 할당된 투표권수를 행사할 자격을 갖는다.

- (f) 총회는 이사회가 기금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를 소집함이 없이 특정문제에 관하여 대표의 의결을 얻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으로서 제정할 수 있다.
- (g) 총회와 이사회는 그 수권된 범위내에서 기금의 운영상 필요하거나 적당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h) 위원 및 대리위원의 직무에 대하여는 기금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기금은 이들이 회의에 참석하는데 필요로 하는 타당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i) 총회는 이사 및 대리이사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수와 총재의 봉급과 복무계약조건을 정한다.
- (j) 총회와 이사회는 자문역할을 할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에의 참가자격은 위원이나 이사 또는 대리위원 및 대리이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3. 이사회

- (a) 이사회는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하여 총회로부터 위임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 (b)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되며 총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들 중
 - (i) 5명은 최대의 할당액을 가진 5개 회원국이 임명하고
 - (ii) 15명은 나머지 회원국들이 선출한다.
 이사의 매정기 선출시에 총회는 총투표의 85「퍼센트」이상의 다수결로 상기 (ii)에 의해 선출되는 이사의 수를 증원 또는 감원할 수 있다. 상기 (ii)에 의한 이사의 수는 만일 하기 (c)에 따라 이사가 임명되는 경우에 기금이 총투표권의 85「퍼센트」이상의 다수결로 이사의 감원이 이사회 또는 이사의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에 방해되거나 이사회의 바람직한 균형상태를 전도시킬 위험이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1인 또는 2인이 감원된다.
- (c) 이사의 제2차 정기선출시 및 그 이후의 기금이 일반재원계정에서 보유하는 특정 2개 회원국통화의 그전 2년간 평균액이 당해국 할당액을 특별 인출권으로 표시한 절대액에 있어서 가장 크게 하회한 경우 그 2개 회원국이 전기 (b)(i)에 의하여 이사 임명권을 가진 회원국중에 포함되고 있지 않을 때에는 각기 경우에 따라 그 회원국중의 일국 또는 양국은 이사를 임

명할 수 있다.

- (d) 선임이사의 선출은 부표 E의 규정 및 기금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규정에 따라 2년마다 행한다. 이사의 매정기선출시에 총회는 부표 E의 규정에 따라 이사의 선출에 필요한 투표권비율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e) 각 이사는 자기의 부재시에 자기를 대리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대리이사를 임명한다. 대리이사를 임명한 이사가 출석하고 있을 때에는 대리이사는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투표에는 참가할 수 없다.
- (f)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 또는 선출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선임이사직이 그 임기만료전 90일 이상 결원되는 때에는 전임이사를 선출한 회원국은 그의 잔임기간을 재임할 후임이사를 선출해야 한다. 이사 선출에는 행사된 투표권수의 과반수의 투표를 필요로 한다. 이사의 결원 기간중 전임이사의 대리이사는 대리이사의 명령권을 제외한 전임이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 (g) 이사는 기금의 주사무소에서 항시 그 직무를 수행하고 기금사무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 (h) 이사회회의 정족수는 총투표권수의 2분의 1이상을 대표하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한다.
- (i) (i) 각임명 이사는 본조 제5항에 의하여 자기를 임명한 회원국에 할당된 투표권수를 행사하는 자격을 갖는다.
 - (ii) 상기 (c)에 의해 이사를 임명하는 회원국에 할당된 투표권이 전기의 정기이사 선출의 결과로 선출된 이사에 의해 여타 회원국에 할당된 투표권과 함께 일괄 행사되는 경우에는 이사를 임명한 회원국은 동회원국에 할당된 투표권을 임명이사가 행사할 것을 각 여타 회원국과 합의할 수 있다. 합의를 한 회원국은 이사선출에 참가할 수 없다.
 - (iii) 각 선임이사는 그 선출시에 획득한 투표권수를 행사하는 자격을 가진다.
 - (iv) 본조 제5항(b)의 규정이 적용될 때에는 이사의 투표권수는 그 상당표수만큼 증가 또는 감소된다. 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투표권은 이를 일괄행사하여야 한다.

(v) 제26조제2항(b)에 의하여 회원국의 투표권 정지가 해제되고 그 회원국이 이사를 임명하는 자격이 없을 경우, 해당 회원국은 해당 회원국에 할당된 투표수가, 선출된 이사에 의하여 행사되도록 그 이사 선출에 참가한 다른 모든 회원국과 합의할 수 있다. 다만, 투표권의 정지기간동안 정기적인 이사 선출이 없었다면 해당 회원국이 투표권의 정지이전에 선출에 참가한 이사 또는 부표 L의 제3항(c)의 (i) 또는 상기 (f)에 따라 선출된 후임 이사가 해당 회원국에 할당된 투표수를 행사할 자격이 있다. 해당 회원국은 자국에 할당된 투표수를 행사할 자격이 있는 이사 선출에 참가하였다고 간주된다.

(j) 총회는 상기 (b)에 의한 이사임명권이 없는 회원국이 요청하거나 또는 그 회원국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이사회에서 심의중인 경우에는 당해 회원국의 대표자 1명을 이사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4. 총재 및 직원

(a) 이사회는 총재 1명을 임명하며 총재는 총회의 대표 또는 이사가 아닌 자라야 한다. 총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되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행사하는 외에는 투표권이 없다. 총재는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총재는 이사회가 해임을 결의할 때에는 퇴직하여야 한다.

(b) 총재는 기금의 사무직원의 장이 되고 이사회의 지휘하에 기금의 통상업무를 운영한다. 총재는 이사회의 일반적 감독을 받아 기금의 조직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책임진다.

(c) 총재 및 기금의 직원은 그 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기금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고 기타 어떠한 기관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금의 각 회원국은 앞에서 서술한 책임의 국제적 성격을 존중하여 여하한 직원에 대하여도 그의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여하한 제약도 가하여서는 안된다.

(d)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총재는 최고수준의 능률 및 전문능력의 확보라는 최고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광범한 지역으로부터 인원을 채용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투표

(a) 각 회원국은 250표 외에 그 할당액의 10만 특별인출권 상당액마다 각

1표를 가산한 투표권수를 가진다.

(b) 제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표결이 요구될 경우 각 회원국이 상기 (a)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수는 하기와 같이 조정한다.

(i) 그 투표일까지의 기금의 일반재원에서 그 회원국의 자국통화 순매각액 40만 특별인출권 상당액마다 각 1표를 가한다.

(ii) 투표일까지의 제5조제3항(b) 및 (f)에 의한 그 회원국의 순매입액 40만 특별인출권 상당액마다 각 1표를 감한다. 단, 여하한 경우라도 순매입액과 순매각액은 그 회원국의 할당액상당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금의 모든 결정은 행사된 투표권의 과반수에 의한다.

6. 준비금과 순이익 배분 및 투자

(a) 기금은 매년 기금의 순이익금에서 일반준비금 또는 특별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부분과 여유가 있을 때에는 배당할 부분을 결정한다.

(b) 기금은 배당을 제외하고는 기금이 일반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목적에 따라 특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c) 어떤 연도에 순이익을 배당할 경우에 배분은 회원국의 할당액에 비례하여 회원국에 할당된다.

(d) 기금은 총투표권의 70「퍼센트」이상의 다수결로 항시 일반준비금의 일부를 배분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동 배분은 회원국의 할당액에 비례하여 모든 회원국에 할당된다.

(e) 상기 (c) 및 (d)에 의한 지급은 특별인출권으로 행한다. 단, 기금이나 회원국중 일방은 회원국에의 지급이 회원국의 자국통화로 행함을 결정할 수 있다.

(f) (i) 기금은 본호 (f)의 목적에 따라 투자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투자계정의 자산은 일반재정부의 다른 계정과 분리하여 보유한다.

(ii) 기금은 제5조제12항(g)에 의한 금매각수익의 일부를 투자계정에 이전시킬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또 총투표권의 70「퍼센트」이상의 다수결로 일반재원계정보유통화를 긴급한 투자를 위하여 투자계정으로 이전시킬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앞의 이전금액은 이전결정시의 일반준비금과 특별

준비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 (iii) 기금은 투자계정보유 회원국통화를 동회원국의 시장성 있는 채권이 나 국제금융기관의 시장성 있는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는 투자에 사용하는 통화의 회원국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행해지지 않는다. 기금은 단지 특별인출권으로 표시하거나 투자에 사용하는 통화로 표시된 채권에만 투자한다.
- (iv) 투자수익은 본호 (f)의 규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 투자되지 않는 수익은 투자계정에서 보유하거나 또는 기금의 업무수행시의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 (v) 기금은 투자계정보유 회원국통화를 기금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타회원국 통화를 취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 (vi) 투자계정은 기금이 청산될 때에 종료되며 또한 기금의 청산전에도 총투표권의 70「퍼센트」이상의 다수결로 종료되거나 또는 투자금액은 감액될 수 있다. 기금은 총투표권의 70「퍼센트」이상의 다수결로 하기 (vii), (viii), 및 (ix)에 부합되는 투자계정의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한다.
- (vii) 기금의 청산으로 인해 투자계정이 종료되었을 때 동 계정의 자산은 부표 K의 규정에 따라 배분된다. 단, 전기 자산중 동 계정으로 이전된 자산총액에 대한 제5조제12항(g)에 의해 동계정으로 이전된 자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특별지급계정에서 보유한 자산으로 간주하고 부표 K의 제2절 (a)(ii)에 따라 배분된다.
- (viii) 기금이 청산하기 전에 투자계정이 종료되었을 때에 동계정 자산중 동계정으로 이전된 자산총액에 대한 제5조제12항(g)에 의해 동계정으로 이전된 자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만일 특별지급계정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특별지급 계정으로 이전되며 또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잔액은 운용과 거래에 즉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반재원계정으로 이전된다.
- (ix) 기금이 투자금액을 감액시킬 때에는 감액되는 금액중 동계정으로 이전된 자산총액에 대한 제5조제12항(g)에 의해 동계정으로 이전된 자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만일 특별지급계정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이 특별지급계정으로 이전되며 또 이 감액되는 금액의 잔액은 운용과 거래

에 즉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반재원계정으로 이전된다.

7. 보고서의 발간

(a) 기금은 각 계정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또 3개월 이내의 기간마다 기금의 운용 및 거래와 특별인출권, 금 및 회원국 통화 보유액의 약식보고서를 공표한다.

(b) 기금은 그 목적수행상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그밖의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8. 회원국에 대한 의견통보

기금은 본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어떤 회원국에게도 언제든지 기금의 의견을 비공식으로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기금은 회원국의 국제수지에 심각한 불균형을 직접적으로 초래할 우려가 있는 회원국의 통화 또는 경제상태 및 그 발전상황에 관하여 총투표권수의 70「퍼센트」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그 회원국에 제시할 보고서를 공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 회원국이 이사 임명권이 없을 때에는 본조 제3항(j)에 따라 대표자를 파견할 권리가 있다. 기금은 회원국 경제조직의 기본구조의 변화에 관한 보고서는 발간할 수 없다.

제13조 사무소 및 임치소

1. 사무소의 소재지

기금의 주사무소는 최대의 할당액을 가진 회원국의 영토내에 두고 대리사무소 또는 지점사무소는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 설치할 수 있다.

2. 임치소

(a) 각 회원국은 그 중앙은행을 모든 기금보유 자국통화의 임치소로서 지정하며 그 회원국에 중앙은행이 없을 때에는 기금이 수락할 수 있는 타 기관을 임치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b) 기금의 최대의 할당액을 가진 5개 회원국이 지정한 임치소 및 기금이 선정하는 기타 지정임치소에 금을 포함하는 기타 자산을 임치할 수 있다. 당초에 적어도 기금보유액의 2분의 1은 기금의 주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회원국이 지정한 임치소에 임치하고 적어도 40「퍼센트」는 전기한 나머지 4개 회원국이 지정한 임치소에 임치한다. 그러나 기금에 의한 모든 금의 이

동은 수송비 및 예상되는 기금의 필요를 충분히 참작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사회는 기금의 금보유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히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장소로 이를 이동할 수 있다.

3. 기금자산의 보증

각 회원국은 기금의 모든 자산에 관하여 그 회원국이 지정한 임치소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14조 경과약정

1. 기금에 대한 통지

각 회원국은 기금에 대하여 본조 제2항의 경과약정을 이용할 의향인지 또는 제8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의무를 수락할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경과약정을 이용하는 회원국은 그후 전기 의무를 수락할 용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기금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외환제한

본 규정에 의한 경과약정을 이용할 의향을 기금에 통지한 회원국은 본 협정의 다른 조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국가의 가입일 현재 이미 유효했던 국제적 경상거래를 위한 자금 및 자금이전에 대한 제한을 계속 유지하거나 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를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국은 외환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기금의 목적을 계속 존중하여야 하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신속히 국제결제 및 안정적인 환율제도를 촉진하게 하는 상업 및 금융상의 협약을 다른 회원국과 체결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가맹제국은 본항에 의하여 유지된 제한을 가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기금 일반 재원에의 접근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의 국제수지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러한 제한을 철폐하여야 한다.

3. 제한에 관한 기금의 조치

기금은 본조 제2항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제한에 관하여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위배되는 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국은 그들의 제한연장에 관하여 기금과 매년 합의하여야 한다. 기금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국에 대하여 동 회원국이 본 협정의 다른 규정에 위배되는 특정제한을 철폐하거나 또는 제한을 전반적

으로 철회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음을 표명할 수 있다. 그 회원국은 전기 표명에 대한 회답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허용된다. 그 회원국이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제한을 유지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고 기금이 판단할 경우 그 회원국은 제26조제2항(a)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15조 특별인출권

1. 특별인출권의 배분권

현존 준비자산을 보충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금은 특별인출권부에 참가하고 있는 회원국에 대하여 특별인출권을 배분할 권한을 가진다.

2. 특별인출권의 평가

특별인출권의 평가방법은 총투표권의 70「퍼센트」이상 다수결로서 기금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평가원칙을 변경하거나 동원칙의 실제 적용을 기초적으로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총투표권의 85「퍼센트」이상의 다수결을 요한다.

제16조 일반재정부 및 특별인출권부

1. 운용 및 거래의 분리

특별인출권에 관련된 모든 운용 및 거래는 특별인출권부를 통하여 수행된다. 본 협정문에 의하여 인정된 기금의 계정상 여타의 모든 운용 및 거래는 일반재정부를 통하여 수행된다. 제17조제2항에 의한 운용 및 거래는 특별인출권부는 물론 일반재정부를 통해서도 수행된다.

2. 자산 및 재산의 분리

제5조제2항(b)에 의해 관리되는 재원을 제외한 기금의 모든 자산 및 재산은 일반재정부에 보유된다. 단, 제20조제2항, 제24조 및 제25조와 부표 H 및 I에 의하여 취득된 자산 및 재산은 특별인출권부에 보유된다. 어느 한 부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및 재산은 다른 부의 운용 및 거래의 수행중 발생한 기금의 채무의무 및 손실의 보상 또는 충당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특별인출권부의 업무수행비용은 일반재정부에서 기금에 의해 지급되며 동 비용은 합리적 추산에 입각하여 산출되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부과금으로써 수시로 특별인출권으로 상환된다.

3. 기록 및 보고

특별인출권보유액의 모든 변동은 기금에 의하여 특별인출권부에 기록되는 경우에 한해서 효력을 가진다. 참가국은 특별인출권을 사용하게 하는 본 협정문안의 규정을 기금에 통고하여야 한다. 기금은 참가국에게 기금의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밖의 정보를 기금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특별인출권의 참가국 및 기타 보유자

1. 참가국

기금 회원국으로서 당해 국가법률에 따라 특별인출권부 참가국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기금에 임치한 각 기금회원국은 동문서가 임치된 날로부터 특별인출권부의 참가국이 된다. 단, 여하한 기금회원국도 특별인출권부에만 관련된 본 협정의 규정이 발효하기 전에는 그리고 할당액 총액중 적어도 75「퍼센트」를 보유한 회원국들이 본항에 의거하여 문서를 임치하기 전에는 참가국이 될 수 없다.

2. 보유자로서의 기능

기금은 일반재원계정에 특별인출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본 협정문의 제규정에 따라 참가국의 상대로 또는 본조 제3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기타 보유자를 상대로 일반재원계정을 통하여 수행되는 운용 및 거래에 있어서 특별인출권을 인수하고 사용할 수 있다.

3. 기타 보유자

기금은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i) 비회원국, 회원국중 비참가국 1개 이상의 회원국을 위하여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및 기타 공직 기관을 보유자로 지정
- (ii) 기타 보유자가 특별인출액을 보유하고 참가국 및 기타 보유자와의 운용 및 거래에서 특별인출권을 인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조건
- (iii) 참가국과 기금이 일반재원계정을 통하여 기타 보유자와 특별인출권의 운용 및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

상기 (i)의 지정에는 총투표권의 85「퍼센트」이상의 다수결을 요한다. 기금에 의하여 정해진 조건은 본 협정문의 제규정 및 특별인출권부의 효과적인

기능 발휘라는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8조 특별인출권의 배분 및 말소

1. 배분 및 말소에 관한 원칙 및 고려사항

- (a) 특별인출권의 배분 및 말소에 관한 모든 결정에 있어서 기금의 목적 달성을 촉진하고 또한 세계적 초과수요 및 「인플레이션」은 물론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도 회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 준비자산을 보충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기금은 장기적 세계적인 필요성에 대처할 방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 (b) 특별인출권을 배분하기 위한 최초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준비자산의 보충이 범세계적으로 필요하다는 종합적인 판단과 또한 일층 개선된 국제수지균형의 달성 및 장래의 국제수지 조정을 일층 원활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배분 및 말소

- (a) 기금은 연속적으로 5년간 지속될 기본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특별인출권의 배분 및 말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최초의 기본기간은 특별인출권의 배분을 최초로 결정한 일자 또는 동 결정에 명시된 일자로부터 개시된다. 모든 배분 또는 말소는 1년 간격으로 실시된다.
- (b) 배분비율은 각 배분결정당일의 할당액에 대한 배분비율로 표시한다. 특별인출권의 말소비율은 각 말소결정당일의 특별인출권 순수적배분액에 대한 배분비율로 표시된다. 동배분비율은 전회원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 (c) 특정기본기간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기금은 상기 (a) 및 (b)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i) 기본기간의 존속기간을 5년 이외로 정하는 사항
 - (ii) 배분 또는 말소를 1년 이외의 간격으로 행하는 사항
 - (iii) 배분 또는 말소결정일 이외의 일자의 할당액 또는 순수적배분액을 배분 또는 말소의 기준으로 정하는 사항
- (d) 기본기간이 개시된 이후에 참가국이 되는 회원국은 기금이 당해 신규참가국에 대하여 차기배분시부터 배분을 받기 시작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당해국이 참가국이 된 이후의 차기 기본기간부터 배분을 받는다. 기금이

기본기간중에 참가국이 된 회원국에 대하여 당해 기본기간중의 잔여기간중 배분을 받는다고 결정하거나 또는 참가국이 상기 (b) 및 (c)에 의하여 정해진 일자 현재 회원국이 아닐 경우 기금은 당해 참가국에 대한 배분기준을 정한다.

(e) 참가국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배분결정에 의하여 배분된 특별인출권을 인수한다.

(i) 참가국의 위원이 동 결정에 찬성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ii) 동 결정에 의한 특별인출권이 최초로 배분되기 이전에 동 참가국이 동 결정에 의하여 자국에게 배분될 특별인출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기금에 통고하였을 경우. 단, 기금은 동 참가국의 요청에 의해 전기통고의 효력정지 이후의 특별인출권 배분에 관하여는 동 통고의 효력을 정지시키도록 결정할 수 있다.

(f) 말소의 발효일자 현재로 참가국의 특별인출권 보유액이 말소대상 특별인출권중 말소액에 미달할 경우 당해 참가국은 당해 국가의 총대의준비상태가 허용하는 한 조속히 이 미달 잔액을 해소하는 동시에 이를 위하여 기금과 협의하여야 한다. 말소발효일자 이후에 참가국이 취득한 특별인출권은 당해국의 미달 잔액에 상계되어 말소된다.

3. 예상외의 주요사태

기금은 예상외의 주요사태의 진전으로 인하여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자본기간의 잔여기간중 배분 또는 말소의 비율이나 간격을 변경하거나 자본기간의 길이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자본기간을 개시할 수 있다.

4. 배분 및 말소에 관한 결정

(a) 본조 제2항(a)(b) 및 (c) 또는 제3항에 의한 결정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재가 제안하여 총회에서 행한다.

(b) 총재는 제안을 하기 전에 동제안이 본조 제1항(a)의 규정에 부합됨을 확신한 후 동제안에 대한 참가제국의 광범한 지지를 총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를 가져야 한다. 그뿐 아니라 총재는 최초의 배분제안을 결정하기 전에 본조 제1항(b)의 결정에 취지가 충족되고 또 배분 제시에 대한 참가제국의 광범한 지지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러한 확신을 가졌을

때에는 특별인출권부의 설치직후 조속히 최초의 배분을 제안하여야 한다.

(c) 총재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한다.

(i) 각기 본기간 종료 6개월 이전에

(ii) 기본기간에 대한 배분 또는 말소에 관하여는 하등의 결정이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 총재가 상기 (b)의 규정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을 때

(iii) 본조 제3항에 따라 총재가 배분이나 말소의 비율 또는 간격의 변경 혹은 기본기간의 지속기간 변경이나 새로운 기본기간의 개시등이 필요하다고 확정할 때 또는

(iv) 총회 또는 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후 6개월 이내

단, 상기 (i)(ii) 및 (iv)에 의하여 총재가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고 상기에 따라 참가국의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제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 총재는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d) 배분율의 감소에 관한 본조 제3항에 의한 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조 제2항(a)(b) 및 (c) 또는 제3항에 관한 결정에는 총투표권의 85「퍼센트」 이상의 다수결을 요한다.

제19조 특별인출권의 운용 및 거래

1. 특별인출권의 사용

특별인출권은 본 협정문에 따라 인정된 운용 및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2. 참가국간의 운용 및 거래

(a) 참가국은 본조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참가국으로부터 동액의 통화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국의 특별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

(b) 참가국은 타참가국과의 합의하에 제3참가국으로부터 동액의 통화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국의 특별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

(c) 기금은 총투표권의 70「퍼센트」이상의 다수결로서, 기금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으로 참가국이 타참가국의 합의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운용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동 조건은 본협정에 따라 특별인출권부의 효과적인 기능발휘 및 특별인출권의 적절한 사용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d) 기금은 기금이 판단하여 본조 제5항의 원칙에 의거한 지정과정에 편파적이거나 또는 제22조와 부합하지 않는 운용과 거래를 행하는 참가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동 운용과 거래를 계속 행하는 참가국은 제23조 제2항 (b)의 적용을 받는다.

3. 필요성의 요건

(a) 하기 (c)에 별도로 규정된 거래를 제외하고 본조 제2항(a)에 의거한 거래에 있어 참가국은 당해국의 국제수지 혹은 대외준비상태 또는 대외준비의 변동으로 인해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당해국의 특별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당해국의 준비자산 구성을 변경시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b) 특별인출권의 사용은 상기 (a)의 필요성의 요건에 따라 거부될 수는 없으나 기금은 동 필요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참가국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동 요건을 계속 충족하지 못하는 참가국은 제23조제2항(b)의 적용을 받는다.

(c) 기금은 참가국이 본조 제6항(a)에 의거하여 타참가국의 복원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타참가국의 잔액미달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거나 타참가국이 상기 (a)의 필요성의 요건을 충족치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본조 제5항에 의거하여 지정된 참가국으로부터 동액의 통화를 취득하고자 특별인출권을 사용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상기 (a)의 필요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4. 통화제공의무

(a) 본조 제5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참가국은 본조 제2항(a)에 의거하여 특별인출권을 사용하는 참가국에게 요청에 응하여 자유사용가능통화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가국의 통화제공의무는 당해국의 특별인출권 보유액이 순누적배분액의 2배에 달하는 액 또는 당해 참가국과 기금간의 합의된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b) 참가국은 상기 의무한도 또는 합의된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통화를 제공할 수도 있다.

5. 통화제공 참가국의 지정

(a) 기금은 본조 제2항(a) 및 제4항의 목적을 위하여 일정액의 특별인출권을 대가로 통화를 제공할 참가국을 지정함으로써 각 참가국이 당해국의 특별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동지정은 후기의 일반적 원

칙 및 기금이 수시로 채택되는 기타 원칙에 따라 행하여진다.

(i) 어떤 참가국의 국제수지 및 총대의준비상태가 진실한 경우 동참가국은 지정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대외준비상태가 진실한 참가국이 근소한 국제수지적자를 시현하고 있더라도 지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참가국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각 참가국간에 특별인출권 보유액의 균형배분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ii) 참가국은 본조 제6항(a)에 의한 복원을 촉진시키고 특별인출권 보유액의 잔액미달을 감소시키며 또는 본조 제3항(a)의 필요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지정되어야 한다.

(iii) 참가국을 지정함에 있어서 기금은 통상 상기 (ii)에 의한 지정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특별인출권의 취득을 필요로 하는 참가국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b) 상기 (a)(i)에 의거 특별인출권 보유의 균형배분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금은 부표 F의 지정에 관한 규칙 또는 하기 (c)에 의거 채택될 수 있는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c) 지정에 관한 규칙은 언제든지 검토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규칙을 채택한다. 새로운 규칙이 채택되지 않는 한 검토시에 시행되고 있는 규칙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6. 복원

(a) 특별인출권을 사용하는 참가국은 부표 G의 복원규칙 또는 하기 (b)에 의거하여 채택되는 규칙에 따라 당해국의 특별인출권 보유액을 복원하여야 한다.

(b) 복원규칙은 언제든지 재검토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규칙을 채택한다. 새로운 규칙을 채택하거나 또는 복원 규칙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재검토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규칙이 계속 적용된다. 복원규칙을 채택·수정 또는 폐지하는 결정은 총투표권의 70「퍼센트」이상의 다수결을 요한다.

7. 환율

(a) 하기 (b)에서 별도로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항(a) 및 본조 (b)에 의거하여 참가국상호간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은 특별인출권을 사용하는 참

가국이 제공통화의 종류에 불문하고 또한 어떤 참가국이 동통화를 제공하던지간에 동일한 가치를 수취할 수 있는 율이어야 한다. 또한 기금은 이 원칙의 시행을 위한 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b) 기금은 기금이 총투표권의 70「퍼센트」이상의 다수결로 예외적인 경우에 본조 제2항(b)에 따라 거래에 참여하는 참가국이 상기 (a)에서 적용하는 환율 이외의 환율에 합의하는 것을 인정하는 정책을 총투표권의 85「퍼센트」이상의 다수결로 채택할 수 있다.

(c) 기금은 참가국통화의 환율결정의 절차에 관하여 당해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d) 본 규정의 적용상 참가국이라 함은 참가종료국을 포함한다.

제20조 특별인출권부의 이자 및 수수료

1. 이 자

기금은 각 보유자의 특별인출권 보유액에 대하여 전보유자에 동일율로 적용되는 이자를 당해 보유자에게 지급한다. 기금은 수수료의 수입이 이자지급의 충당에 충분하든 충분하지 않든 각보유자에게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수수료

각 참가국은 자국의 특별인출권 순누적배분액의 미달잔액 또는 미지급수료를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전참가국에 동일율로 적용되는 수수료를 기금에 지급하여야 한다.

3. 이자율 및 수수료율

기금은 총투표권의 70「퍼센트」이상의 다수결로서 이자율을 결정한다. 수수료율은 이자율과 동일하다.

4. 부과금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변제하기로 결정된 경우 기금은 동목적을 위하여 각 참가국의 순누적 배분액에 따라 전참가국에게 동일율의 부과금을 과한다.

5. 이자·수수료 및 부과금의 지급

이자·수수료 및 부과금은 특별인출권으로 지급한다. 수수료 또는 부과금의 지급을 위하여 특별인출권을 필요로 하는 참가국은 기금이 인수할 수 있는

통화를 대가로 일반재원계정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기금과의 거래에 의해 특별인출권을 취득할 의무와 자격을 갖는다. 전기 방법으로 특별인출권을 충분히 취득할 수 없을 경우 동참가국은 기금이 선정하는 참가국으로부터 자유사용가능통화를 대가로 특별인출권을 취득할 의무와 자격을 갖는다. 지급일자 이후에 참가국이 취득한 특별인출권은 당해국의 미지급수수료에 충당되어 상계된다.

제21조 일반재정부 및 특별인출권부의 운용

(a) 일반재정부 및 특별인출권부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용된다.

(i) 특별인출권부에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총회의 회의 또는 결정에 있어서는 참가국인 회원국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들의 요청 또는 출석 및 투표만이 회의의 소집 및 정족수의 여부 또는 어떤 결정이 소정의 다수결에 의하여 성립되었는가의 여부에 관한 결정에 계산된다.

(ii) 특별인출권부에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에 있어서는 최소한 1개의 참가회원국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출된 이사만이 투표권을 가진다. 각 이사는 당해 이사를 임명한 참가국 또는 당해 이사의 선출에 투표를 한 참가회원국에 할당된 수의 투표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참가국인 회원국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출될 이사의 출석 및 참가국인 회원국에 할당된 투표수만이 정족수의 여부 또는 결정이 소정의 다수결에 의하여 성립이 되었는가의 여부에 관한 결정에 계산된다. 제12조제3항(i)(ii)에 의해 참가국인 회원국이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임명이사는 당해 회원국에 할당된 투표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

(iii) 제16조제2항에 의한 변제를 포함하여 기금의 일반 운영에 관한 문제 및 어떤 사항이 두 부서 모두에 관련된 사항인가 또는 특별인출권부에만 관련된 사항인가의 여부에 관한 문제는 일반재정부에만 관련된 문제의 경우와 동일하게 결정된다. 특별인출권의 가치평가 방법과 일반재정부의 일반재원 계정상의 특별인출권 인수·보유 및 사용에 관한 결정이나 일반재정부의 일반재원 계정 및 특별인출권부를 통하여 행하여지는 운용 및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결정은 각 부에만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정에 요구

되는 다수결에 의하여 진다. 특별인출권부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결정도 마찬가지로이다.

- (b) 본협정 제9조에 의거하여 부여된 특권 및 책임면제에 추가하여 특별인출권 혹은 특별인출권의 운용 및 거래에 대해서도 여하한 형태의 조세도 부과할 수 없다.
- (c) 특별인출권부에만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본협정의 규정 해석상의 문제는 참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제29조(a)에 따라 이사회에 제출된다. 이사회가 특별인출권부에만 관련되는 해석상의 문제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참가국에 한하여 동문제를 제29조(b)에 따라 총회에 회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총회는 참가국이 아닌 회원국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이 특별인출권부에만 관련되는 문제에 대한 해석위원회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d) 기금과 특별인출권부의 참여를 종료한 참가국간 또는 특별인출권부 청산 기간중 기금과 참가국간에 특별인출권부에만의 참가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항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동 분쟁은 제29조(c)의 절차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

제22조 참가국의 일반적 의무

각 참가국은 본협정의 기타 조항에 규정된 특별인출권에 관한 의무 이외에도 특별인출권부의 효과적 기능발휘 및 본 협정에 의한 특별인출권의 적절한 사용을 촉진시키고 또한 특별인출권을 국제통화제도에 있어 주요준비자산화하기 위해 기금 및 타참가국과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 특별인출권 운용 및 거래의 정지

1. 긴급규정

특별인출권부에 관한 기금의 운영을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는 총투표권의 85「퍼센트」이상의 다수결로서 특별인출권의 운용 및 거래에 관한 제규정의 운용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1항(b)(c) 및 (d)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의무의 불이행

- (a) 참가국이 제19조제4항에 규정된 참가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기금이 판단할 경우 기금이 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당해 참가국의 특별인출권의 사용권은 정지된다.
- (b) 참가국이 특별인출권에 관한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기금이 판단할 경우 기금은 전항의 자격정지 이후에 당해 참가국이 취득하는 특별인출권의 사용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 (c) 상기 (a) 또는 (b)에 따라 특정참가국에 대하여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당해 참가국은 당해국에 대한 이의를 즉시 통보받고 또한 구두 및 서면으로 당해국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보장하는 규정이 채택되어야 한다. 참가국이 상기 (a)에 관한 이의를 통보받을 경우 당해 참가국은 동 이의가 해결될 때까지 특별인출권을 사용할 수 없다.
- (d) 상기 (a) 및 (b)에 의한 자격의 정지 또는 상기 (c)에 제한은 제19조제4항에 의한 참가국의 통화제공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e) 기금은 상기 (a) 또는 (b)에 의한 자격정지를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단, 제19조제6항(a)에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으로 참가국에 적용되는 (b)에 의한 자격정지는 당해 참가국의 복원 규정을 이행하게 된 최초의 4분기말 이후 180일이 경과하기까지는 해제되지 않는다.
- (f) 특별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는 참가국의 권리는 당해국이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a)에 의거한 기금의 일반재원이용자격의 상실을 이유로 정지될 수는 없다. 참가국이 특별인출권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26조제2항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참가의 종료

1. 참가종료권

- (a) 참가국은 언제든지 기금의 주사무소에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특별인출권부의 참가를 종료할 수 있다. 참가의 종료는 동 통고의 접수일로부터 발효된다.
- (b) 기금으로부터 탈퇴하는 참가국은 동시에 특별인출권부예의 참가도 종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참가종료에 따른 청산

- (a) 참가국이 특별인출권부의 참가를 종료할 경우 당해국의 특별인출권에 관한 모든 운용 및 거래는 종료되거나 하기 (c)에 의거하여 체결된 협정에 따라 청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허용된 경우 또는 본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부표 H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참가종료일까지의 발생이자와 수수료 및 참가종료일 이전의 미납된 부과금은 특별인출권으로 지급된다.
- (b) 기금은 참가종료국이 보유하는 모든 특별인출권을 환급할 의무가 있으며 참가종료국은 자국의 순누적배분액과 동등한 금액 및 특별인출권부의 참가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 모든 지급금액을 기금에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 앞의 제 의무는 상계할 수 있으며 참가종료국의 기금에 대한 채무를 상계하기 위하여 사용된 당해 국가보유의 특별인출권액은 말소된다.
- (c) 상기 (b)의 규정에 따른 상계 후 잔존하는 참가종료국 혹은 기금의 채무는 참가종료국과 기금간의 협정에 따라 신속히 청산되어야 한다. 청산 협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표 H의 제 규정이 적용된다.

3. 이자 및 수수료

참가종료일자 이후 기금은 참가종료국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인출권 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참가종료국은 기금에 대한 모든 부채잔액상의 수수료를 제20조에서 규정된 기간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은 특별인출권으로 하여야 한다. 참가종료국은 기금 또는 협정에 의하여 선정된 회원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수수료 또는 부과금의 지급을 위하여 기타 보유자로부터 자유사용가능 통화를 대가로 특별인출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19조제5항에 의해 지정된 회원국과의 혹은 기타 보유자와의 협정에 따른 거래에 있어서 이자로서 수취한 특별인출권을 처분할 수 있다.

4. 기금에 대한 채무청산

기금이 참가종료국으로부터 수취한 통화는 기금이 통화를 수취할 당시 각 참가국의 특별인출권 보유액이 순누적배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참가국이 보유하는 특별인출권을 환급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환급된 특별인출권과 청산협약 또는 부표 H에 의한 분할납입금의 지급 및 동분할납입금의 상계를 위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참가종료국이 취득한 특

별인출권은 말소된다.

5. 참가종료국에 대한 채무청산

기금은 참가종료국으로부터 보유하는 특별인출권의 환급요청을 받았을 경우 언제든지 기금에 의하여 지정된 참가국이 공여하는 통화로 환급하여야 한다. 이들 참가국은 제19조제5항의 원칙에 따라 지정된다. 각 지정참가국은 임의로 참가종료국의 통화 또는 자유사용가능통화를 기금에 공여하여야 하며 또한 당해 국가는 동액의 특별인출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기금이 허용하는 경우 참가종료국은 특정보유국으로부터 자국통화, 자유사용가능통화 또는 여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특별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

6. 일반재원계정거래

기금은 참가국과의 결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즉, 참가종료국은

- (i) 본조 제2항(b)에 따른 상계후 참가종료국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인출권이 환급되어야 할 경우 일반재원계정을 통하여 수행되는 기금과의 거래에서 기금의 선택에 따라 자국통화 또는 자유사용가능통화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ii) 협약 또는 부표 H의 제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재원계정을 통하여 수행되는 기금과의 거래에서 기금이 인수가능한 통화를 대가로 특별인출권을 취득한다.

제25조 특별인출권부의 청산

- (a) 특별인출권부는 총회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청산할 수 없다. 긴급사태의 발생으로 이사회가 특별인출권부의 청산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이사회는 총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특별인출권의 배분 또는 말소와 모든 운용 및 거래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총회의 기금 청산결정은 일반재정부 및 특별인출권부의 양부 모두에 대한 청산결정이어야 한다.
- (b) 총회가 특별인출권부를 청산기로 결정할 경우 특별인출권의 모든 배분 또는 말소와 모든 운용 및 거래 그리고 특별인출권부와 관련된 기금의 모든 활동은 정지된다. 단, 특별인출권에 관한 회원국 및 기금의 정상적인 채무이행에 부수된 활동은 예외로 한다. 또한 이 협정에 따른 기금 및 참가국의 특별

인출권에 관한 모든 채무는 정지된다. 단, 본조 제20조, 제21조(d), 제24조, 제29조(c) 및 부표 H 또는 부표 H의 제4절 및 부표 I에 의거한 제24조에 따라 체결된 협정에 규정된 채무는 제외한다.

- (c) 특별인출권부를 청산함에 있어서 청산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및 수수료와 청산일 이전에 부과된 미납부과금은 특별인출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기금은 참가국이 보유한 모든 특별인출권을 환급하여야 하며 또한 각 참가국은 자국에 대한 특별인출권의 순누적 배분액상당의 금액과 당해 국가의 특별인출권부 참가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 납입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d) 특별인출권부의 청산은 부표 I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26조 탈퇴

1. 회원국의 탈퇴권

회원국은 기금의 주사무소에 서면통고하여 언제든지 기금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탈퇴통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강제적 탈퇴

(a) 회원국이 이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금은 그 회원국이 기금의 일반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선언할 수 있다. 이 항의 어느 규정도 제5조제5항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b) 상기 (a)의 자격상실 선언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회원국이 이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금은 총투표권의 70퍼센트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해당 회원국의 투표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지 기간중에는 부표 L의 규정이 적용된다. 기금은 총투표권의 70퍼센트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언제든지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c) 상기 (b)의 자격정지결정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회원국이 이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총회는 총투표권의 85퍼센트 이상을 점하는 위원의 다수결로써 기금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동 회원국에 요구할 수 있다.

(d) 상기 (a), (b) 또는 (c)에 따라 어떤 회원국에 대한 조치가 취하여지기 전에 그 회원국이 자국에 대한 이익을 합당한 시기에 통고받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국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보장하는 규정이 채택되어야 한다.

3. 탈퇴국과의 계정결제

회원국이 기금으로부터 탈퇴할 때에는 당해국 통화에 의한 기금의 정상운용 및 거래는 정지되고 그 회원국과 기금은 양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지체없이 상호간의 계정을 결제하여야 한다. 결제에 관한 협약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부표 J의 규정을 그 계정의 결제에 적용한다.

제27조 긴급규정

1. 일시적 정지

- (a) 긴급사태 또는 기금의 활동을 위태롭게 하는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는 총투표권의 85「퍼센트」이상의 다수결로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하기 규정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 (i) 제5조제2항, 제3항, 제7항 및 제8항(a)(i) 및 (e)
 - (ii) 제6조제2항
 - (iii) 제9조제1항
 - (iv) 부표 C 제5절
- (b) 총회는 상기 (a)에 의한 규정운용정지를 1년을 초과하여 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총회는 총투표권의 85「퍼센트」이상의 다수결로서 상기 (a)와 같은 긴급사태 또는 예기치 못한 사정이 계속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기간동안 앞의 정지를 연기할 수 있다.
- (c) 이사회는 총투표권의 과반수이상 다수결로서 언제든지 상기 규정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 (d) 기금은 기금의 운용이 정지되는 동안 규정의 내용과 관련된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2. 기금의 청산

- (a) 기금은 총회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청산될 수 없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사회가 기금의 청산이 필요하다고 결의하였을 때에는 동이사회는 총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일체의 운용 및 거래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b) 총회가 기금의 청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기금은 질서있는 기금자산의 추심 및 청산과 기금부채의 결제에 수반하는 활동 이외의 모든 업무를 즉시 정지한다. 그리고 이 협정에 의한 회원국의 의무는 본조 제29조(c), 부표 J, 제7절 및 부표 K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종료된다.
- (c) 청산은 부표 K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28조 개정

- (a) 이 협정개정에 관한 제안은 회원국, 총회의 위원 또는 이사회 중 누구의 발의에 의한 것임을 불문하고 총회 의장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총회의장은 그 제안을 총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이 총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기금은 회람 또는 전신으로 전회원국에 대하여 동개정안의 수락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총투표권의 85퍼센트를 차지하는 회원국의 5분의 3이 개정안을 수락하면 기금은 전회원국에 공식 통고로서 이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b) 상기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기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전회원국의 수락을 요한다.
 - (i) 기금으로부터의 탈퇴권(제26조제1항)
 - (ii) 회원국의 할당액 변경은 당해 국가의 동의없이 행하지 못한다는 규정(제3조제2항(d))
 - (iii) 회원국통화의 평가변경은 그 회원국의 제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다는 규정(부표 C 제6절)
- (c) 개정은 공식 통고일로부터 3개월후에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단, 회람, 서신 또는 전신에 의해 그보다 짧은 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 해석

- (a)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에 있어 회원국과 기금간에 또는 기금의 회원국 상호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이사회에 회부하여 결정된다. 동 문제가 이사 임명권이 없는 회원국에 대하여 특히 영향을 미칠 때에는 당해 회원국은 제12조제3항(j)에 따라 대표자를 출석시킬 수 있다.
- (b) 상기 (a)에 의하여 이사회가 결정을 내린 경우 각 회원국은 동결정일자로

부터 3월 이내에 총회에 회부하여 최종결정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총회에 회부된 문제는 총회의 해석위원회가 검토한다. 이 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총회는 동위원회의 위원자격 절차 및 의결정족수를 정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총회가 총투표권의 85퍼센트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총회의 결정이 된다. 회부된 문제가 계류중일 때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은 이사회에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 (c) 기금과 탈퇴한 회원국간 또는 기금의 청산기간중 기금과 회원국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에 이것을 회부한다. 중재인 중 1명은 기금이 지명하고 1명은 회원국 또는 탈퇴 회원국이 지명하며 1명의 심판인은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사법법원장 또는 기금이 채택하는 규정에서 정한 기타 기관이 지명한다. 심판인은 당사자간에 의견이 불일치되는 모든 계정건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를 결정하는 전권을 갖는다.

제30조 용어의 해석

이 협정의 규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기금과 그 회원국은 다음 각 항을 지침으로 한다.

- (a) 일반재원계정상의 기금보유 회원국통화는 제3조제4항에 의하여 기금이 인수한 모든 증권을 포함한다.
- (b) 대기성차관협력이라 함은 기금이 회원국에게 특정된 기간동안 특정금액까지 기금이 정한 조건에 따라 일반재원계정으로부터의 매입을 보장하는 기금의 결정을 의미한다.
- (c) 준비부분의 매입이라 함은 회원국이 자국통화를 대가로 특별인출권 또는 타회원국통화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일반재원계정상 기금의 당해 회원국통화보유액이 동회원국 할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단, 본 정의의 적용상 기금은 다음 정책에 의거한 매입분 및 보유액을 제외할 수 있다.
- (i) 수출변동에 따른 보상유자를 위한 기금의 일반재원 이용에 관한 제정
책
- (ii) 1차산품 국제완충재고에 대한 출연금의 유자와 관련한 기금의 일반재

원 이용에 관한 제정책

- (iii) 기금이 총투표권의 85「퍼센트」이상 다수결로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기금의 일반 재원이용에 관한 기타 정책
- (d)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이라 함은 자본이전 목적 이외의 지급을 의미하며 하기 각 호에 게재하는 지급을 무제한 포함한다.
 - (i) 대외무역 용역을 포함하는 기타 경상거래 및 통상적인 단기금융 및 신용제도에 관련하여 행하는 일체의 지급
 - (ii)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기타 투자순익의 지급
 - (iii) 차입금의 상환 또는 직접투자의 감가상각을 위한 적당한 금액의 지급
 - (iv) 가족 생활비를 위한 적당한 금액의 송금기금은 관계 회원국과 협의한 후에 특정거래를 경상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가 또는 자본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 (e) 특별인출권의 순누적배분액이라 함은 참가국에 배분된 특별인출권 총액에서 제18조제2항(a)에 의거하여 말소된 당해 참가국의 특별인출권을 차감한 것을 의미한다.
- (f) 자유사용가능통화라 함은
 - (i) 국제거래의 지급에 사실상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 (ii) 또한 주요 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거래된다는 것을 기금이 판정한 회원국의 통화를 의미한다.
- (g) 1975년 8월 31일 현재 회원국이었던 회원국에는 동일자 이전에 채택된 총회결의에 의해서 동일자 이후 회원국자격을 획득한 회원국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h) 기금의 거래라 함은 기금이 통화자산을 다른 통화자산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금의 운용이라 함은 기금이 통화자산을 거래이외에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 (i) 특별인출권의 거래라 함은 특별인출권을 다른 통화자산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인출권의 운용이라 함은 특별인출권을 거래이외에 사용함을 의미한다.

제31조 최종규정

1. 발 효

이 협정은 부표 A에 정하여진 총할당액의 65「퍼센트」를 가진 제 회원국 정부가 서명하고 또 전기 제 정부가 본조 제2항(a)에 기재된 문서를 기탁하였을 때에 발효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협정은 1945년 5월 1일 이전에는 발효하지 않는다.

2. 서 명

- (a) 이 협정에 서명을 한 각국 정부는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협정을 수락하고 또 이 협정상 의 모든 자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문서를 미합중국정부에 기탁한다.
- (b) 각국은 상기 (a)에서 언급한 문서가 자국을 위하여 기탁된 날로부터 기금의 회원국이 된다. 단, 이 협정이 본조 제1항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기까지는 어떠한 국가도 회원국이 되지 못한다.
- (c) 미합중국정부는 부표 A에 기재된 모든 국가의 정부 및 제2조제2항에 따라 가입이 승인된 모든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이 협정에 대한 일체의 서명 및 상기 (a)에서 언급한 모든 문서의 기탁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d) 각국정부는 자국을 위하여 이 협정에 서명할 때 기금의 사무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출자총액의 1「퍼센트」의 100분의 1을 금 또는 미합중국 달러화로 미합중국정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미합중국 정부는 이 자금을 특별예금계정에 의하여 기금의 창립총회가 소집될 때 총회에 이를 전달한다. 이 협정이 1945년 12월 31일까지 발효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합중국 정부는 상기 자금을 전달하였던 제 정부에 이를 반환한다.
- (e) 이 협정은 1945년 12월 31일까지 부표 A에 정하여 있는 각국의 정부가 서명할 수 있도록 「워싱턴」에서 개방된다.
- (f) 1945년 12월 31일 이후 이 협정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가입이 승인된 국가의 정부가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 (g) 모든 정부는 이 협정의 서명에 의하여 자국을 위하여 또한 자국의 모든 식민지, 해외영토, 자국의 보호하에 있거나 종주권 또는 감독하에 있는 모든 영토 및 자국의 위임통치하에 있는 모든 영토에 관하여 이 협정을 수락

한다.

(h) 전기 (d)항은 각 서명국정부에 관하여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위싱턴」에서 작성한 1통은 미합중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하고 미합중국은 인증등본을 부표 A에 게재되어 있는 모든 정부 및 제2조제2항에 따라 가입이 승인된 모든 정부에 송부한다.

〈부표 A〉 할당액

(단위:백만미국달러)

국 명	할당액	국 명	할당액
호주	200	인도	400
벨기에	225	이란	25
볼리비아	310	이라크	8
브라질	150	리베리아	0.5
캐나다	300	룩셈부르크	10
칠레	50	멕시코	90
중국	550	화란	275
콜롬비아	50	뉴질랜드	50
코스타리카	5	니카라구아	2
쿠바	50	노르웨이	50
체코슬로바키아	125	파나마	0.5
덴마크	※	파라과아이	2
도미니카	5	페루	25
에쿠아돌	5	필리핀	15
이집트	45	폴란드	125
엘살바돌	2.5	남아연방	100
이디오피아	6	소련	1,200
프랑스	450	영국	1,300
그리스	40	미국	2,750
과테말라	5	우루구아이	15
하이티	5	베네주엘라	15
혼두라스	2.5	유고슬라비아	60
아이슬랜드	1		

※ 덴마크의 할당액은 덴마크 정부가 본 협정에 서명할 의사를 표명한 후 서명을 하기 전에 기금이 정한다.

〈부표 B〉 환매, 추가출자액의 납입, 금 및 업무운용에 관한 잠정규정

1. 본 협정의 제2차 개정일전에 제5조제7항에 의해 발생하였고 동일자에 미이행상태에 있는 환매의무는 제2차 개정전의 본 협정의 규정에서 정한 환매이행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2. 회원국은 금으로 납입하는 환매의무나 또는 본 협정의 제2차 개정일자에 잔액으로 남아있는 출자액을 특별인출권으로 납입한다. 그러나 기금은 전기 납입의 일부 또는 전액을 기금이 선정하는 타회원국의 통화로 납입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특별인출권부의 비참가국은 본 규정에 따라 특별인출권으로 납입해야 하는 의무액을 기금이 선정하는 타회원국 통화로 납입한다.
3. 상기 2의 목적에는 순금 0.888671「그램」이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며 상기 2의 규정에 따라 납입하는 통화액은 전기의 계산기준이나 또는 특별인출권으로 표시한 당해 통화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4. 기금보유회원국통화가 제2차 협정문 개정일 현재 그 회원국 할당액의 75「퍼센트」를 초과하고 상기 1에 따라 환매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동 통화의 환매는 하기의 규칙에 따라 행한다.
 - (i) 매입으로 인한 보유액은 매입이 행해진 기금의 일반재원 이용에 관한 정책에 따라 해야한다.
 - (ii) 기타 이유로 인한 보유액은 본 협정의 제2차 개정일로부터 4년이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환매해야 한다.
5. 상기 1에 의해 발생하였고 상기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환매나 또는 상기 4에 관한 환매와 상기 2의 규정에 따른 통화의 선정에는 제5조 제7항 (i)의 규정이 적용된다.
6. 본 협정의 규정에 의해 채택되거나 적용되었고 본 협정의 2차 개정일자에도 유효한 모든 규칙, 규정, 절차 및 결정은 본 협정상규정의 규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
7. 하기 (a)와 (b)에 관련되어 발효중인 협약이 본 협정의 제2차 개정일 전까지 종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기금은 아래와 같이 행한다.
 - (a) 1975년 8월 31일 현재 기금보유 순금중 25백만「온스」까지를 동일자에 회원국이면서 동금의 매입에 동의한 회원국에게 동일자의 당해 국가의 할당

액에 비례하여 매각한다. 본 (a)에 의한 회원국에의 금 매각은 동 회원국 통화와의 교환으로 행하며 또한 매각시에 특별인출권당 순금 0.888671「그램」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행한다.

(b) 1975년 8월 31일 현재 기금보유 순금중 25백만「온스」까지를 동일자에 회원국이면서 개발도상국인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한다. 그러나 매각이익금의 일부나 동 금의 잉여가액중 1975년 8월 31일 현재 전회원국의 할당액 총액에 대한 동 일자의 동 회원국의 할당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동 회원국에 각각 직접 배분된다. 기금이 회원국과 협의하고 회원국의 동의를 득한다든가 또는 특수한 경우에 회원국통화를 타회원국통화로 교환한다는 등의 제5조제12항(c)의 요구조건은 본 규정에 따라 금 매각의 결과로 기금이 취득하는 통화로 적용되며 회원국통화를 대가로 회원국에 매각하여 일반 재원계정에서 보유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부표B의 7에 따라 금을 매각했을 때에는 곧 매각시에 1특별인출권당 순금 0.888671「그램」에 상당하는 수입금은 일반재원계정에서 보유하며 상기 (b)에 의한 협약에 따라 기금이 보유하는 다른 자산은 기금의 일반재원과 분리하여 보유한다. 상기 (b)에 의한 협약이 종료될 때 기금이 처분하게 되는 자산은 특별지급계정으로 이전된다.

〈부표 C〉 평가

1. 기금은 본 협정의 목적에 따라 각 회원국에 제4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과 본 부표에 의해 특별인출권이나 기금이 지정하는 기타 공통단위로 표시한 평가가 설정될 수 있음을 통지한다. 금이나 일국의 통화는 공통단위가 될 수 없다.
2. 자국통화의 평가를 설정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상기 1의 통지를 접수한 후 합당한 기간내에 기금에 평가의 설정을 제의한다.
3. 상기 1에 따라 자국통화의 평가 설정을 원하지 않는 회원국은 기금과 협의하며 또한 당해 국가의 외환협약이 기금의 목적과 부합되고 또한 제4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적합한 것임을 기금에 확신시켜야 한다.
4. 기금은 회원국의 제의를 접수한 후 합당한 기간내에 회원국이 제의한 평가

에 대해 동의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다. 회원국이 제의한 평가는 기금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아니하며 동 회원국은 상기 3의 규정에 따른다. 기금은 평가를 제의한 회원국의 국내의 사회적 또는 정치적인 정책을 이유로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자국통화의 평가를 설정한 각 회원국은 당해 국가의 영토내에서 자국통화와 평가를 유지하고 있는 타회원국의 통화간에 거래되는 현물환율의 최고 및 최저율이 평가로부터 4와 1/2「퍼센트」이상으로 또는 기금이 총투표권의 85「퍼센트」이상의 다수결로 채택하는 변동폭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본 협정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6. 회원국은 기초적 불균형을 시정하거나 이의 시현을 사전방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외에는 자국통화의 평가변경을 제의할 수 없다. 회원국통화의 평가변경은 그 회원국의 제의에 의하여 기금과 협의를 거친 후에만 행할 수 있다.
7. 평가변경이 제의된 경우 기금은 동 제의의 접수후 합당한 기간내에 제의된 평가에 대해 동의 또는 반대의 의견을 표시한다. 기금은 평가변경이 기초적 불균형을 시정하거나 이의 시현을 사전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 기금은 평가변경을 제의한 회원국 국내의 사회적 또는 정치적인 정책을 이유로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의된 평가변경은 만일 기금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본 협정의 목적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만일 회원국이 기금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자국통화의 평가를 변경할 때에는 그 회원국은 제26조제2항을 적용받게 된다. 회원국이 비현실적인 평가를 유지할 때에는 기금은 이를 제지한다.
8. 만일 회원국이 기금에 평가를 폐지함을 통고하는 경우에는 본 협정에 따라 설정된 회원국통화의 평가는 본 협정의 목적에 따라 존속하지 아니한다. 기금은 총투표권의 85「퍼센트」이상의 다수결에 결정에 따라 평가의 폐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일 회원국이 기금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자국통화의 평가를 폐지한 때에는 그 회원국은 제26조제2항을 적용받게 된다. 본 협정에 따라 설정된 평가는 만일 회원국이 기금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폐지한 때와 또는 기금이 그 회원국의 외환거래의 상당액에 대하여 상기 5에서 정한 환율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때에는 본협정의 목적에 따라 존속하지 아니한다. 단, 기금은 기금이 회원국과 협의한 후 동 회원국

에게 기금이 인지행위를 할 의사가 있음을 60일전에 통고하지 않으면 전기 인지행위를 행하지 않을 수 있다.

9. 회원국통화의 평가가 상기의 규정에 의해 존속이 중지되는 경우에는 회원국은 기금과 협의하며 또한 당해 국가의 외환협약이 기금의 목적과 부합되고 제4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적합한 것임을 기금에 확신시켜야 한다.
10. 자국통화의 평가가 상기 8의 규정에 따라 존속이 중지된 회원국은 언제라도 자국통화의 새로운 평가를 제의할 수 있다.
11. 상기 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총투표권의 70「퍼센트」이상의 다수결로 만일 특별인출권이 공통단위이고 또한 평가의 변경이 특별인출권의 가치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모든 평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한 회원국통화의 평가는 그 회원국이 기금이 전기 조치를 위한 후 7일 이내에 당해 국가가 기금의 조치에 따른 자국통화의 평가변경을 원하지 않음을 기금에 통고한 경우에는 변경되지 않는다.

〈부표 D〉 평의회

1. (a) 이사를 임명하는 각 회원국과 선임이사가 그 회원국들에 할당된 투표권을 행사하는 각 회원국그룹은 평의회에서 1인의 평의회위원을 임명하며 이 평의회위원은 총회의 위원, 회원국의 재무장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위에 있는 인사가 되며 또한 이 평의회위원은 7인 이내의 준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총회는 총투표권의 85「퍼센트」이상의 다수결로 임명될 준위원의 수를 변경시킬 수 있다. 평의회위원 또는 준위원은 새로운 임명이 있거나 또는 차기의 이사 정기선출시기의 양자중 조기에 발생하는 일자까지 존립한다.
(b) 이사 또는 이사의 불참시에는 대리이사 및 준위원은 평의회가 회의를 비공개회의로 결정하지 않는 한 평의회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 평의회 위원을 임명한 회원국과 회원국군은 평의회위원의 불참시에 평의회 회의에 참석할 대리평의회위원을 임명하며 이 대리위원은 평의회위원이 행사하는 전 권한을 위임받는다.
2. (a) 평의회는 국제수지의 조정과정과 세계 유동성의 변동추이에 대한 계속적인 업무운용을 포함한 국제환제도의 관리와 조정에 관한 감독업무를 관장하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실질재원이 개발도상국에 이전되는 동향을 검토한다.

- (b) 평의회는 제28조(a)에 의한 협정문개정에 관한 제안을 검토한다.
3. (a) 총회는 본 협정에 의해 총회에 직접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제외하고는 평의회에 총회가 행사하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b) 각 평의회위원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자기를 임명한 회원국이나 회원국그룹에 할당된 투표권을 행사한다. 회원국그룹이 임명한 평의회위원은 당해 국가그룹의 각 회원국에 할당된 투표권을 분리하여 행사할 수 있다. 만일 어떤 회원국에 할당된 투표권수가 이사에 의해 행사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회원국은 당해 국가에 할당된 투표권수를 평의회위원이 행사하도록 평의회위원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c) 평의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근거로 총회에서 취한 어떤 조치에 위배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근거로 총회 또는 평의회에서 취한 어떤 조치에 위배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4. 평의회는 평의회위원중 1인을 의장으로 선출하며 또한 동회의 기능수행에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규정을 채택하고 이에 관한 절차를 결정한다. 평의회는 동회가 결정하거나 또는 이사회의 소집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5. (a) 평의회는 하기규정에 의해 이사회가 갖는 권한에 상당하는 권한을 갖는다. 즉 제12조제2항(c)(f)(g) 및 (j)와 제18조제4항(a)(c)(iv)와 제23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a)
- (b) 특별인출권부에만 관련되는 문제에 대한 평의회 결정에는 동 참가국인 한 회원국이나 또는 적어도 1개국 이상이 동부의 회원국인 회원국그룹이 임명한 평의회위원만이 투표할 자격이 있다. 전기 각 평의회위원들은 특별인출권부 참가국이면서 자기를 임명한 회원국이나 회원국그룹의 국가중 특별인출권부 참가국이면서 자기를 임명한 회원국에 할당된 투표권수를 행사하며 또한 상기 3(b)의 최종조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특별인출권부 참가국에 할당된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다.
- (c) 평의회는 규정으로 투표절차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차기평의회 회의 때까지는 연기될 수는 없으나 특별회의를 소집할 사유는 되지않는 조치가 평의회에 의해 취해질 필요가 있을 때 평의회회의를 소집하지 않고도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의회 표결을 획득

할 수 있다.

(d) 제9조제8항은 평의회위원, 대리평의회위원, 준의원 및 평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어떠한 인사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e) 상기 (b) 및 3(b)의 목적에 따라 제12조제3항(i)(ii)에 의해 1회원국이나 특별인출권부 참가국인 회원국이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평의회 위원은 투표를 행할 자격이 있으며 동 회원국에 할당된 투표권수를 행사할 수 있다.

(f) 이사가 제17조제3항(i), (v)에 의하여 회원국에 할당된 투표수를 행사할 자격이 있을 경우, 그 이사의 선출에 참가한 회원국 그룹에 의하여 임명된 평의회위원은 해당 회원국에 할당된 투표수를 행사할 자격이 있다. 해당 회원국은 자국에 할당된 투표수를 행사할 자격이 있는 평의회위원 임명에 참가한 것으로 간주된다.

6. 제12조제2항의 첫 조문은 평의회에 관해서도 언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표 E〉 이사의 선출

1. 선임이사의 선출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의 투표에 의한다.
2. 선출되는 이사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는 투표권을 가진 각 위원은 제12조제5항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 전부를 1명에 대하여 투표하여야 한다. 최대의 표수를 획득한 15명이 이사가 된다. 단,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유자격 투표권)총수의 4「퍼센트」미만을 득표한 자는 당선되지 못한다.
3. 제1차 투표에서 15명이 선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2차투표를 행하되 이 제2차 투표에는 하기 위원만이 참가한다. (a) 제1차 투표에서 낙선자에 투표한 위원
(b) 당선자에게 투표하였으나 하기 4에 의하여 그의 투표가 동인에 대한 투표권수를 자격있는 투표권수의 9「퍼센트」를 초과시켰다고 간주되는 위원
2차 투표에서 후보자가 선출될 이사수보다 많을 때에는 제1차투표에서의 최저득표후보자는 피선거 자격을 상실한다.
4. 어떠한 위원이 행한 투표가 어떠한 자의 총득표수를 유자격 투표권수의 9「퍼센트」를 초과시켰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전기 9「퍼센트」중에서 우선 앞에서 서술한 자에 대하여 최대의 투표수를 던진 위원의 투표권수

를 그리고 이하 순차 9「퍼센트」에 도달할 때까지 각 위원의 투표권수를 산입한다.

5. 어떤 후보자에 대한 총득표수를 4「퍼센트」이상으로 사기 위하여 그 투표권의 일부가 산입되어야 하는 위원은 전기자에 대한 투표 총수가 그 때문에 9「퍼센트」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투표권의 전부를 전기자에 대하여 투표한 것으로 본다.
6. 제2차투표 이후에도 15명이 선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5명이 선출될 때까지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투표를 계속한다. 단, 14명이 선출된 이후에는 나머지 1명은 잔존 투표권의 단순 다수결에 의하여 선출하며 이 경우 동인은 잔존투표권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표 F〉 지정

최초의 기본기간중 지정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 (a) 제19조제5항(a)(i)에 의거하여 지정받은 참가제국은 그들의 순수적배분액을 초과하는 특별인출권보유액과 그들의 금 및 외환의 공적보유액과의 비율이 전 기간에 걸쳐 동등하게 유지될 수 있는 비율로 금액이 지정되어야 한다.
- (b) 상기 (a)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정받을 참가국의 지정은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야 한다.
 - (i) 상기 (a)항에 규정된 비율이 동등할 경우 당해 국가의 금 및 외환의 공적보유액에 비례하여야 하며
 - (ii) 전기 방식은 상기 (a)항에 규정된 비율중 낮은 것과 높은 것과의 차이를 점차 감소시키도록 해야한다.

〈부표 G〉 복원

1. 최초의 기본기간중 복원을 위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 (a) (i) 참가국은 최초의 배분후 5년과 그후 매 4분기말에 최근 5년간의 자국특별인출권의 일간 평균보유총액이 동일 기간중 자국특별인출권의 일간 평균누적배분액의 30「퍼센트」를 하회하지 않도록 자국보유특별인출권을

사용하고 이를 복원하여야 한다.

(ii) 최초의 배분후 2년 및 그후 매월말에 참가국이 상기 (a)(i)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계산일 현재와 5년 기간 종료일과의 사이에 회원국의 특별인출권 취득이 필요하느냐의 여부와 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금은 각 참가국에 대한 계산을 행하여야 한다. 기금은 참가제국이 상기 (a)(i)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산기준과 제19조 제5항(a)(ii)에 따른 참가제국의 지정시기에 관한 제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iii) 기금은 상기 (a)(ii)에 따른 계산결과 참가국이 상기 (a)(ii)에 따른 계산의 대상기간 잔여기간중 특별인출권의 사용을 중지하지 않는 한 상기 (a)(i)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명될 때 동 참가국에게 특별통고를 하여야 한다.

(iv) 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특별인출권의 취득을 필요로 하는 회원국은 기금이 수취할 수 있는 통화로서 기금의 일반재원계정을 통한 거래에 의하여 전기 특별인출권을 취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동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특별인출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참가국은 기금이 선정하는 참가국으로부터 자유사용가능통화로서 특별인출권을 취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b) 참가제국은 항상 자국의 특별인출권보유액과 기타 준비자금간에 균형관계가 유지되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2. 참가국이 복원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기금은 동 사유와 제23조제2항(b)에 의한 특별인출권 사용정지에 관련되는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표 H〉 참가종료

1. 제24조제2항(b)에 의한 상계후에도 참가종료국에 대한 채무가 잔존하고 또 참가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기금과 참가 종료국간에 청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금은 참가 종료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동 특별인출권 잔액을 매반년마다 균등분납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기금은 그의 결정에 따라 동 잔액을 (a) 제24조제5항에 의하여 잔여 참가국이 기금에

공여한 금액을 참가종료국에게 지급하는 방법 또는 (b) 참가 종료국이 자국 통화나 자유사용가능통화를 기금이 지정한 참가국·일반재원계정 혹은 기타 특별인출권 보유국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도록 참가종료국 보유의 특별인출권 사용을 허용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2. 제24조제2항(b)에 의한 상계후에도 기금에 대한 채무가 잔존하고 또 참가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청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참가종료국은 참가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혹은 기금이 연장 결정하는 기일이내에 매반년 균등분납으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참가종료국은 기금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동 채무를 (a) 자유사용가능통화를 기금에 지급하거나 또는 (b) 제24조제6항에 의하여 일반재원 계정으로부터 또는 기금에 의하여 지정된 참가국과의 협정에 의하거나 또는 기타 특별인출권 보유국으로부터 특별인출권을 취득하고 동 특별인출권을 만기가 도래한 분할부불금과 상계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 상기 1 또는 2에 의한 분할부불금은 참가종료일로부터 6월에 만기가 도래하고 그 후는 6월마다 만기가 된다.
4. 참가종료국의 참가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특별인출권부가 제25조에 의거하여 청산되는 경우 기금과 정부간의 청산은 제25조 및 부표 I에 따른다.

〈부표 I〉 특별인출권부의 청산관리

1. 특별인출권부를 청산할 경우 참가국은 기금에 대한 자국의 채무를 10회의 매반년 분할납부로 또는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장기간내에 자유사용가능통화와 기금이 정하는 환급한도까지 분할납부로 환급될 특별인출권을 보유하는 참가국통화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1회 분할납부금은 특별인출권부의 청산결정이 있을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지급한다.
2. 특별인출권부의 청산결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기금을 청산키로 결정한 경우 특별인출권부의 청산은 일반재원계정에 보유된 특별인출권이 하기의 규칙에 따라서 배분이 완료될 때까지 정지된다.
부표 K의 2(a) 및 (b)에 의한 배분이 행하여진 후 기금은 일반재원 계정보유 특별인출권을 2(b)에 따른 배분후의 각참가국에게 지급해야 할 잔여 채무에 비례하여 참가국인 모든 회원국에 분배하여야 한다.

부표 K의 2(d)에 따라 기금이 보유하는 잔여의 각종 통화를 분배할 목적으로 각 회원국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금은 본 규칙에 의하여 배분된 특별인출권을 공제하여야 한다.

3. 기금은 상기 1에 의하여 수취한 금액으로 기금은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인출권을 다음 방식 및 순서에 따라 환급한다.
 - (a) 총회가 특별인출권부를 청산기로 결정한 일자로부터 6월 이전에 참가를 종료한 정부가 보유하는 특별인출권은 제24조 또는 부표 H에 의한 합의 조건에 따라 환급되어야 한다.
 - (b) 참가국이 아닌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별인출권은 각국의 보유액에 비례하여 참가국보유의 특별인출권에 우선하여 환급된다.
 - (c) 기금은 참가국의 순누적배분액에 관련하여 참가국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인출권의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기금은 우선 최고의 비율을 가진 참가국의 비율이 제2위의 비율을 가진 참가국의 비율과 동등하게 감소될 때까지 최고비율의 특별인출권을 환급하여야 한다. 기금은 다음으로 전기 참가국이 보유하는 특별인출권을 이들의 순누적 배분액에 따라 이들의 비율이 제3위의 비율을 가진 참가국의 비율과 동등하게 감소될 때까지 환급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과정은 환급을 위한 기용자금이 고갈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4. 상기 3에 의거하여 참가국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기 1에 의하여 참가국이 지급해야 할 금액과 계상될 수 있다.
5. 청산기간 중 기금은 보유국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인출권의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각 참가국은 기금에 특별인출권의 순누적배분액에서 상기 1에 따른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기금은 이자율과 수수료율 및 지급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자 및 수수료는 가능한 범위까지 특별인출권으로써 지급한다. 수수료를 지급할 충분한 특별인출권을 보유하지 못한 참가국은 기금이 선정한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수수료로 수취된 특별인출권중 관리경비에 충당할 금액은 이자지급에 사용될 수 없으며 기금에 이체되어 기금이 경비를 충당할 때 사용할 통화로 우선적으로 환급되어야 한다.
6. 참가국이 상기 1 또는 5에 규정된 지급을 이행치 않을 경우 당해 참가국은

상기 3 또는 5에 규정된 금액의 지급을 받을 수 없다.

7. 참가제국에 대하여 최종지급이 완료된 후 채납이 없는 각 참가국이 당해 국가 순누적배분액과 동일한 비율의 특별인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기금과의 합의에 따라 낮은 비율을 보유하고 있는 참가국은 높은 비율을 보유하고 있는 참가국으로부터 양국의 특별인출권 보유비율이 같게 될 수 있도록 특별인출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채납참가국은 자국의 채납액 상당의 자국 통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기금은 당해통화 및 모든 잔여채권을 각 참가국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인출권의 금액에 비례하여 참가국간에 할당하여야 하며 이 특별인출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그후 기금은 특별인출권부를 종결하여야 하며 특별인출권의 배분과 특별인출권부의 운영에 기인한 모든 기금의 채무는 종료된다.
8. 본 부표에 의한 자국통화가 기타 참가국에 배분되어 있는 각 참가국은 동 통화로 재화의 매입이나 자국 또는 자국영토내의 거주자에 대한 채무액의 지급을 위하여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이러한 의무를 가진 각 참가국은 본 부표에 의거하여 기금이 동 통화를 배분할 때의 가치와 기타 참가제국이 동 통화를 처분할 때 실현되는 가치간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실을 기타 참가국에 대하여 보상할 것에 합의한다.

〈부표 J〉 탈퇴국과의 계정청산

1. 일반재원계정과 관련한 계정의 청산은 본부표 1에서 6까지의 절차에 따라 행한다. 기금은 탈퇴국에 대하여 당해 국가의 할당액에다 기금이 당해 국가에 지급하여야 할 기타의 금액을 가산하고 탈퇴일 이후에 발생한 수수료를 포함하여 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 탈퇴일로부터 6월 이내에는 여하한 지급도 하지 않는다. 지급은 탈퇴국의 통화로써 행하며 이를 위하여 기금은 타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기금이 선정한 일반재원 계정에 있는 동액의 타회원국통화와 교환하여 특별지급계정 또는 투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당해 회원국 통화를 일반재원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
2. 기금의 탈퇴국 통화보유액이 기금이 당해 국가에 지급할 순액의 지급에 부족할 때에는 잔액을 자유사용가능통화 또는 합의된 기타 방법으로 지급한다.

기금과 탈퇴국이 탈퇴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기금이 보유하는 당해 통화는 탈퇴국에 대하여 즉시 지급된다. 지급할 잔액이 있을 때에는 향후 5년에 걸쳐 10회의 반년할부로서 지급한다. 전기 각 할부금은 기금의 선택에 따라 그 국가의 탈퇴후 기금이 취득한 탈퇴국 통화 또는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지급된다.

3. 기금이 상기 각항에 따라 지급할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탈퇴국은 기금에 대하여 제7조제3항에 의하여 회소통화로 선언된 통화를 제외한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어떠한 통화로서든지 동할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기금의 탈퇴국 통화 보유액이 탈퇴국에 지급할 금액을 초과하며 또 탈퇴후 6월 이내에 계정청산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그 구회원국은 전기 잉여통화를 자유사용가능통화로서 환수할 의무가 있다. 환수는 기금으로부터 탈퇴할 때 기금이 동 통화를 매각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 행한다. 탈퇴국은 탈퇴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기금이 이보다 장기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중에 환수를 완료한다. 그러나 매반년 기간중에 기금이 새로이 취득한 탈퇴국 통화액을 가산한 금액이상을 환수할 필요는 없다. 탈퇴국이 전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기금은 환수되어야 할 통화의 금액을 임의의 시장에서 적당한 방법으로 청산할 수 있다.
5. 이미 탈퇴한 회원국의 통화를 취득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동 회원국이 기금의 일반재원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동 총회를 상기 4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기금으로부터 이를 매입할 수 있다.
6. 탈퇴국은 상기 4 및 5에 의하여 처분된 통화가 언제든지 재화의 매입이나 자국에 대한 또는 자국영토내에 있는 자에 대한 채무자금을 위하여 무제한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장한다. 탈퇴국은 탈퇴일자 현재 자국통화의 특별한 출권으로 표시한 가치와 상기 4 및 5에 의하여 기금이 처분함으로써 실현된 특별한출권으로 표시된 가치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기금에 대하여 보상한다.
7. 탈퇴국이 제5조제12항(f)(ii)에 의거하여 특별지급계정을 통하여 행해진 거래의 결과로서 기금에 부채가 있을 경우 이 부채는 부채조건에 따라 변제된다.

8. 기금이 특별지급계정 또는 투자계정에 탈퇴국의 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금은 상기 1에 의거하여 사용한 이후 각 계정에 잔존하는 탈퇴국의 통화를 임의의 시장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회원국의 통화로 교환할 수 있으며 각 계정의 동 통화 교환수입은 당해 계정에서 보유된다. 상기 5와 6의 첫 조문은 탈퇴국의 통화에 적용된다.
9. 기금이 투자계정 또는 제5조제12항(h)에 의거하여 특별지급 계정에 탈퇴국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금은 만기일까지 보유하거나 또는 조기처분할 수 있다. 상기 8은 동 채권의 처분 수입에 적용된다.
10. 회원국이 탈퇴한 일자로부터 6월 이내에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기금의 청산이 개시된 때에는 기금과 탈퇴국 정부간의 계정은 제27조제2항 및 부표 K에 따라 청산된다.

〈부표 K〉 청산절차

1. 청산을 함에 있어서 기금의 출자액상환 이외의 채무에 우선적으로 기금자산을 분배하여야 한다. 이러한 각 채무의 변제에 있어서 기금은 그 자산을 다음 순서에 의하여 사용한다.
 - (a)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통화
 - (b) 금
 - (c) 실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회원국 할당액에 비례한 기타 일체의 통화
2. 상기 1에 따라 기금의 채무를 변제한 후에는 기금은 그 잔여자산을 다음 원칙에 따라 분배 할당한다.
 - (a)(i) 기금은 1975년 8월 31일 현재로 보유하고 있는 금 가운데 청산결정 일자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금의 가치를 계산한다. 동 계산은 하기 9와 청산일 현재 1특별인출권당 순금 0.888671「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후자의 것을 초과하는 전자의 잉여가치에 상당하는 금은 1975년 8월 15일 현재 가입을 하고 있었던 회원국에게 동일자의 각국의 할당액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 (ii) 기금은 청산결정일현재 특별지급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제자산을 1975년 8월 31일 현재 회원국이었던 회원국에 동일자의 각국의 할당액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각 유형의 자산은 비례적으로 회원국에 배분된다.

- (b) 기금은 기금 보유금의 잔금부분을 기금의 회원국 통화보유액이 당해국의 할당액보다 적은 회원국에 할당액이 보유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국의 할당액이 기금의 당해국 통화 보유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 (c) 기금은 회원국에 대하여 기금보유 당해국 통화의 2분의 1을 배분한다. 단, 전기의 배분은 당해국 해당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 (d) 기금은 기금보유의 금 및 각국통화의 잔여금액을 하기와 같이 배분한다.
 - (i) 상기 (b) 및 (c)에 의한 배분후 각 회원국에 지급할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 금액에 비례하여 모든 회원국에 배분한다. 단, 상기 2(a)에 의한 배분은 회원국에 지급할 금액을 결정하는데 고려되지 않는다.
 - (ii) 기금은 이상과 같은 배분후 금 및 통화의 초과보유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원국의 할당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3. 각 회원국은 상기 2(d)에 의하여 기타 회원국에 할당된 자국통화 보유액을 환수하여야 하며 청산결정후 3월 이내에 질서있는 환수절차에 관하여 기금과 합의하여야 한다.
 4. 회원국이 상기 3에서 규정된 3개월 기간내에 기금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상기 2(d)에 의하여 동회원국에 배부된 타회원국 통화를 다른 회원국에 배분된 동회원국 통화의 환수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회원국에 배부된 각 통화는 가능한 한 상기 3에 의하여 기금과 합의에 도달한 제회원국에 배부된 자국통화를 환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5. 회원국이 상기 3에 따라 기금과 합의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기금은 상기 3에 의하여 기금과 합의한 기타 회원국들에 배분된 당해 국가 통화를 환수하기 위하여 상기 2(d)에 의해서 당해 국가에 배분된 기타 회원국들의 통화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환수된 금액은 그 통화가 배분되었던 회원국의 통화로 환수된다.
 6. 전기 각호를 실시한 후 기금은 각회원국에 대하여 당해 국가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잔여 통화를 지급한다.

7. 상기 6에 의하여 다른 회원국에 자국통화가 배분된 각회원국은 상기 당해 국가통화의 환수를 요구하는 회원국의 통화나 또는 환수를 요구하는 회원국과 합의된 기타의 방법으로 환수한다. 관계 회원국이 별도의 합의를 하지않는 한 환수할 의무가 있는 회원국은 배분일자로부터 5년이내에 환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매반년 기간중 각 회원국에 분배된 금액의 10분의 1이상을 환수할 필요는 없다. 그 회원국이 전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환수되어야 할 통화의 금액은 임의의 시장에서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청산할 수 있다.
8. 상기 6에 의하여 자국통화가 타회원국에 배분된 각 회원국은 그 통화를 언제든지 재화의 매입 또는 자국에 대한 채무의 지급 혹은 자국영역내에 있는 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이러한 의무를 가진 각회원국에 대하여 기금 청산결정일 현재의 특별인출권으로 표시한 당해 국가통화의 가치와 상기 회원국들이 당해 국가통화를 처분할 때 실현된 특별인출권으로 표시한 가치와의 차액에서 기인하는 모든 손실을 보상할 것을 동의한다.
9. 기금은 본 부표상의 금의 가치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0. 본 부표의 목적상 할당액은 이 협정 제3조 제22항 (b)에 따라 증액될 수 있는 최대한도까지 증액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표 L〉 투표권의 정지

제26조제2항(b)에 의하여 회원국의 투표권이 정지된 경우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1. 해당 회원국은
 - (a) 이 협정의 개정안 채택에 참가할 수 없으며 그러한 목적을 위한 회원국수에 계산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8조(b)에 의하여 모든 회원국의 수락을 요하거나 또는 특별인출권부에 배타적으로 관련된 개정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b) 위원 또는 대리위원의 임명, 평의회위원 또는 대리평의회위원의 임명 또는 임명에의 참가, 이사의 임명, 선출 또는 선출에의 참가를 할 수 없다.
2. 해당 회원국에 할당된 투표수는 국제통화기금의 어떤 기관에서도 행사될

수 없다. 특별인출권부에 배타적으로 관련된 개정안 수락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총투표권 계산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3. (a) 해당 회원국이 임명한 위원 및 대리위원은 그 직무가 정지된다.
 - (b) 해당 회원국이 임명 혹은 임명에 참가한 평의회위원, 대리평의회위원은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만약 투표권이 정지되지 아니한 다른 회원국에게 할당된 투표수를 동 평의회위원 및 대리평의회위원이 행사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는 다른 회원국은 부표 D에 의하여 또 다른 평의회위원 및 대리평의회위원을 임명한다. 그러한 임명이 있을 때까지 해당 평의회위원과 대리평의회위원은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 기간은 정지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c) 해당 회원국이 임명, 선출 또는 선출에 참가한 이사는 투표권이 정지되지 아니한 다른 회원국에게 할당된 투표수를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면 그 직무가 정지된다. 이 경우에는
 - (i) 정기적인 차기 이사 선출시까지 90일 이상 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른 회원국에 의하여 다수결로 남은 기간동안 직무를 수행할 이사가 선출된다. 그러한 선출이 있을 때까지 기존 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지만 그 기간은 정지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ii) 정기적인 차기 이사 선출시까지 남은 기간이 90일 이하일 경우에는 기존 이사가 남은 기간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4. 해당 회원국은 해당 회원국이 요청하거나 또는 해당 회원국이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토의될 경우에 총회, 평의회, 이사회 등에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기관의 위원회의 회의에는 대표를 파견할 수 없다.

국제법제분석 98-1

國際通貨基金(IMF)의 法的 基礎와 解釋

1998년 5월 25일 印刷

1998년 5월 30일 發行

發行人 徐 承 完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주) 東亞 商社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a0190호

값 7,500 원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89-8323-070-3 93360

